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

사법발전재단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산제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도산절차에서 각종 의견제시 및 평가, 각종 집회 준비,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허가업무의 처리와 관리인이 제출하는 각종 허가서의 작성 지도 및 감독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정착되면서 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도 충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상임 관리위원이 1998년 서울지방법원에 처음 선임된 이래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관리위원회가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다수의 관리위원들의 직무 수행에 다소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지식과 경험이 새로 선임된 관리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첫 도산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외부의 지적과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소속 상임 관리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관리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관리위원회 직무편람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법인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축적한 실무 경험에 바탕하여 그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물론 서류 작성의 구체적인 예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책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직무 처리 기준을 기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직무 수행의 모습을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노력을 거쳐 집필된 관리위원회 직무편람을 통하여 관리위원회 직무 수행의 편차를 줄이고, 이로써 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머리말

여기에서 나아가 관리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진행을 관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기업회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이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이 책이 좋은 지침이 됨으로써 채무자,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 모두가 도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책의 발간에 애쓰신 임형기 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님들과 기획 · 자문을 해주신 관리위원회 발전방안 연구반의 심태규 부장판사님 및 여러 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 3.

서울회생법원장 이 경 춘

집필진 및 기획 · 감수자 명단

집필진 명단(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총괄 집필위원	관리위원장 **임 형 기**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김 동 일**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김 규 환**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진 찬 희**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김 인 수**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김 동 규**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석 기 봉**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이 복 길**
집필위원	관 리 위 원 **민 양 이**

기획 · 감수자 명단(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발전방안 연구반)

연구반장	부 장 판 사 **심 태 규**
법인회생총괄	판 사 **백 숙 종**
연구1팀	판 사 **이 현 오**
연구1팀	판 사 **진 민 희**
연구2팀	판 사 **권 창 환**
일반회생총괄	판 사 **권 순 엽**
연구2팀	판 사 **이 주 헌**

CONTENTS

제1장 직무편람의 목적과 관리위원회의 지위

제1절 직무편람의 목적 및 한계 ····· 3

1. 직무편람의 목적 ····· 3

2. 직무편람의 한계 ····· 3

제2절 직무편람의 구성 ····· 4

1. 직무편람의 장 · 절 구성 ····· 4

2. 직무편람 구성의 특징 ····· 4

제3절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의 지위 ····· 5

1. 관리위원회 도입 연혁 ····· 5

2. 관리위원회의 구성 ····· 5

3. 관리위원회의 지위 ····· 5

가. 회생법원에 설치되는 위원회 ····· 5

나. 법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 6

다. 관리 · 감독 업무의 보고 대상 ····· 7

4. 관리위원의 지위 ····· 7
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 ····· 7
나. 관리위원회의 업무수임인 ····· 7
다. 관리위원회 내의 주무위원 ····· 7
라. 법원의 업무수임인 ····· 7

제2장 회생절차와 관리위원회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 11

1. 회생절차의 의의 ····· 11
2. 회생절차의 흐름 ····· 13
가. 회생절차의 흐름도 ····· 13
나. 회생절차의 흐름 ····· 15

제2절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위원의 역할 ····· 18

1.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보좌 ····· 18
2.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업무수행 ····· 19

CONTENTS

3. 절차관계인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충실한 절차 진행 도모 ····· 19
가. 채무자의 관리인 ····· 19
나. 채무자의 대리인 ····· 20
다. 채권자 및 채권자협의회 ····· 20
라. 조사위원 ····· 21
마. 구조조정담당임원(감사 포함) ····· 22

제3절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회 이외의 기관 · 기구 ····· 23

1. 법원 ····· 23
2. 관리인 ····· 23
가. 개요 ····· 23
나. 관리인의 선임 · 불선임, 임기 · 보수, 관리인대리 ····· 23
다. 관리인의 지위 · 권한 ····· 25
3. 조사위원 ····· 27
4. 채권자협의회 ····· 27
5.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 ····· 28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33

1. 개요 ····· 33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34

제2절 개시신청서 접수 ····· 35

1. 사건 접수 및 절차진행 준비 ····· 35

2. 사건의 현황 파악 ····· 35

제3절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 36

1. 보전처분 기일 준비 및 보전처분 이후 유의사항 안내 ····· 36

2. 보전처분시 추가로 안내할 사항 ····· 38

가. 포괄적금지명령 ····· 38

나. 예납금의 납부와 자금의 차입 ····· 38

다. 대리인의 수임범위 확인 ····· 38

라. 회생컨설팅제도 소개 ····· 38

CONTENTS

마.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취하 ····· 39
바.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후보자 명단 제출 안내 ····· 39

제4절 채권자협의회 구성 ····· 41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41
2.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채권자 지정을 관계인에게 통지 ····· 41
3.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전문가 지원 ····· 42

제5절 대표자 심문 ····· 43

1. 대표자심문 답변사항 검토 ····· 43
2. 대표자심문 준비 ····· 44
3. 대표자심문을 현장검증과 함께 실시하는 경우 ····· 44

제6절 개시결정 ····· 45

1. 개시결정의 준비 ····· 45
2. 개시결정시 채무자 지도 사항 ····· 45
   가. 회생절차 진행 일정 안내 ····· 45
   나. 개시결정 후 유의사항 안내 ····· 46

3.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신청 ····· 49
4. 제3자관리인 또는 공동관리인 선임 ····· 50
5.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위촉 ····· 50
6. 개시 전 조사 ····· 51
7.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 52

제7절 개시결정의 효과 ····· 53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 53
가. 업무수행권 · 재산관리처분권의 이전 ····· 53
나.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 행위의 구별 ····· 53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 54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 54
나. 해제 · 해지와 이행의 선택권 행사시기 ····· 54
다. 선택권 행사의 효과 ····· 55
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 55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 · 수도 · 가스공급계약) ····· 56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 56

CONTENTS

가. 도산해제 · 해지조항의 효력 ····· 56
나. 리스계약의 해지 문제 ····· 57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57
가.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 · 취소 ····· 57
나.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속행 ····· 58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 58
가.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58
나. 기존 소송절차와 채권조사확정절차와의 관계 ····· 59
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 ····· 61

7. 주주총회 · 이사회 권한의 제한 ····· 61
가. 주주총회 권한의 제한 ····· 61
나. 이사회 권한의 제한 ····· 61

8. 공유관계 ····· 62

9. 환취권 ····· 63

제4장 채무자의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67

1. 개요 ····· 67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67

제2절 부인권 ····· 69

1. 부인권의 개념 ····· 69

2. 부인권의 종류 ····· 69

3. 부인권의 행사 ····· 70

4. 부인권 행사의 효과 ····· 71

제3절 상계의 제한 ····· 73

1. 개요 ····· 73

2.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 73

3.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 73

CONTENTS

가.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 73
나.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 74

제4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 76

제5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주식 · 지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79

1. 개요 ····· 79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79

제2절 채권자의 권리 ····· 81

1. 회생채권 ····· 81
   가. 의의 ····· 81
   나. 조세 등 채권 ····· 82
2. 회생담보권 ····· 85
   가. 의의 ····· 85

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 86
다. 리스료채권의 경우 ····· 86
3. 공익채권 ····· 87
가. 개요 ····· 87
나. 법 제179조의 공익채권 ····· 87
다. 법 제179조에 열거된 이외의 공익채권 ····· 88
4.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 88
가.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 여부 ····· 89
나.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 89
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90
5. 개시후기타채권 ····· 90
제3절 채권자 외의 이해관계인 ····· 91
1. 주주 · 지분권자 ····· 91
가. 회생절차가 주주 · 지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91
나. 회생절차에서 주주 · 지분권자의 지위 ····· 91
2.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 92
가. 개요 ····· 92

CONTENTS

나.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 · 진술 ····· 93

제6장 채권 등 목록의 제출 및 신고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97

1. 개요 ····· 97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97

제2절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 99

1. 개요 ····· 99

2. 목록 작성 및 제출 지도 ····· 99

3. 목록 검토시 유의사항 ····· 100

가. 채권의 특정 ····· 100

나. 담보물의 가액의 평가 ····· 100

다. 상거래채권의 실재 여부 확인 ····· 100

라. 특수관계인 채권의 실재 여부 확인 ····· 101

마. 조세 등 채권 발생기간 명시 ····· 101
바. 동일 채권자 다수 채권의 경우 가지번호 사용 ····· 101
사. 회사채의 경우 ····· 101
아. 주주 · 지분권자 목록 작성의 경우 ····· 101
자. 목록의 변경 또는 정정 ····· 102

제3절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주 · 지분권자의 신고 ····· 103

1. 개요 ····· 103

2. 채권 신고를 위한 안내 ····· 103
가. 채권신고 전 송달용 채권자 리스트 제출 ····· 104
나. 채권 신고를 위한 안내사항 지도 ····· 104
다. 채권조사(시 · 부인)를 위한 채권신고서 확인 ····· 105
라. 예비적 신고 ····· 106

CONTENTS

제7장 채권의 조사(시 · 부인)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109

1. 개요 ····· 109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109

제2절 채권조사 방법 ····· 111

1.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등의 조사 ····· 111
2.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등의 조사 ····· 112
3. 이의내용의 통지 및 조사확정재판 ····· 112

제3절 시부인표 작성 지도 및 검토 ····· 113

1. 채권조사(시 · 부인) 기간 준수 ····· 113
2. 사전 안내 ····· 113
3. 채권조사 결과(시부인표)의 검토 ····· 113
4. 채권조사 결과(시부인표) 검토 시 주요 점검사항 ····· 114

가. 일반사항 ····· 114
나. 목록 기재 채권과 신고 채권 ····· 115
다. 중복 시인 유의 ····· 116
라. 회생담보권 관련 ····· 116
마. 어음채권 관련 ····· 118
바. 보증채권 관련 ····· 118
사. 의결권 관련 ····· 118
아. 기타 사항 ····· 119

제4절 이의의 철회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 120

1. 이의철회 기간 ····· 120
2. 이의철회 및 정정허가 ····· 120
3. 채권조사확정재판 ····· 120
가. 이의한 채권자에게 조사확정재판 안내 ····· 120
나. 조사확정재판 응소 및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 결정 ····· 121
4.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 121

CONTENTS

제8장 조사보고서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125

1. 개요 ····· 125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125

제2절 조사위원 선임 ····· 127

1. 조사위원 선임 기준 ····· 127

2. 조사위원 선임시 지도 사항 ····· 127

제3절 조사보고서 ····· 129

1. 조사보고서 내용 ····· 129

2. 조사보고서 제출 ····· 130

가. 조사보고서 사전 검토 및 법원 대면보고 ····· 130

나. 조사보고서 제출 ····· 130

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및 수정조사보고서 제출 ····· 131

3. 조사보고서 검토시 점검할 내용 ····· 131

가. 조사보고서 검토시 중점 확인사항 ····· 131
나. 조사보고서 항목별 점검 내용 ····· 132
다. 조사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사례 ····· 137
4.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 137

제9장 보고집회 및 대체절차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141
1. 개요 ····· 141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141
제2절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143
1. 보고집회 진행 순서 ····· 143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143
제3절 대체절차 ····· 145
1.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 145

CONTENTS

가. 통지내용 및 방법 등 ····· 145
나. 관리위원의 주안점 ····· 146

2. 관계인설명회 ····· 146
가. 관계인설명회 개최 ····· 146
나. 관리위원의 점검사항 ····· 148

제10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151

1. 개요 ····· 151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152

제2절 회생계획안 점검 ····· 153

1. 회생계획안의 작성 · 제출 ····· 153

2. 회생계획안 주요 점검사항 ····· 155
가. 채권내역의 완전성 ····· 155

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156
다.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1 ····· 156
라. 구주주 지분율의 적정성 검토 ····· 157
3. 채권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157
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157
나.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158
다. 조세 등 채권 ····· 159
라. 신고하지 않은 채권의 처리 ····· 159
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 159
바.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 ····· 160
사. 장래의 구상권 ····· 160
아.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 160
4. 자구노력의 추진 ····· 161
5. 예상수익금의 과부족시 처리 방법 ····· 162
가. 예상수익금 초과시 ····· 162
나. 예상수익금 부족시 ····· 162
6. 채무자를 인수할 자 ····· 162

CONTENTS

7.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162

8.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 163

가. 주주의 권리제한 ····· 163

나. 신주의 발행 ····· 163

다. 자본의 감소 ····· 163

라. 출자전환 ····· 163

마. 신주의 효력 발생일 ····· 164

바.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 ····· 164

9. 사채의 발행 ····· 165

10. 정관의 변경 ····· 165

11. 임원의 선임과 해임 ····· 165

12. 회생절차의 종결 · 폐지 ····· 165

13.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 166

14. 기타사항 ····· 166

제3절 회생계획안 요약표의 점검 ····· 167

제4절 사전계획안 및 회생계획안의 수정 ····· 169

1. 사전계획안 ····· 169
2. 회생계획안의 수정 ····· 170

제11장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173
1. 개요 ····· 173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174

제2절 심리 · 결의 집회의 준비 ····· 175
1. 회생계획안의 최종 점검 및 제출 ····· 175
가. 수정안 제출 ····· 175
나. 집회 전 점검 ····· 175
다. 동의서 수령 등 ····· 176
2.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설명과 동의 설득 ····· 176
가. 위임장 수령 ····· 176

CONTENTS

나. 중소기업 교섭지원제도 활용 ····· 177

3. 2차 조사보고서의 검토 ····· 177

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 ····· 178

나. 수행가능성 ····· 178

4. 예상동의율 확인 및 집회 기일 연기 ····· 179

제3절 관계인집회 자료의 작성 · 제출 ····· 181

1. 관리위원의 점검사항 ····· 181

2. 예상질문 및 답변자료 준비 ····· 181

제4절 심리 · 결의 집회 참석 ····· 182

1. 집회 참석 준비 ····· 182

2. 심리 · 결의 집회 진행 순서 ····· 182

가. 심리 집회 ····· 182

나. 결의 집회 ····· 183

3. 회생계획안 가결의 시기 ····· 183

제5절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 ····· 184

1. 회생계획 변경안의 작성 · 제출 ····· 184
2. 집회자료의 준비 · 제출 ····· 184
3. 결의 집회 속행기일의 진행 ····· 185

제6절 회생계획의 인가 ····· 186

1. 회생계획 인부결정 ····· 186
가.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 186
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 186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187
가.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 187
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7
다.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 187
라. 권리의 변경 ····· 188
마.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 188
바.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 188

CONTENTS

제12장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 수행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193

1. 개요 ····· 193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193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위원이 할 일 ····· 195

1. 관리인 지도 및 조사위원의 평가 ····· 195

가.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 195

나. 정관변경 허가 신청 ····· 195

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신청 ····· 195

라. 이사 ·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허가신청 ····· 195

마. 조기종결 가능성에 대한 안내 ····· 197

바. 조사위원 및 기업구조조정담당임원(CRO)에 대한 평가 ····· 197

2.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 197

3. 각종 등기촉탁신청 안내 ····· 197

가. 회생계획의 등기변경사항 ····· 197

나. 말소촉탁 ····· 198

제3절 회생계획의 수행 ····· 199

1. 사업계획의 수행 ····· 199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 199

가. 자산 매각에 대한 지도 ····· 199

나. 자산 매각시 유의할 점 ····· 200

다. 매각방법 ····· 200

라. 매각위임 ····· 201

마. 강제집행 등의 말소 ····· 201

바.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보전처분등기 말소 ····· 201

3. 회생채권 등의 변제 ····· 202

가. 변제의 지도 ····· 202

나. 종결을 위한 조기변제 ····· 202

다. 변제기에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의 변제허가 지도 ····· 203

라. 변제이행 결과보고 ····· 203

마. 조기종결 지도 ····· 203

CONTENTS

제4절 회생계획의 변경 ····· 205

1.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05

2. 회생계획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206

3. 회생계획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06

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6

나. 변경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시 점검사항 ····· 207

다. 관계인 집회 및 인가 ····· 207

제5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 208

1. 자금조달에 대한 지도 ····· 208

2.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 208

3. 신규 자금차입 ····· 208

가. 회생계획에서 차입방법과 대상이 특정된 경우 ····· 208

나. 회생계획에서 차입방법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209

다. 신규차입 허가신청시 지도사항 ····· 209

4.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 210

5.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 210

제13장 회생절차에서의 M&A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213

1. 개요 ····· 213
   가. 의의 ····· 213
   나. 회생절차에서의 M&A의 특징 ····· 213
   다. 준칙 제241호 ····· 214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214
   가. 회생절차에서 M&A의 중요성 인식 ····· 214
   나. 관리위원의 역할 ····· 214

제2절 M&A의 종류 및 절차 진행의 원칙 ····· 216

1. M&A의 종류 ····· 216
   가. 시행시기에 따른 분류 ····· 216
   나. 방식에 따른 분류 ····· 217
2. M&A 절차 진행의 원칙 ····· 218
   가.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218

CONTENTS

나. M&A의 악용 방지 ····· 219
다. 법원 허가사항 및 보고사항 준수 ····· 220
라. M&A 일정 준수 ····· 221

제3절 M&A 절차 일반 ····· 222

1. 주요 일정 ····· 222

2. M&A 착수 ····· 226
가. M&A의 주체 ····· 226
나. 절차 ····· 227

3. 매각주간사 선정 ····· 227
가. 매각주간사 선정의 필요성 ····· 227
나. 매각주간사 선정 대상 업체 ····· 228
다. 선정방법 ····· 228
라. 사전에 구체적인 매각주간사 선정기준 마련 ····· 230
마. 선정절차 ····· 233
바. 매각주간사의 주요업무 ····· 234

4. M&A 준비 단계 ····· 235
가. 매각주간사의 실사 ····· 235

나. 실사결과 보고 ····· 236
다. M&A 전략 수립 ····· 236
라. 잠재적 투자자 물색 ····· 237
5. M&A 실행 단계 ····· 237
가. 매각공고 ····· 237
나. 회사설명자료(Information Memorandum) 배포 ····· 238
다. 인수의향서 제출 보고 ····· 238
라. 인수의향서 제출자의 예비실사 ····· 238
마. 입찰기일 준비 ····· 238
바. 인수제안서 제출 후 절차 진행 ····· 245
사. 유효한 입찰이 없을 경우 처리 방안 ····· 246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 246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46
나. 양해각서 체결 ····· 247
7.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 248
가. 정밀실사 ····· 248
나. 인수대금 조정 ····· 248

CONTENTS

8. 계약금 납입 및 인수계약 체결 ····· 249
가. 계약금 납입 ····· 249
나. 인수계약의 내용 ····· 249
9. 인가 후 M&A에서의 회생계획변경과 그 준비과정 ····· 251
가.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 ····· 251
나. 변경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집회 준비 ····· 251
다. 집회 전 인수대금 예치 확인 ····· 251
10. 수의계약에 의한 M&A ····· 251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 253

1. 매각절차의 간이 · 신속화 ····· 253
가. 매각주간사 선정절차의 간소화 ····· 253
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경우 ····· 253
다. 실사절차 생략 가능 ····· 253
2. 대금증액 규정의 필요성 ····· 254
3.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 254
4.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은 영업양도 ····· 254

가. 개요 ····· 254
나. 추진시기의 검토 ····· 255
다. 영업양도 계약시 유의사항 ····· 255
라. 영업양도시 담보권 등의 처리 ····· 255

제5절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 257

1. 기존 M&A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 257
2. 기존 M&A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57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Stalking Horse 방식의 M&A) ····· 258

1. 개요 ····· 258
2. 인수희망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보고 ····· 258
3.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인수희망자에 대한 보호 ····· 258
   가. 해약보상금(break-up fee) 및 보상금(topping fee) ····· 258
   나. 공고 전 인수희망자의 선택권 부여 ····· 259
4. 인수예정자 선정 ····· 259

CONTENTS

제14장 관리인의 허가신청 · 보고 및 법원의 감독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263

1. 개요 ····· 263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263

제2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 265

1. 보전처분(개시결정 이전) 과정 ····· 265

2. 개시결정 이후 종결 시까지 ····· 266

제3절 허가신청 관련 지도 ····· 268

1. 사전 허가 신청하도록 지도 ····· 268

2. 전자제출 허가신청의 원칙 ····· 268

3. 허가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지도 ····· 268

4. 허가신청 항목 및 신청 사례 ····· 269

가. 부동산 · 자동차 등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일체 처분행위 ····· 269

나. 등기 · 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 271

다. 재산 양수 관련 ····· 272
라. 금원 지출 관련 ····· 273
마. ( )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 매매 · 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 · 의무부담행위 ····· 276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276
사. 어음 · 수표계좌의 설정, 어음 · 수표용지의 수령 · 발행행위 ····· 277
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해지 ····· 278
자. 소송행위 ····· 278
차. 인사 및 보수결정 ····· 281
카. 권리의 포기 ····· 282
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282
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283
하.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283
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283
너. 감자 · 신주발행 · 합병 등 ····· 283
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 285

5.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 286
가.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 286

CONTENTS

나.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 287
다.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 287

6.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검토 ····· 287
가. 직원 급여(임원 제외) 지급 허가신청 ····· 287
나. 직원 채용 허가신청 ····· 288
다.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 288
라.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 289
마.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 289
바.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 290

제4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 291

1. 개요 ····· 291

2. 각종 보고서 제출지도 및 점검 ····· 291
가. 관리인이 제출해야할 보고서 ····· 291
나. 월간보고서 제출지도 및 점검 ····· 292
다. 분기보고서 제출지도 및 점검 ····· 294
라.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 296
마. 허위보고의 파악 및 지도 ····· 297

제5절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 298

1. 관리인의 민 · 형사책임 ····· 298
   가. 개요 ····· 298
   나. 손해배상책임 ····· 298
   다. 형사책임 ····· 299
2. 관리인에 대한 감독 ····· 299
   가. 관리인 해임 ····· 299
   나. 법원 선임 감사를 통한 감독 ····· 300
   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한 감독 ····· 301
   라.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허가사항 검토 ····· 302
3. 관리인에 대한 평정 ····· 303

제15장 회생절차의 종결 · 폐지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 307

1. 개요 ····· 307

CONTENTS

가. 종결 ····· 307
나. 폐지 ····· 307
다. 준칙 제251호 ····· 308

2. 관리위원의 주안점 ····· 308
가. 조기종결 지도 ····· 308
나. 회생계획 수행현황 점검 ····· 308

제2절 회생절차 종결 ····· 310

1. 종결의 요건 ····· 310
가. 채무자회생법상 종결의 요건 ····· 310
나. 종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시 고려사항 ····· 310

2. 종결을 위한 준비 ····· 311
가. 조기변제 지도 ····· 311
나. 조기종결을 위한 자료제출요청 ····· 311
다. 관리인의 법원 보고 지도 ····· 311
라. 법원 보고 후 관리인 안내사항 ····· 312

3. 종결에 대한 의견서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 313

4.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 313

5. 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 314

6.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절차 안내 ····· 314

제3절 회생절차 폐지 ····· 315

1. 인가 전 폐지 ····· 315

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 315

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15

다. 회생계획안을 배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315

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 316

마. 가결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 316

2. 인가 후 폐지 ····· 316

가.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16

나. 인가 후 폐지를 위한 준비 ····· 316

3.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 317

4. 폐지에 대한 의견서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 317

5.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절차 안내 ····· 317

가. 관리인 계산보고 안내 ····· 318

CONTENTS

나. 회생절차폐지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 318

제16장 간이회생절차

1. 간이회생 절차의 내용 ····· 321
가. 간이회생제도의 취지 및 회생절차와의 관계 ····· 321
나.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준칙 ····· 321
다. 적용대상 기업 ····· 321
2.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 322
가. 인가요건 완화 ····· 322
나. 관리인불선임 원칙 ····· 322
다.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조사 ····· 322
라.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 ····· 323
마.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로 인한 간이회생절차 폐지 ····· 323
3. 간이회생절차 운영상의 특징 ····· 323
가.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진행 ····· 323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적극적 활용 ····· 324

다. 채권자협의회의 원칙적 불구성 ····· 324
라. 신속한 종결 ····· 324

부록

1. 관리인 허가신청서 양식 (예시) ····· 325
2. 관리위원회 의견서 (예시) ····· 401

제 1 장

직무편람의 목적과 관리위원회의 지위

제1절 직무편람의 목적 및 한계

1. 직무편람의 목적

관리위원회 직무편람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직무편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과 서울회생법원 내규, 준칙 및 지침에 따른 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또는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직무편람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의 직무 수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무편람의 한계

관리위원회 직무편람은 내부적으로만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 이 직무편람에 의하여 어떠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도 창설되지 아니하며, 그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직무편람의 작성자 및 국가는 이를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직무편람은 작성일까지의 관련 법령과 내규, 준칙 및 지침 등을 반영하였다. 이 직무편람을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이 책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시행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말하고,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말한다.

제2절 직무편람의 구성

1. 직무편람의 장 · 절 구성

관리위원회 직무편람은 장, 절과 그 아래에 세부목차로 구성된다.

제1장과 제2장은 직무편람의 목적 및 구성과 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의 지위 등 일반론에 관하여, 제3장부터 제16장까지는 회생사건에서 관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각 기술한다.

관리위원회의 직무가 회생사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직무편람은 시간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주로 회생사건에 관하여 기술하는 데에 그치게 되었다. 앞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법인 파산사건 등 도산절차 전반으로 확대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2. 직무편람 구성의 특징

이 직무편람은 종래의 교과서적인 구성에서 탈피하여 관리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회생절차의 개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되, 여러 절차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예컨대 제13장의 M&A와 관련된 부분, 제14장의 관리인의 허가신청 · 보고 및 법원의 감독과 관련된 부분, 제16장의 간이회생과 관련된 부분 등)에는 별개의 독립된 장에서 설명함으로써 관리위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관리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주로 착안하여야 할 사항을 각 단계별로 기술함으로써 실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반면에 연구서와 달리 학설의 대립에 관하여는 실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소개하였다.

제3절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의 지위

1. 관리위원회 도입 연혁

관리위원회 제도는 1998. 2. 24.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제정으로 개인채무자회생사건에서도 관리위원의 업무와 권한이 규정되었다). 도산사건의 적정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원[2]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등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관리인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2.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에는 상임관리위원과 비상임관리위원이 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15인의 관리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그 중 9인은 상임관리위원이다. 상임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규칙 제14조 제2항). 상임관리위원에게는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비상임관리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한다(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2).

3. 관리위원회의 지위

가. 회생법원에 설치되는 위원회

2) 이 책에서 '법원'은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서울회생법원 또는 회생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말한다.

관리위원회는 회생법원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임기 3년인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4조 제1항).

관리위원의 자격으로는 ① 변호사 ·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④ 법률학 · 경영학 · 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이다.

관리위원은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법 제16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이다(규칙 제14조 제1항). 부위원장은 상임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규칙 제14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두고, 회생법원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나. 법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① 관리인 · 보전관리인 ·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 파산관재인 · 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② 관리인 · 보전관리인 ·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③ 회생계획안 ·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④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⑥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⑦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그 밖에 도산절차에 관한 필요한 의견의 제시)를 수행한다.

다. 관리 · 감독 업무의 보고 대상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 · 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관리 · 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의2).

4. 관리위원의 지위

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 관리위원회의 업무수임인

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 관리위원회 내의 주무위원

한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규칙 제16조). 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절차로서 주무위원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절차 관련 업무, 개인회생절차 관련 업무에 대하여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라. 법원의 업무수임인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임의 절차는 결정으로 하고(규칙 제30조 제1항),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규칙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관리위원회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사무를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관리위원회의 특정 관리위원에 대한 업무위임이나 주무위원 지정과는 다르다.

또한 특정 관리위원이 법원의 허가사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관리위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회생절차와 관리위원회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1. 회생절차의 의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등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법 제1조, 제34조)

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라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통하여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집단적 채무조정은 본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전 단계로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확정하는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자나 주주가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졌는지 확정하기 위하여 채권조사와 조사확정재판을 한다. 한편으로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 평등의 원칙에 의해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희생과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생계획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법 제39조의2 제1항). 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채무자의 재건이 청산을 통한 퇴출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성 판단을 위해 회생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양자를 비교한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한다.

채무자가 회생을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채권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상거래 채권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채무자와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초기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제출된 자료와 채무자 대표자의 심문 결과를 통해서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투명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채권자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채무자 회사의 재산관계와 경영에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 · 보전관리명령과(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두고 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회생하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과는 달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강하게 기대한다. 이에 대한 절차적인 수단으로서 관리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회사의 상태와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정

하게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편파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변제재원 마련을 위한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를 적절히 지도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외부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절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M&A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채권의 변제가 개시되어 회사가 법원의 관리 · 감독 아래 있기보다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3조).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88조).

2. 회생절차의 흐름

가. 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폐지 또는 종결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1-1〉 같다.

〈그림 1-1〉 회생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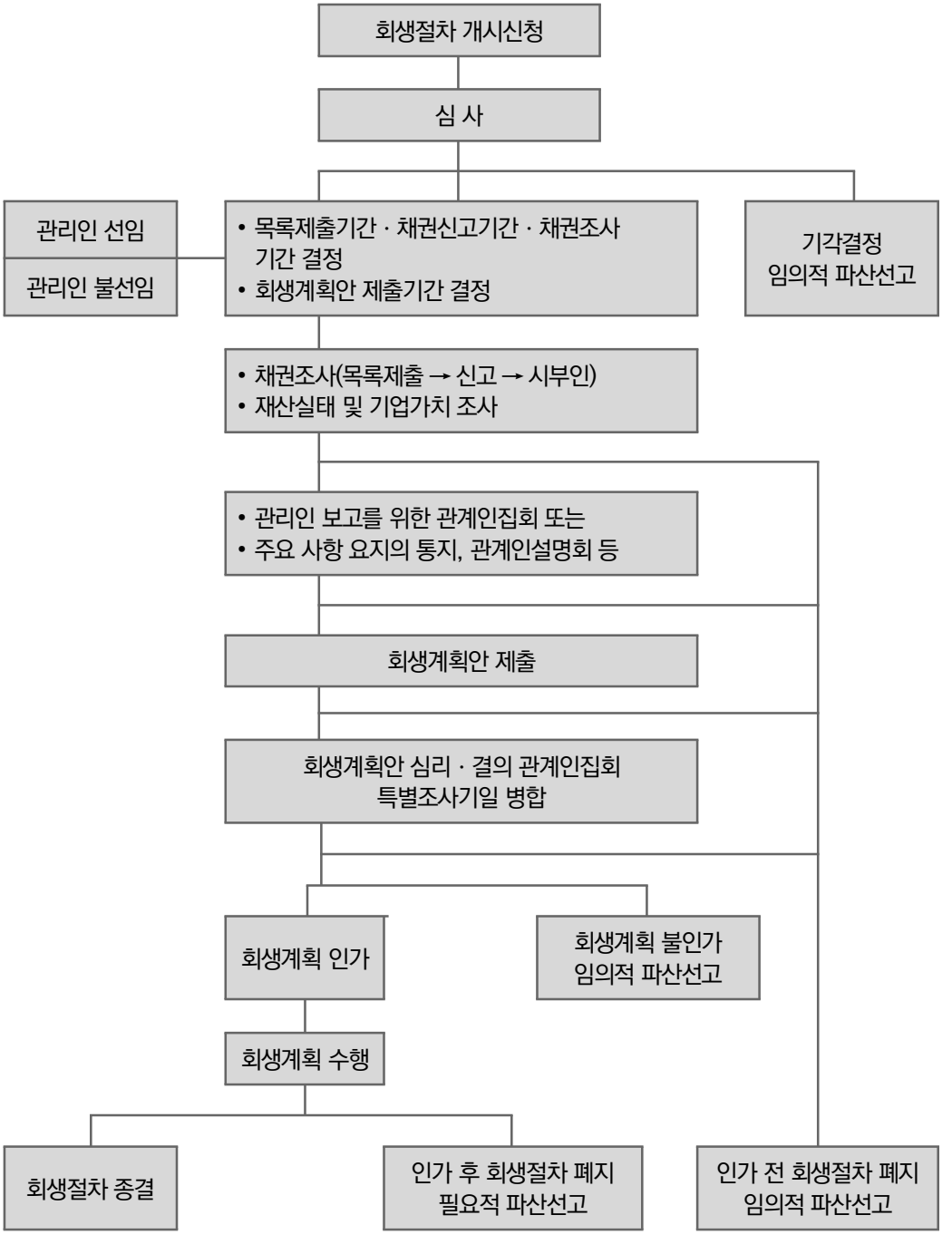

나. 회생절차의 흐름

1)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 ·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제2항).

2) 보전처분 · 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 · 보전관리명령이 있고(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법 제44조, 제45조).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법 제49조),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5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4) 채권자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 출자지분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 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채권조사는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내용과 액수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 내용을 시인 또는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채권조사기간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 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5) 채무자 재산의 조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착수하고(법 제89조),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법 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법 제87조 제1항),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3항).

이러한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관리인은 그 결과에 기초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평가하여 채권조사기간에 그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을 시인하게 된다. 나아가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 · 형평성, 수행가능성 및 청산가치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6) 회생계획안의 작성 · 제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고(법 제50조 제1항 제4호),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20조 제1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주주 · 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 제221조).

7) 회생계획안의 심리 · 결의 · 인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이하 '심리 집회'라 한다)를 소집한다(법 제224조).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한 기일을 정하여 관계

인집회(이하 '결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한다(법 제232조).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가결되고, 청산형 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하여야 하고 나머지 조의 가결요건은 위와 같다(법 제237조).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 결의를 하기 전에, 회생절차 ·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 · 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청산가치보장을 준수할 것 등의 인가요건을 미리 검토하므로(법 제243조), 보통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는 같은 기일에 진행하고, 결의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그 집회 당일 인가 결정을 하고 있다.

8)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257조 제1항).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9)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종결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의 성공적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 회생절차 폐지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할 경제성이 없어서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구분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의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제288조).

제2절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위원의 역할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리위원의 지위는 제1장 제3절에서 살펴 본 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관리위원의 지위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의 역할을 관리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함께 다양한 절차관계인과의 관계에서 살펴봄으로써 관리위원의 업무를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보는 것도 관리위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관리위원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나, 관리위원의 역할에 모두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기술한다).

1.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보좌

관리위원은 회사가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회사를 살리는 경영활동과 회생절차 진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난관을 해쳐나가는데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어떠한 자료나 증빙을 가지고 조사위원을 설득하여 원하는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경영활동은 관리인의 영역이기는 하나, 관리위원은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회생 사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회사의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관리위원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회사의 경쟁력, 회사의 재무상태, 경제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진행을 보좌하고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는 법률 · 회계 · 경영 ·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우수한 자질과 인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업무수행

관리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등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켜야 하며, 허가 위임 사무나 관리인의 목록 · 시부인표 ·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과 관련된 지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생절차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까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위원의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법원에 보고하여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즉, 관리위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해야 한다.

3. 절차관계인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충실한 절차 진행 도모

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 대리인,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 그리고 조사위원이나 구조조정담당임원과 같은 다양한 절차관계인이 개입하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관리위원은 법원을 보좌하여 절차관계인이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내어야 하며, 때로는 절차관계인이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도 있다.

가. 채무자의 관리인

기존 경영자 관리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제3자 관리인의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거나 공적 수탁자로서의 자세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위원은 관리인이나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의를 받아 답변하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며,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지도한다. 회생절차 진행 초기부터 절차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함으로써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채무자의 대리인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대리인은 회생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때로는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절차진행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채무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나 채무자와 대리인 사이에는 충실한 법률적 조력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적정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다. 채권자 및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며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17조, 제20조). 채권자

협의회는 통상 하나만 구성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채권자를 그 채권의 성질이나 금액에 따라 분류하여 여러 개로 구성하기도 한다.

라. 조사위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등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관리위원이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표자심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거나 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절차 진행 중 인지한 사실에 근거하여 회사의 과거 경영활동 중 임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의심이 생겼을 때,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사위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여 충실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

또한 최종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초안을 법원에 보고하는 단계에서는 관리위원은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적절한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관리위원 또한 기업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채무자와 조사위원 간에 견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관한 것이다. 미래의 매출액, 영업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추정에서 채무자와 조사위원 간에 의견이 대립될 때에 관리위원은 법원의 판단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한다.

마. 구조조정담당임원(감사 포함)

채무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측면과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자문측면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의 역할은 지대하다. 금융기관에서 기업경영지도 및 자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회생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회생업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전문가들 중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기존의 경험자 중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 회사에 출근하여 채무자 회사의 세세한 경영상황을 점검하므로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올바른 역할 여부가 회생절차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구조조정담당임원을 통하여 회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점검할 사항을 요청하기도 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서류 및 보고서류에 대한 구조조정담당임원의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업무의 충실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을 평가하는 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합한 인력이 회생절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절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위원 이외의 기관 · 기구

1. 법원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전속하여 담당한다(법 제3조 제1항, 제5항). 정관의 본점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경합적으로 관할이 존재한다(법 제3조 제2항).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4항).

2. 관리인

가. 개요

현행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debtor in possession, DIP)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재정적 파탄의 초기 단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 노하우를 살려 회생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관리인의 선임 · 불선임, 임기 · 보수, 관리인대리

1)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관리위원회

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만 ①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이사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②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실무상 대표자심문이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드러나 개시결정과 동시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등에 의해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밝혀져 회생절차 진행 도중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이하 '회생·파산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조회를 거친다[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6-5) 제5조 제1항, 준칙 제211호 제19조].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의 지위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제3자 관리인은 기존 경영자나 직원들이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반발하여 업무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보다 더 큰 포용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2) 관리인 불선임과 법률상 관리인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법 제74조 제3항, 제4항).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실무상 '법률상 관리인'으로 칭하고 있다.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채무자의 대표자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변경되면 그와 같이 변경된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3) 임기·보수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경우 실무상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3자 관리인의 경우 임기를 정하여 선임하는데, 통상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 때까지)로 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1년 내지 2년의 임기를 새로 정하되, 채무자의 결산기, 실적평가에 필요한 기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이 동종업종의 보수실태,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법 제30조, 준칙 제211호 제3조). 법률상 관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결정을 하지 않는데, 법률상 관리인은 자신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비절감, 고통분담 등의 차원에서 정관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진하여 보수를 삭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4) 공동관리인 · 관리인대리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하여야 한다(법 제75조 제1항).

관리인은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관리인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대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76조).

다. 관리인의 지위 · 권한

1)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회생절차 내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관리인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82조). 또한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각종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법 제56조).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법 제89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257조).

관리인의 권한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관리인과 채무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법 제61조 제2항),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법 제62조). 또한 실무상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재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 만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고(법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5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 제648조 제1항).

3) 소송행위의 당사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법 제78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원 · 피고가 되고(법 제59조 제1항, 제2항),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것은 우선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4) 법원의 업무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규칙 제8조).

관리인의 업무보조는 주로 송달 · 통지업무, 신고서 접수업무, 집회시의 출석현황 확인 업무 등이다.

3. 조사위원

조사위원은 실무상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선임된다. 선임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채무자의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실무상 조사위원에서 배제된다(준칙 제217호 제5조).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 ·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4.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법 제20조, 준칙 제216호 제2조 제1항). 채권자협의회는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소액채권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법 제20조, 규칙 제34조). 실무상 큰 규모의 채무자는 6인 내지 10인, 작은 규모의 채무자는 4인 내지 5인의 채권자로 구성하되, 금융기관이 회생담보권자이면서 동시에 회생채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 주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를 우선 포함시킨 다음 다액의 기타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관리인 ·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채무자의 감사선임, 영업 · 사업양도 등에 관한 매각주간사 · 실사법인 · 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회생절차 개시 · 폐지 · 종결 등 법규가 정한 사항이나 법원 · 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50조,

제87조, 제132조, 제288조 등).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서류 · 결정서 ·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와 규칙상 인정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계획 폐지결정,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 ·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한다(법 제22조 제1항, 규칙 제39조).

또한 관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22조 제2항, 제3항).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이 분기보고서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21조 제3항). 이러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법 제179조 제1항 제13호).

채권자협의회는 ①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59조).

5.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감사 선임을 위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면접을 거쳐 감사를 선임한다. 실무상 후보자는 주로 채권자협의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거나, 추천이 없을 경우 각종 경제단체의 경로를 통하여 법정관리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명단 중에서 선정한다. 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친 후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회생 · 파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준칙 제220호 제3조 제1항).

감사의 임기는 보통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준칙 제220호 제5조). 채무자가 소규모업체인 경우에는 감사보수 지급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1인이 여러 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준칙 제220호 제8조).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명받은 사항을 조사 · 보고하고(준칙 제221호 제3조), 분기별로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다(준칙 제221호 제4조).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위촉하는데(준칙 제219호 제2조),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도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면접을 실시한다(준칙 제219호 제3조).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감독하거나 거래관계 및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인가 후 감사와 유사하다(준칙 제219호 제7조).

제 3 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법 제49조 제1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심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①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①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제출기간, ②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③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④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한다. 또한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법원 ·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하고,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한다(법 제61조, 제87조, 제92조).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체절차로서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또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98조 제2항).

2. 관리위원의 주안점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기각사유 중 가장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경우는 첫째, 채무자의 개시신청서 내용과 대표자 심문과정에서 명백하게 회사가 회생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영업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영업을 재개할 여유자금이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최근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적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그 폐지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통상 바로 기각을 할지 아니면, 개시 전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진행 또는 기각여부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기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채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개시 전 조사를 하기도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향후 진행할 회생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관리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지도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의 업무 중 허가사항, 보고사항, 목록작성, 시부인표작성,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한 협조, 회생계획안 작성 등 절차 진행의 단계별로 관리인이 사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준다. 특히 관리인의 권한인 부인권행사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 또는 해제 · 해지에 대하여 안내한다.

제2절 개시신청서 접수

1. 사건 접수 및 절차진행 준비

사건이 접수되면 관리위원은 실무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신건 배당을 통보받는다. 관리위원이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사건조회”에 접속하여 사건 확인을 하면서 신건 배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건 배당을 통보받으면 관리위원 개인의 담당사건 관리용 “사건기록부”에 등재한다. “사건기록부”에 등재할 때 또는 보전처분 일정을 통보할 때 신청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인(사무실 직원 포함), 채무자대표자(담당 임직원 포함)의 성명, 전화번호를 파악한다.

2. 사건의 현황 파악

신건 배당 후 즉시 채무자 현황 등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검토하여 개시요건 및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통상 사건접수 후 곧바로 보전처분이 진행되므로 보전처분시 대표자에게 안내할 유의사항을 유인물로 준비한다. 법인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검토하여 채권자협의회 구성안을 미리 구상하고, 추후 보전처분 발령시 대표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을 준비한다. 간이회생 사건과 일반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절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1. 보전처분 기일 준비 및 보전처분 이후 유의사항 안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에 관한 의견 조회"가 오면 이에 대하여 회신한다[양식 2-1]. 의견 조회가 있는지 여부는 신건 배당 사실 확인 후 "재판사무시스템 - 관리위원용 캐비닛"을 수시로 조회하여 파악한다.

법원이 보전처분 기일을 지정하면 대표자와 신청대리인(사무실직원 대동 가능)에게 보전처분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도록 한다. 신청대리인 등 관계인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과 기일 재조정을 상의하여 보전처분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한다.

정해진 보전처분 기일에 관계인 출석 여부, 심문실 준비 등을 확인하여 법원에 알린다. 보전처분 기일에 참석하여 법원의 일정 진행을 보좌하며, 일정 종료 후 미리 준비한 아래의 〈표 3-1〉 '보전처분시 유의사항'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설명 · 안내한다. 실무상 채무자의 담당 임직원 및 대리인 사무실 직원에게도 함께 안내하면 추후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도움이 된다.

〈표 3-1〉 보전처분시 유의 사항

* 보전처분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의 지급(급여 포함) 및 채무부담행위(계약체결 포함)와 직원 채용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모든 허가신청서에는 반드시 회사 내부지급품의서(내부 결재)를 첨부하고, 허가신청서에 작성책임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기하십시오(금전지출허가 신청서에는 허가금액 지급 전과 후의 보유현금 잔액을 각각 기재).

* 지급허가 신청서 내용은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에게 문의한 다음 접수하십시오. 접수 후 오류 발견시에는 해당서류의 접수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해당 문건은 수정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 지급허가 신청서에 반영할 사항 : 지급대상 채무의 발생원인 및 발생시기 또는 발생기간, 지급예정일 및 채무내용 확인 가능한 증빙서(대금청구서, 거래명세서, 입고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허가대상 행위는 무효(법 제61조 제3항)이며, 또한 형사처벌(법 제648조 제1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시결정일까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 채무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까지 상계 가능하므로(법 제144조), 시재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위한 자료 제출 (대법원 규칙 : 신청 후 1주일내 구성)
 * 채권액 순위별 7~10개 채권자 (상거래 채권자 및 신용보증기관 포함)
 *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대부분 금융기관은 담당부서를 본부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담당자가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하십시오.

- 보전처분일 현재 우선 변제채권 미지급액 내역 및 현금 보유액 등 보고
  * 세금, 4대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 각 개인별 미지급 인건비(임원과 직원 구분) - 미지급 발생시기별
  * 보유현금

- 파산과 실무관에게 방문하여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문사항은 관리위원 앞으로 문의 : e-mail 문의시는 발신자의 직급,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 기재 요망

* 관리위원 : ○○○ (전화 02-530-0000 ; FAX 02-599-7720)
  e-mail : ○○○○@scourt.go.kr

2. 보전처분시 추가로 안내할 사항

가. 포괄적금지명령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포괄적금지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새로이 할 수 없고, 또한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중지된다(법 제45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예금채권, 요양급여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경매는 중지된다. 실무상 일반회생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나. 예납금의 납부와 자금의 차입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예납금 납부를 명령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시재를 확인하여 예납금 납부 가능 여부 및 재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되, 자금 차입 허가시 채권자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아울러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한다.

다. 대리인의 수임범위 확인

회생절차와 관련한 신청대리인의 수임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폐지 또는 인가 결정시까지이나, 종종 개시결정시까지로 한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전처분 발령시 대리인 수임범위를 구두로라도 확인하여 만약 개시결정시까지인 경우, 개시 이후의 위임계약 체결이 필요하고 이는 법원 허가사항임을 안내한다.

라. 회생컨설팅제도 소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소개한다. 채무자가 회생컨설팅 신청의사가 있다면 추후 회생컨설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전화로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채무자가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컨설턴트가 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시결정시 별도로 조사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마.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취하

회생절차는, 보전처분 이전에는 자유롭게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 이후에는 절대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바.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후보자 명단 제출 안내

보전처분 발령 후 1~2일 내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후보 명단을 아래의 〈표 3-2〉 양식에 따라 관리위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알려 주도록 대표자(및 담당 임직원)에게 지도한다.

〈표 3-2〉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명단후보

사건번호 :
채 무 자 :
대표이사 :

1.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명단 후보(안)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채권자	부서명	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채권액(원)	채권내용

- 작성요령 -

1. 채권금액이 큰 순서대로 10군데 선정**(보증채무 등의 경우에는 주석으로 그 내용을 기재)**
2. 채권자의 부서명(ex 기업개선부, 기업회생부, 채권관리부) 및 담당자의 직책(ex 홍길동 차장)을 반드시 기재하고, 채권자명은 정식명칭으로 정확히 기재(주식회사인 경우(주)를, 유한회사인 경우 (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개인이름 기재 후 괄호 안에 상호를 기재)
3.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통상 본점의 기업개선부 등으로 이관되므로 본점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을 기재.
4. 직통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반드시 기재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전화 530-0000, 팩스 599-7720)

제4절 채권자협의회 구성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개시 신청 후 1주일 이내(가급적 대표자심문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받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후보 명단을 토대로 하여 최대 10인 이내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담아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문서를 생성한다.

채권자협의회는 통상 총 채권액(공익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제외)의 60~70% 이상에 달하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며, 가급적 회생담보권자 · 회생채권자를 모두 포함시키도록 한다. 대표채권자는 최다액채권자로 하되 가급적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이 절차진행에 효율적이다. 대표채권자 지정시 당해 채권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금융기관일 경우 여신취급지점에서 본점으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관된 경우에는 본점담당자로 기재한다.

대형사건 또는 회원제 골프장 사건과 같이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 등의 경우 법원과 협의하여 채권자 그룹별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 절차 신청 이전에 외부 채권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자 등은 가급적 채권자 협의회에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절차진행 중에 (대표)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유동화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2.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채권자 지정을 관계인에게 통지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생성 문서를 각 구성원에게 팩스로 통

보하고,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한 후 문서를 법원에 이메일로 보고하는 한편,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파산과 실무관에게 보낸다.

3.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전문가 지원

채권자협의회는 절차진행 중에 변호사, 회계사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후 채무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설명한다(법 제21조 제3항).

대형사건의 경우 절차진행 중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채권자협의회에서 별도의 회계법인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절 대표자 심문

1. 대표자심문 답변사항 검토

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및 장소를 직접 지정 ·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가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하기를 희망할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처리한다.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하루 전까지 심문사항 답변서를 법원, 관리위원에게 각각 이메일로 보내도록 요청하고(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이 직접 설명함) 추후 이를 확인한다. 이메일이 오지 않았을 경우 연락하여 심문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심문사항 답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심문시 보충질문할 사항을 미리 메모해 둔다.

[주요검토사항]

- 채무의 내용, 금액 등의 정확성
- 부실화의 직접적 사유 및 회생 방안
- 제3자 관리인 선임사유 존재 여부
- 조세채권 또는 공익채권 과다시 해결 대책
- 은닉재산의 존재 가능성
- 재무제표상 급격하게 변동한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이유
- 관계회사와의 거래 현황
-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는지 여부
-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현황 등

2. 대표자심문 준비

심문 기일에 대표자, 신청대리인, 참여관이 모두 출석했는지 확인한다. 전원 출석하였으면 법원에 심문이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심문 기일에 참석하여 법원의 심문 후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특히 심문 기일에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사항을 메모해 두었다가 추후 보정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심문시 제기된 쟁점 등을 메모해 두었다가 추후 시부인표 작성, 조사보고서 검토 등에 활용한다. 대표자심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할 경우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속행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3. 대표자심문을 현장검증과 함께 실시하는 경우

사건에 따라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채무자 본사 또는 공장사무실에서 실시한다. 현장검증시 채무자 대표자가 간략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공장가동상태, 직원근로실태, 재고나 원자재상태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핀다. 현장검증에는 신청대리인이 참석하도록 안내한다.

제6절 개시결정

1. 개시결정의 준비

법원에서 보낸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다[양식 2-2]. 의견조회서가 있는지 여부는 '재판사무시스템-관리위원 캐비닛'을 수시로 조회하여 파악한다.

법원에서 대표자심문 후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주면 상의해서 개시결정 기일을 정한다. 개시결정 기일에 채무자, 신청대리인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과 상의하여 기일을 재조정하기도 한다.

개시결정 기일 및 심문실을 대표자, 신청대리인 및 조사위원(또는 회생컨설턴트)에게 전화로 통지한다. 개시결정 전에 구조조정담당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조정담당임원에게 개시결정 기일에 참석하도록 통지한다. 개시결정 기일에 관계인이 전원 출석하고, 심문실 등이 준비되면 법원에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2. 개시결정시 채무자 지도 사항

가. 회생절차 진행 일정 안내

개시결정시 법원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보고집회 또는 대체절차 일정,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고지한다. 관리인이 법원에서 고지한 기한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요사건(부장판사가 주심인 사건과 그 외 부채 300억 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개시결정 이후의 일정이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관리인이 이를 체크하도록 당부한다.

나. 개시결정 후 유의사항 안내

관리인 및 회사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시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아래의 〈표 3-3〉 '개시결정시 관리인 유의사항'으로 요약하여 교부 ·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리인에게 '관리인직무편람'을 소개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개시결정 직후 파산과 사무실에 들러 해당 사건의 담당 실무관으로부터 회생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한다.

〈표 3-3 〉 개시결정시 관리인 유의사항(법인)

☞ "관리인 직무 편람" 숙지-법원도서관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발간정보-법원도서관 간행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1. 개시결정일 이전에는 모든 금전 지출허가 건은 법원 허가사항이었으나,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 허가사항, 관리위원허가사항, 관리인전결사항으로 구분됩니다.
☞ ( ) 이상 지출건(계약건별, 항목별 등) 금전지출 허가 받아 지출
(1) 신청서에 허가금액 지급 전과 후의 보유현금 잔액을 각각 기재하시고,
(2) 반드시 회사 내부지급품의서(내부 결재)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법원 허가사항의 경우 사전에 관리위원에게 검토 받은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개시결정일 이전 회생 채무(대부분의 채무)는 액수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지출 불가합니다.
☞ 개시결정일 이전/이후의 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직원 급여 :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 가능 (공익채권임)
- 임원 급여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급여는 회생채권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함/ 개시결정일 이후의 급여는 공익채권임

3. 관리인 인감 신고 (기존 대표이사 인감은 사용불가, 회수하여 관리인이 보관)

4.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은 수계 허가 받아서 진행해야 함

5. 보고서 제출(정기/수시) : 첫 보고서

(1) 법원에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1/4, 3/4분기), 반기보고서(2/4분기), 연간보고서(4/4분기)를 익월 20일까지(일반회생사건은 15일까지) 제출
(2) 월간보고서의 차기이월잔액은 보유 형태 명시(예금인 경우 통장사본 첨부)

6. 목록 작성 준비(주의: 파산과에 제출하는 채권자 명부 및 주소록과는 상이함)
(1)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담보제공된 회사소유의 자산(부동산, 리스기계, 차량 포함)은 즉시 법원 허가 받아 감정 의뢰 :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
(2) 담보제공된 동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는 목록에 첨부하여 제본
(3) 각 채권자들에 대한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 기재(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구분)
(4) 각 채권자가 신고를 안 할 경우, 목록기재 내용으로 채무확정됨.
(5) 발행어음과 소송중인 채무도 목록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어음원본 보유 여부 (미)확인" 및 "소송중인 사건 번호" 등 기재하여 채권 시 · 부인에 대비.

7. 채권신고기간 :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하도록 통지

8. 채권시부인(조사기간): 아주 중요함을 강조
(1)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형태(회생담보권, 회생채권 :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구분)로 시 · 부인하되, 채권신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관리인이 법원에 부인사항을 제출 안하면, 채권신고 내용은 전부 시인된 것으로 확정(법 제161조)되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법 제82조).
(2) 채권신고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신고된 채권만 조사기간 중 시부인 대상임[추완 신고분은 추완신고 시 · 부인시(통상 관계인집회기일과 병합하여 열리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3)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어음원본 최종소지인이 채권자이므로, 채권신고 접수시 어음의 원본(전자어음은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하고, 신고한 사본에 어음원본 확인필 날인하며, 목록에 기재한 어음채무라도 어음원본 미제시(미신고 포함) 때는 부인
(4) 시인한 채권은 추후 정정이나 취소 불가하므로, 불확실한 채권은 가급적 부인하도록 함

9. 조사위원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가액을 평가, 회생절차 계속진행의 타당성 여부, 향후 10년간 자금조성 및 변제가능액 등을 조사, 관리인은 그 업무에 적극 협조(자료제출 등)해야 함

10. 관리인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감안하여 별도로 보고서 제출

11. 관계인설명회 개최/주요사항통지 명령: 보고집회 대체 절차로 설명회/주요사항 요지를 채권자 모두에게 우편, 메일,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함
☞ 주요사항 요지 통지 사전보고 : 요지통지명령일 3일 전까지
☞ 주요사항 요지 통지 결과보고 : 요지통지명령일 이후 5일 이내

12. 회생계획안 제출 : 조사보고서 자금수지 내용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 제출

13. (법률상) 관리인께서 읽어 보세요
☞ 회사 업무 담당자는 보전처분 유의사항과 개시결정 유의사항 및 결정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 바랍니다.
☞ 결정문 등에 정해진 모든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고, 전자로 제출할 경우 시스템 이상 등을 감안 하루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든 제출자료는 제출기일 최소 3일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리위원의 검토 받으세요.

14. 주무관리위원 : ○○○ 관리위원(관리위원실 4별관 419호)
☎ 02) 530-0000 FAX : 02-599-7720 e-메일 : ○○○○@scourt.go.kr

[주요안내사항]
-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 등 개념
- 향후 절차진행의 개요
- 절차 진행 일정의 준수 의무
- 월간보고서 작성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의무
- 조사위원 소개 및 협조 필요성
- 허가받아야 할 사항 안내 및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 예금계좌 개설 신고,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해지권 행사 및 이행 선택 보고
- 자구노력방안의 수립
- 부인권행사 대상 유무 확인 후 부인권 행사 등

회생담보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작성 · 제출을 위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므로 법원 허가를 얻어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통상 목록 제출기간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즉시 의뢰할 필요가 있다. 실무준칙 제222호(채무자 자산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인의 선임과 보수기준)에 따라 감정인 후보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감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개시결정시 관리위원 개인별 사건기록부에 절차진행 일정을 함께 기재해 두었다가 추후 일정을 관리한다. 관리인 및 담당 임직원의 명함을 받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추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한다[양식 2-3].

3.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신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하 '강제집행 등'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연히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다만,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중지될 대상이 없다.

개시결정 후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회생계획 인가로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으로 그 효력이 중지되나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효되지 않고(법 제256조 제1항), 특히 법 제58조 제3항 기재 체납처분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당연히 속행하게 되어 더 이상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체납처분 취소의 필요성은 인가 전 · 후에 따라 다르지 않고 거의 모든 회생계획에서 조세등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고 있는 점,

많은 사건에서 체납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회생계획 수행(담보물 매각)에 곤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가결정 후 체납처분을 취소한 예(2014회합146 동아건설산업㈜ 사건 등)도 있다.

채무자 영업에 필수적인 매출채권에 대하여 개시결정(또는 포괄적금지명령)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인에게 취소 필요성을 검토하게 하여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 신청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4. 제3자관리인 또는 공동관리인 선임

개시결정 전에 법원에서 제3자관리인 또는 공동관리인 선임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법원에서 관리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주면 개시결정기일에 채무자의 대표자와 제3자관리인(또는 공동관리인)이 모두 출석하도록 통지한다.

5.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위촉

개시결정 전후로 대표채권자 등 주요채권자에게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한다. 사건에 따라 법원과 상의하여 기존의 경력자 중에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다.

추천한 채권자로부터 후보자 이력서를 첨부한 공문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다. 추천받은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의 이력서를 법원에 전달하고, 법원과 면접일시를 정하여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법원의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 면접에 관리위원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정하여 알려주면 선정된 구조조정담당임원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인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도록 하여 유의 · 당부사항을 지도 · 안내하는 한편, 관리인에게는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 체결허가를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구조조정담당임원 보수는 법원에서 정한 액수가 위촉계약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이 출석하면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임무와 역할" 유인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교부하면서 관리인과 구조조정담당임원의 관계, 역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부터 규정양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법원에 전달한다.

[주요안내사항]
- 회생절차 관련 조언 및 협력
- 자금수지점검 및 법원 보고(필요시 주심판사 이메일 안내)
- 채권자협의회 보고
- 허가문건 사전 검토
-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한 채권자 설득
- 관리인의 법원보고시 동석 등

6. 개시 전 조사

대표자심문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회생절차개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바로 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개시 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알려 준다. 이때 '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다.

법원과 상의하여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결정일을 정한 후 채무자의 대표자, 신청대리인, 조사위원에게 기일 및 장소를 전화로 통지하고, 기일에 관계인 출석, 장소 준비 등을 확인한 후 법원에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개시 전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메모해 두었다가 일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어 법원에서 기각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회생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다[양식 2-4]. 의견조회 여부는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관리위원용 캐비닛'에 접속하여 체크한다.

제7절 개시결정의 효과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가. 업무수행권 · 재산관리처분권의 이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법 제56조).

나.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 행위의 구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 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64조). 이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상대방의 반대이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만 등기권리자가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의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6조).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67조).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68조).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119조 본문).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나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미이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므로, 채무자 또는 상대방 중 한쪽이라도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해제 · 해지와 이행의 선택권 행사시기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해제 · 해지 또는 이행 사이의 선택권을 보유한다.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미이행상태의 쌍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면서도 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상대방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선택권의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 · 해지권을 포기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법 제119조 제2항). 법원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위 30일의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119조 제3항).

관리인은 심리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해제 ·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119조 제1항 단서). 이는 관리인이 해제 · 해지권을 선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는데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 선택권 행사의 효과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121조). 즉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반면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물론 관리인도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관리인이 쌍무계약으로 이행을 선택하였다면 공익채권으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참조),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채권으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참조) 각 취급한다.

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상대방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124조 제4항).

또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제119조 제4항).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 · 수도 · 가스공급계약)

전기 · 수도 · 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법 제122조 제1항). 그 대신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전기료 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종래 한국전력공사에서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에 관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실상 선납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경우가 있었고, 이에 채무자가 부득이 그 납부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채권자들의 평등한 취급을 통한 채무자 회생이라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신청을 불허한 예가 있다(2016회합100125 ㈜신어산음료).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가. 도산해제 · 해지조항의 효력

도산해제 · 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권이 발생한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의 발생을 계약의 당연 해제 ·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말한다.

도산해제 · 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실무는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도산해제 · 해지조항에 의한 해제 ·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3)]

3)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나. 리스계약의 해지 문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리스회사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시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지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개시 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리스이용자인 채무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는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금지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②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는 보전처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현재 관리위원은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다.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가.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 · 취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등 절차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의 중지는 특별히 취급한다(법 제58조 제3항).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는 강제집행 등이 개시 당시 종료하지 않았을 때 의미를 갖는다. 개시 당시 이미 종료한 강제집행 등은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중지될 대상이 없다. 강제집행의 종료시기는 유체동산 ·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완료를 신고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경우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

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법 제58조 제5항). 개시 당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중지의 의미가 없었다면 법원의 취소결정도 의미가 없게 된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절차가 중지 · 취소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 · 취소되지 아니한다.

나.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속행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 국세 · 지방세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관리인과 국세 · 지방세 등의 징수권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일반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법 제58조 제5항).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법 제59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므로, 이사회 · 주주총회 등의 무효 · 취소의 소 등 채무자의 인격적 활동에 관한 소송, 주주에 의해 제기된 주주지위 확인의 소, 채무자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등 조직법적 · 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하지만 조직법적 · 사단적 활동에 관한 권한은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시 당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즉시 수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이 · 신속한 절차인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한편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 예를 들

어 공익채권, 환취권에 관한 소송,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에 기한 이행 또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2항).

나. 기존 소송절차와 채권조사확정절차와의 관계

1) 개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된 경우 또는 개시 당시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 따라서 기존 소송절차가 있었더라도 반드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채권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개시 당시 계속되었던 소송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한편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가 필요한지, ② 소송절차의 수계는 이의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대상 채권자가 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원고로서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회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의자 전

원을 상대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70조 제2항). 즉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소송절차의 수계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이 회생채권자가 피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청구취지로 반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경우

회생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종국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진행 중이라거나 항소심 · 상고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즉 재심, 청구이의의 소, 상소로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만일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제1심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만료일 사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상소기간 등 기간의 진행 역시 정지되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상소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이의주장의 방법으로 하는 소송제기 또는 수계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174조 제3항). 위 기간 내에 소송제기 또는 수계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대로 확정된다. 소송제기 또는 수계가 되면 그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을 한다.

즉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제기나 수계신청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의대상 회생채권자 등이 수계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자와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지만,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를 수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통상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계 후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7. 주주총회 · 이사회 권한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총회 · 이사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가. 주주총회 권한의 제한

주주총회의 권한 중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법 제62조),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한다(법 제200조).

자본감소, 신주 · 사채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모두 회

생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법 제55조 제1항). 정관변경은 회생계획에 정관변경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회생절차와 관계없는 영업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법 제55조 제2항).

이사 · 감사의 선임 · 해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는 그대로 주주총회가 보유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시부터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 · 선정될 자와 그 선임 등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이사 ·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 대표이사에 의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할 수 없다. 감사는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를 정하여 선임한다(법 제203조).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법 제260조). 따라서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그 수행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나. 이사회 권한의 제한

이사회의 권한 중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금의 차입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법 제260조).

8. 공유관계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1항). 이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제69조 제2항).

9.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0조).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점유권이나 채권적 청구권(사용대차 ·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 등)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실무상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 4 장

채무자의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채무자의 가치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에 반하여 재산이 일탈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회복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가 부인권(법 제100조)이다.

또한 채무자 재산 보전을 위하여, 관리인 측의 상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채권자에 의한 상계에 관하여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만 그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가함으로써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법 제131조, 제144조). 채무자의 이사 등 경영자가 법인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채무의 존부에 관해 신속하게 확정하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사확정제도의 특칙(법 제114조, 제115조)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관리위원은 심문을 통하여 부인권 사유 발생의 의심이 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시결정 당시 조사위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부인권 행사를 위해 상대방에게 이전된 재산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사전보고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관리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상계의 법률적 요건과 효과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보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잘 설명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상거래 채권자나 금융기관 채권자들과 사이에 잘못된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또는 부당한 상계권 행사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관리인으로 하여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 · 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도에 해약하게 한 다음 상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부인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2절 부인권

1. 부인권의 개념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들로서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채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거나 담보를 확보해 두려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진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보통 '사해행위'라고 한다)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한다)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이지만, 부인권은 행사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대상행위, 요건, 행사의 방법 등이 채권자취소권보다 완화되어 있다.

2. 부인권의 종류

부인권의 유형은 ①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이하 '지급의 정지 등'으로 부른다)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무

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④ 그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법 제103조), 집행행위 부인(법 제104조), 신탁행위의 부인(법 제113조의2)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본지행위부인'과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즉, 선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 무상부인의 경우는 행위의 무상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여 보호되는 규정이 따로 없다.

행위의 상대방이 임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①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② 본지위기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0일 이내)로, ③ 무상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월 이내)로 규정하여 부인권을 확대하고 있다(법 제101조).

3. 부인권의 행사

부인권은 관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부인의 청구는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식절차로, 부인의 소보다 인지대 등 비용이 절약되고 절차 역시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에 의해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법 제107조).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부인의 대상행위가 되는 채무자 행위의 상대방, 즉 수익자가 일반적이지만, ①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② 전득자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외), ③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

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지위를 넘겨받은 전득자도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법 제110조).

한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또는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다(법 제113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이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도 있고, 별도의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수계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법 제113조 제2항).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부인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행사할 수 없다(법 제112조). 또한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법 제111조). 다만 부인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으로써 위 부인소송은 종료되므로,[4] 이를 막기 위해 통상 부인소송이 계속 중인 회생사건의 경우 회생계획에 부인소송 수행을 위해 회사를 분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부인권 행사의 효과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제108조 제1항).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물리적으로 멸실 · 훼손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무상부인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법 제108조 제2항).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부인권이 성립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②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③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

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등 다수

한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④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과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3항).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 즉 상대방이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을 이행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 또한 원상회복되고 상대방은 원상회복된 채권을 부인된 날부터 1달 이내에 추후보완신고할 수 있다(법 제109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원상회복시켜야 그 후에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한 채권의 추후보완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심리집회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제3절 상계의 제한

1. 개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 제492조 내지 민법 제499조). 수동채권, 즉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나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모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변제받은 결과가 되므로,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2.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 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법 제131조).

3.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가.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관리인에 대하여 가능하다. 또한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상계권 행사와 무관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채권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도래하여야만 한다(법 제144조 제1항).

이는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쌍방의 채권 액수가 신고기간까지 정해지도록 하여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1)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45조 제1호)

2)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태 이후, 즉, 지급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에 관하여, ①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②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③ 회생절차 개시 시점 및 파산선고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법 제145조 제2호).

이는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을 미리 변제받는 결과를 방지하고 채무자가 수동채권을 회수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45조 제3호)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① 그 취득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②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③ 회생절차 개시 시점 및 파산선고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가능하다(법 145조 제4호, 제2호 단서).

이는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염가로 회생채권을 취득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회생회사)가 가지는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4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은 부실경영 등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회생절차 내에서 조사·확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다. 기존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의 책임은 사임요구, 퇴직금채권의 포기, 민사소송제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산회복이 필요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마련한 절차이다(법 제114조 내지 제117조).

제 5 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주식 · 지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은 크게 채권자와 주주 · 지분권자로 구분된다.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으로 구분된다.

전자, 즉,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공정 ·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음에 따라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지만(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된다(법 제180조).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법 제1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 조정은 결국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바와 같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및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 가능 여부, 회생계획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회생계획에서의 변제율 등에 있어 달리 취급되고, 특히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의 규모는 채무자의 자금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차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판단과 직결되므로, 관리위원으로서는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채권 규모를 파악하여 목록기재와 시부인표 작성, 나아가 회생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관리위원은 회생계획 수립 이전, 적어도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이해관계인들과 그 권리의 종류와 액수에 관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해당 권리자의 의결권이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관리인이 채무자 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해당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총회의 권한이 일부 축소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주주의 권한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주주는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안 찬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데, 회생계획안 인가 전 관계인집회의 경우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대부분 초과하나, 회생계획안 인가 후 제출된 변경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2절 채권자의 권리

1. 회생채권

가. 의의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대부분의 회생채권은 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채권발생의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되고, 개시 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서 변제기가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계약이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회생채권이 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하고 특정재산에 대한 물권에 기한 청구권(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다.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결의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법 제133조).

2)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 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후 관리인의 해제 · 해지권 행사로 생긴 것이나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법 제121조 제1항).

그 외에도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법 제123조),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법 제124조), 상호계산 종료로 인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법 제125조),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었으나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법 제108조 제3항 제3호)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나. 조세 등 채권

1)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이하 위 채권들과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이라고 한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 · 지방세와 같이 취급한다.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는데(법 제140조 등), 앞서 본 국세 · 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채권 등은 징수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국세 · 지방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면 회생채권, 개시 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으로 본다. 국세,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

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②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③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된다(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될 수 있고(다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없고 '지체없이' 신고하면 족하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140조로 인해 실무상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의 권리를 감면하는 경우는 없고, 변제기의 유예만 정함이 통상이다.

3) 회생절차에서의 특별한 취급

국세 · 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이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가) 체납처분 등의 중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이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하려면 발령 전에 징수권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되고, 필요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연장될 수 있다(법 제58조 제3항). 일반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연히 중지되는 점과 다르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인가일까지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만 중지된다.

나) 채권조사 · 확정

일반 회생채권의 조사 · 확정은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국세 · 지방세 등은 시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 원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 · 확정이 이루어진다(법 제157조).

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회생계획에서 국세 · 지방세 등에 대하여는 공정 ·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세 · 지방세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담보권보다 우월하게 취급될 수 있다(법 제217조 제2항).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기 유예는 보통 10년의 기간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 뿐, 해당 채권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나(법 제195조), 국세 · 지방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법 제140조 제2항), 징수유예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40조 제3항).

라) 집회에서의 결의참가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국세 · 지방세 등은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법 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은 결의에 있어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조분류를 하고(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그 청구권의 액만큼 의결권을 부여한다.

마) 기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징수권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징수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제3항).

4)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개별

적 변제금지 등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은 신고 누락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실권되지 않으며(법 제251조 단서),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법 제140조 제1항).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는다(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2. 회생담보권

가. 의의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법 제141조 제1항 본문).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법 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41조 제4항).

예를 들면, 회생담보권자 갑이 가액 1억 원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5천만 원의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회생담보권자 을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7천만 원의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자 갑은 선순위자로서 5천만 원의 회생담보권을 가지게 되고, 회생담보권자 을은 1순위 배분 후의 잔존가치인 5천만 원(1억 원 - 5천만 원)의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나머지 2천만 원(7천만 원 - 5천만 원)은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법 제141조 제5항). 예를 들면, 회생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5천만 원, 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은 피담보채권의 액수인 5천만 원이 된다.

한편 회생담보권의 내용이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일 경우에는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법 제141조 제6항, 제133조 제2항).

다. 리스료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해 온 경우, 상대방인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의 성질이 문제 된다.

실무상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고,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인 금융리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유권 유보가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개시 전에 지급하지 않은 연체 리스료는 물론 개시 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도 회생담보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반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금융적 성격보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여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리스료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면 된다. 통상 금융리스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 운용리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용성이 높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되나, 구체적인 구별은 계약내용의 실질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공익채권

가. 개요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서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그 외 개별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이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 변제, 변제기 유예 등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채무자와 거래할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형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법 제179조 제1항에서는 공익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면서도 그 외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79조 제1항 제15호).

나. 법 제179조의 공익채권

구체적으로는 법 제17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다.

전기 · 수도 · 가스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8호). 공급자가 채무자의 개시신청 전 요금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제122조 제1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전기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위와 같은 채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등기부상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채권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 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이고, 임원인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보수채권은 공익채권이다.

이사, 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부터 개시 전까지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채무자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임을 고려한 것이다.

다. 법 제179조에 열거된 이외의 공익채권

그밖에 법 제39조 제4항, 제58조 제6항, 제59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121조 제2항, 제177조, 제256조 제2항 등에서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가.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 여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고(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1조, 제132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된다(법 제58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고, 회생절차가 폐지결정 확정이나 종결결정으로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하다(법 제256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 ·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0조 제3항).

나.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에게 미치고(법 제250조 제1항),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법 제251조),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법 제252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 · 변경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 · 변경이 기재되더라도 그 기재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만, 회생계획에 기재된 공익채권의 면책 · 권리변경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고 채권조사결과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공익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5. 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후기타채권이라고 한다(법 제181조 각 항 참조).

예를 들면, 환어음 등 지급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서 인수 또는 지급을 한 경우에 생기는 자금관계에 기한 채권(법 제123조 제1항),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에 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상대방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법 제64조) 등이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기간 동안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생계획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채권자 외의 이해관계인

1. 주주 · 지분권자

가. 회생절차가 주주 · 지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지분권자는 사원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법 제55조),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주주 · 지분권자의 권한행사에 채무자의 비용지출이 수반된다면 사실상 관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나. 회생절차에서 주주 · 지분권자의 지위

1) 회생절차 참가 및 의결권 행사

주주 · 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가 가진 주식 등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변경할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146조).

주주 · 지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50조 제1항).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고한 주주와 의결권 행사 무렵의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히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야 하는 사정(자산이 부채를 초과)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제150조 제2항). 또한 당초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주식 등의 수가 적고 그 이후 주주변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주주, 신고명의자와 달라진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등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5조).

2)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변경

주주 · 지분권자는 채무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는 자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법 제217조, 상법 제538조, 제612조).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변경은 주식 등의 소각 · 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 지분권자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 지분권자가 가진 주식 등의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205조 제4항, 제6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 · 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법 제254조), 주주 · 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 그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2.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가. 개요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란 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M&A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나 인수자가 신주대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인수자가 이에 해당한다.

나.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 · 진술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196조).

M&A 절차가 진행되어 성공한 결과 그를 근거로 작성된 회생계획안 또는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면 인수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다(법 제233조).

제 6 장

채권 등 목록의 제출 및 신고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회생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반영할 채권의 규모가 확정되어야 한다. 즉,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의 액수, 채권의 성질(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 주주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이다.

그러나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하면서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채권자 주장과 다른 액수를 채권액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중 어느 권리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도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회생채권 등의 신고라 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목록 제출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목록 작성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관리위원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또한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다음, 그 중 회생담보권, 회생채권만 목록에 기재한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을 목록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 실권되지 않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법 제251조). 주주의 경우 실권되지는 않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회생담보권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등기·등록, 채권양도 통지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명부를 통하여 주주의 인적 사항

과 보유주식 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식 · 출자지분의 양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 본인이나 회사 임직원, 그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관리위원은 관리인에게 채권신고절차 안내를 지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신고 및 채권신고서 접수 방법 등을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절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1. 개요

관리인은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47조 제1항). 일단 제출된 목록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서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법 제147조 제4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은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법 제151조).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우선 기재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법 제147조 및 규칙 제52조를 참조한다. 회생채권자의 목록에는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③ 의결권의 액수, ④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는 ①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의결권의 액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에는 ① 주주 · 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2. 목록 작성 및 제출 지도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목록을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이메일 또는 출력물 지참 등의 방법으로 초안을 받아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실무상 사전에 관리인 측에게 샘플 양식을 주어 참고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채권자목록은 추후 시부인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방향을 확인한다. 사전검토 후 수정된 최종 목록을 법원에 이메일로 보내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관리인에게 정식으로 접수(전자접수)하도록 지도한다.

3. 목록 검토시 유의사항

가. 채권의 특정

목록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목록 기재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채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채권자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명 기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상호를 기재하도록 함), 채권내용과 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나. 담보물 가액의 평가

회생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초과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므로(법 제141조 제1항, 제4항), 담보목적물의 가액 산정을 위하여 미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이 있는 경우 목록에 담보목적물의 가치 평가 근거(감정인, 감정일시) 및 담보물배분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다. 상거래채권의 실재 여부 확인

상거래채권의 경우 채권의 실재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함으로써 추후 시부인표 작성시 목록기재 오류로 대량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추후 시부인표 제출시 부인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채권자에게 일일이 이의통지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 특수관계인 채권의 실재 여부 확인

특수관계인 채권의 경우 처분문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소명자료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애매한 경우 추후 조사위원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조사기간 내에 섣불리 시인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조세 등 채권 발생기간 명시

조세 등 채권의 경우 발생기간을 명시하여 공익채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이 되고(법 제118조 제1호) 개시 후에 발생한 조세 등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나(법 제179조 제1항 각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미도래한 경우 공익채권으로 본다.

바. 동일 채권자 다수 채권의 경우 가지번호 사용

동일한 채권자에게 둘 이상의 채권이 귀속되는 경우 목록번호는 회생담보권자(또는 회생채권자)별로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담보권 1-1, 담보권 1-2 등으로 순서에 맞추어 표시하고, 회생담보권자(또는 회생채권자)별로 소계를 표시한다.

사.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의 경우 개별 사채권자 및 그 액수의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증권회사 등에 금융정보제출명령 등을 하고, 관리인은 그 결과를 통해 사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사채액수를 파악한 다음 사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 주주 · 지분권자 목록 작성의 경우

주주 · 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채무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이 수시로 양도될 수 있으므로 일단 주주임이 명백한 대주주 등의 목록만 작성 · 제출하도록 한다. 법원

은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법 제150조 제2항), 이 때 다른 주주들이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관리인이 주주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자. 목록의 변경 또는 정정

관리인이 목록 제출 후 오기,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법 제147조 제4항).

제3절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주 · 지분권자의 신고

1. 개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는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 · 주식 · 출자지분의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관리인이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직원을 통하여 법원의 신고서 접수업무를 보조한다.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법 제152조 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53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한다.

이미 신고를 마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채권액수를 늘리거나 회생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후보완신고와 마찬가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52조 제4항).

만일 신고를 마친 채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되어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154조, 규칙 제58조, 제55조, 제56조).

2. 채권 신고를 위한 안내

가. 채권신고 전 송달용 채권자 리스트 제출

관리위원은 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송달용 채권자 리스트를 법원의 담당 실무관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실무상 법원은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업무 보조를 받아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에게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 신고안내서 1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 신고서 2부, 접수증 1부, 위임장 2부를 송부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신고기간을 알려 실권되지 않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나. 채권 신고를 위한 안내사항 지도

관리인은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신고 및 채권신고서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신고기간 시작 전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에게 전화 · 팩스 등으로 연락하여 채권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과 필요성을 안내한다. 채권자들이 채권신고절차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인은 신고서 양식을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채무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채권 신고는 법원에 하여야 하며 관리인에게 채권 신고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안내한다.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채권자에게도 신고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2) 신고기간 시작 후

가) 채권신고서 확인

관리인은 법원에 접수된 채권신고서를 열람하여 기재사항 누락 여부,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즉시, 늦어도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까지는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나) 채권신고서 접수 업무 지원

실무상 채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의 직원을 법원에 보내어 신고서 접수 등 법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채무자의 직원은 법원에 설치된 접수대에서 채권신고서를 접수한다. 채무자가 채권신고인이 진정한 채권자인지 여부 및 채권의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다) 목록 기재된 채권의 신고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액수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액수와 차이가 있어 채권자가 신고를 원할 때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신고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되, 이 경우 목록 기재 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체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다. 채권조사(시 · 부인)를 위한 채권신고서 확인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과 채권자의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채권조사(시 · 부인)를 실시하게 되므로 관리인으로 하여금 접수된 채권신고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은 채권조사(시 · 부인)를 위해 법원에 접수된 모든 채권신고서를 열람 · 출력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채권의 액수 등이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게 하고, 채권액 산정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조사기간 중에 보정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이 잘못 신고된 경우 이를 조사기간에 부인하였다가 이의철회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채권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전자문서 처리 오류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에 접수되었으나 사건번호 기재 오류로 당해 사건 채권신고서로 등록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신고기간 이후 확인되어 해당 채권이 시인된 것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래 부인하였어야 할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에게 각별히 당부하도록 한다.

라. 예비적 신고

실무상 종종 채권자가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에 회생채권으로 판명되는 경우 실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거나,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상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고하는 등이다. 전자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예비적 회생채권 신고를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조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예비적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실무상 신고 당시 전제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의결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제 7 장

채권의 조사(시 · 부인)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 · 확정하는 과정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점에서 시 · 부인이라고도 한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생채권 등이나 법원이 개시결정시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관리인이 조사기간 내에 이의 내용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시 · 부인)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기일(통상 심리 및 결의 집회와 병합)을 열어 관리인이 추후 보완신고된 내역과 그 시부인 내역을 기재한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주식 · 출자지분의 시부인표'를 위 기일에서 낭독하는 방법으로 조사(시 · 부인)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시 · 부인)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해야 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168조). 이는 향후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법 제255조)와 폐지되는 경우(법 제292조) 모두 그러하다. 따라서 관리인은 시부인표 내용이 법률에 맞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을 점검할 때에, 향후 시부인표 작성의 법률적 의미, 특히 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하도록 당부한다. 더불어,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의 철회가 가능하므로 시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일응 부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한다.

법원은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에 관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통지를 하는데(법 제169조), 실무상 관리인이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부인된 채권에 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부인된 채권에 관해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거나 계속 중이던 소송이 있어 해당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 그 수용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리인에게 이를 당부하도록 한다.

제2절 채권조사 방법

1.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등의 조사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정해진 '채권조사기간'에 조사한다(법 제161조).

조사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등이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과 벌금 · 과태료 등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하므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대상은 아니다(법 제157조).

그 방법은 실무상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 내역과 관리인이 그 채권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의 내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주식 · 출자지분의 목록 · 신고 및 시부인표'(보통 '시부인표'라고 한다)를 조사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 등도 채권조사기간 내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상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채권자가 신고기간 마지막 날 야간에 법원 당직실에 채권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당직실에서는 당일자로 접수인을 찍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신고서를 다음날 전달받은 후 그 날짜의 접수인을 찍고 그 날짜로 전자접수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이 전자기록의 신고서 기준일자만 보고 이를 시 · 부인 대상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상 채권신고 기준일자가 신고기간 익일인 경우에도 그 신고서가 신고기간 마지막 날 야간에 접수된 것이라면 이를 시 · 부인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등의 조사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기일을 열어 '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한다(법 제162조, 제164조). 특별조사기일은 실무상 심리 및 결의 집회와 병합하여 같은 날 진행된다.

그 방법은 관리인이 신고기간 후에 접수된 신고내역과 시부인 내역을 기재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주식 · 출자지분의 시부인표'를 미리 작성 · 제출하였다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위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고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채권조사기간 말일 사이에 신고된 채권도 특별조사기일에 시 · 부인하여야 한다.

3. 이의내용의 통지 및 조사확정재판

조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 즉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특별조사기일 당일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등의 권리보호방법을 안내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0조 제2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한 회생절차 내의 간이 · 신속한 절차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71조).

제3절 시부인표 작성 지도 및 검토

1. 채권조사(시 · 부인) 기간 준수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결과가 되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시부인표 제출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인에게 채권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반드시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주심판사 또는 주무 관리위원에게 시부인표 초안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자 시스템 오류로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 오류로 전자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조사기간(24시)이 도과하여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신고된 모든 채권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래 부인하였어야 할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제출기한 내에 시부인표가 제대로 제출되도록 관리인에게 각별히 당부해야 한다.

2. 사전 안내

실무상 사전에 관리인에게 시 · 부인의 일반적 기준(개시결정일 등)을 안내하고, 관리인이 이를 참조하여 시 · 부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3. 채권조사 결과(시부인표)의 검토

실무상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3~5일 전에 시부인표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실무상 쟁점이 많은 사건이나 제출된 시부인표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의 1차 검토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한 시부인표를 조사기간 말일 전에 법원에 대면보고하기도 한다.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여부, 부인사유와 향후 처리방향,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철회 가능 채권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면보고 여부를 법원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시부인표를 검토할 때에는 ① 시부인표, ② 제출된 채권자 목록, ③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 사본, ④ 감정평가서, ⑤ 판결문 등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시부인표 상의 시 · 부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채권자 목록과 채권신고서를 확인하여 채권 누락 여부, 채권자명, 채권금액 기재오류, 채권의 내용, 채권발생원인, 의결권의 액수,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등을 점검한다.

4. 채권조사 결과(시부인표) 검토시 주요 점검사항

가. 일반사항

- 목록에 기재된 채권 및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빠짐없이 시 · 부인하였는지 여부 및 중복해서 시인하지 않았는지 확인
- 부인대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시인하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부인대상행위라고(법 제100조) 의심되는 경우(담보 설정이 개시신청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 일응 부인하도록 지도
- 특수관계인의 채권 내역 확인(비고란에 취지 기재)
- 리스채권, 임대차보증금채권, 차임채권, 매출채권, 어음채권 등의 채권분류(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등)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혼동이 있는지 여부 확인(개시결정 전 발생한 임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도록 유의)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8의2)이므로 유의할 것[실무상 서비스(용역)는 포함되지 않고, 전기료는 포함된다고 해석]
-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비고란에 수소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부인 사유에도 단순히 '소송 계속 중이므로 부인'이라고만 기재하기보다는 구체적 시부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
-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채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일응 부인하고 추후 정확히 확인하여 시 · 부인 하도록 함
- 채권이 외화로 신고된 경우에는 외화로 시 · 부인하되, 괄호 안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시인된 채권액 합계란에 '원화 환산 후 소계'라고 하여 원화채권과 환산한 외화채권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며, 시부인표 앞이나 주석으로 원화환산율을 기재. 원화환산율은 개시결정 전일의 주채권은행이 최종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사용함
- 목록에 채권자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나, 채권자 회사가 같은 채권을 신고한 경우 목록에 기재된 대표이사 개인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회사 명의로 채권 신고하여 신고번호○○로 시인하였으므로 목록 기재 채권은 부인' 등으로 구체적 사유 기재함
- 신고한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000채권자 외 0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채권자를 각각 특정하여 기재할 것
- 신고한 채권자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한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해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개인: 채무자명(상호명)]

나. 목록 기재 채권과 신고 채권

-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은 실효되므로 채권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시 · 부인하여야 함. 반면, 관리인

이 목록에 기재하고 당해 채권자가 추완 신고를 한 경우, 일응 목록 기재한 금액으로 채권조사기간에 채권이 확정되고 목록은 실효되지 않음

- 채권자가 추완신고한 금액이 목록에 기재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한 금액은 부인하고 그 사유는 「목록 기재 채권 #번으로 채권 ○○○원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신고한 채권 ○○○원은 부인」이라고 기재하며 추가신고된 액수만 시인
- 목록 기재보다 적은 금액이 추완신고된 경우에는 목록 기재로 기시인하였으므로 추완신고는 부인하고, 차액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채권변동(예: 변제로 소멸, 채권신고 철회 등)으로 채권감소 처리함

다. 중복 시인 유의

- 주채무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중복시인 여부, 물품대금채무와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채무의 중복시인 여부 등 확인
- 주채권자가 전액 채권 신고하고 장래 구상권자도 신고한 경우에는 주채권자의 채권만 시인하고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는 부인(법 제126조 제3항 단서)
- 주채권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구상권자만 채권 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주채권자가 추완신고하는 경우 이중 시인의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주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신고기간 내에 주채권자의 채권 신고가 없더라도 장래구상권자가 채권 신고시 장래구상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법 제126조 제3항 참조)
- 장래 구상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권자는 여전히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함(법 제126조 제2항)
- 이중으로 신고된 채권은 주채권자, 어음원본소지자, 채권양수인 등 최종권리자의 신고를 시인하고 그 이외의 자가 사본 등으로 첨부하여 신고한 채권은 부인

라. 회생담보권 관련

- 아래 〈표 7-1〉의 기준을 일응 참고하여 회생담보권의 담보가치 평가 : 청산가치 아

닌 계속기업가치 전제로 평가(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고가로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워 회생계획 수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가로 평가되면 변제율이 하락하여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됨

〈표 7-1〉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물의 종류	가치평가방법
부동산 (토지 · 건물)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감정이 필요하고, 1년 이내라도 담보물 가격변동이 뚜렷한 경우에는 재감정이 필요하다. 공매 · 경매절차가 최근 진행되었다면 그 감정평가결과를 원용하는 경우도 있다. - 공장저당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산(기계, 기구, 자동차 등)	-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는 것이 좋지만, 동종 동산의 중고매매상,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2곳 이상의 가치평가액의 평균치로 산정하기도 한다.
주식	- 상장주식(코스피 · 코스닥)은 개시결정일 기준 종가를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조사위원이 평가한 가치로 하되, 만일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경우에는 주식가액이 없다고 본다.
출자증권	- 출자증권 발행기관이 확인한 개시결정일 기준 출자좌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담보 자산	- 개시결정일 기준 인출 · 회수 가능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진성어음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가치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의료보험공단 예치금은 개시결정일 기준 인출 가능금액으로 산정한다.
예금	- 개시결정일 기준 인출 가능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채권시부인은 개시결정일 현재 기준이므로, 개시결정일 이후 담보물 가치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회생담보권을 변동시키면 안 됨
- 담보물 배분방법의 적정성 확인, 공동담보의 경우 담보물 가액에 따라 안분 배분하도록 함
- 조사기간에 특정채권자의 회생담보권을 과다하게 시인한 경우에는 각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를 감안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과다 시인한 담보권 문제 해결

마. 어음채권 관련

-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이 최초 수취인을 거쳐 제3자에게 유통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신고한 경우 어음의 원본 여부를 반드시 확인. 즉, 어음수취인이 어음을 유통시킨 후 어음원본 제시 없이 채권 신고한 경우 '어음원본 미제시'로 부인하고, 추후 어음원본 제시하면 이의철회하여 시인함
- 채무자가 상거래 채권 변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수취인이 타인에게 어음을 유통시킨 후 어음원본 없이 사본으로 채권신고한 경우에도 역시 "어음원본 미제시"로 부인하고, 추후 어음원본 제시하면 이의철회하여 시인
- 채무자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였고 융통어음소지인이 신고한 경우는 회생채권으로 시인
-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채무자가 수취하여 은행에서 할인받아 사용하였고, 할인은행에서 이를 대여금채권(할인어음)으로 신고한 경우 어음원본 확인 불필요

바. 보증채권 관련

-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물상보증 포함)에 관하여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보증일(또는 담보제공일)과 그 수혜자를 표시
- 보증기관이 개시결정 전에 주채권자인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채권 신고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원금과 이자를 원금으로 하고 개시결정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개시전이자로 시 · 부인함
- 이와 달리 보증기관이 개시결정일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아니라 대위변제증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이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사. 의결권 관련

- 조사기간 내에 시 · 부인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확정된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법 제 188조)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에 의결권을 부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시부인표 작성 단계에서 채권자별 의결권액의 적정성 확인
- 보증채권(중도금대출보증, 이주비대출보증 포함)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법 제127조)
- 회생담보권에 대한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
- 미발생구상채권(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은 채권의 액수는 시인하되,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확정상태의 우발채무이므로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시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시부인표 작성 당시 현실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일단 의결권 전부 부인.

아. 기타 사항

-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 시부인 적정성을 확인.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는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시인,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는 추심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시인하되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이 피압류채권(회생채권)의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리인으로서는 신고순서에 따라 추심채무자의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순차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야 함. 기존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변제의 효력이 있음에 유의
-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고 기간 말일까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상계가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법 제144조, 제145조)
-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1순위 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회생채권(담보신탁)으로 취급

제4절 이의의 철회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1. 이의철회 기간

이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이다. 이의대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1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서 이의상태로 그대로 확정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이 도과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는 등으로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되면, 관리인은 더 이상 이의를 철회할 수 없다.

2. 이의철회 및 정정허가

실무상 이의철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인은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철회통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신청한 이의철회 사유, 금액 등을 검토하여 이의철회가 정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이의철회가 허가되고, 그에 따라 시·부인 내용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한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

가. 이의한 채권자에게 조사확정재판 안내

법원이 이의통지를 하는 것과 별도로 관리인도 이의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지 않도록 이의한 채권자에게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사확정재판 응소 및 화해권고결정 수용 여부 결정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관리인이 동 재판에 응소하여 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인은 조사확정재판을 위해 준비서면 등을 미리 준비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조사확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 또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이의를 철회하고, 신청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4.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이루어지는바, 실무상 특별조사기일은 심리 및 결의 집회와 함께 지정되고 있다. 관리위원은 통상적으로 회생계획안 및 집회자료를 검토할 때에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표를 함께 검토한다(검토시 유의사항은 시부인표 검토시 유의사항 참조).

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으며(법 제165조), 특별조사기일에서 부인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폐지 또는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이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에게 협조를 당부하도록 한다.

제 8 장

조사보고서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법 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91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92조).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위와 같은 조사사항 외에도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조사결과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제1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7조).

실무상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각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개시결정 일부터 2~3월 이내의 같은 일자로 정하여지고,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인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채무자와 채권자로부터 독립된 제3자인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로 회생계획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조사보고서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고되는 경우, 채무자가 M&A나 외부자금 차입을 통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한다.

따라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절차 개시부터 조사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회사의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조사위원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위원이 선정되면 관리위원은 대표자 심문 이후 조사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의문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관리위원은 조사보고서 초안이 제출되면 조사보고서가 갖추어야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재산상황이나 청산가치를 회계원칙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계속기업가치를 회사의 영업환경,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매출액, 영업비용, 판관비 등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산정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관리인이 조사보고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이렇게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법원과 협의를 한다. 관리인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와 다른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어 보고된 경우,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대책을 세우도록 지도한다. 물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원한다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이 제시한 대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도 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인가 전 M&A가 활용되고 있다.

제2절 조사위원 선임

1. 조사위원 선임 기준

법원은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 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신용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개시결정시 선임할 조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에서 순차적으로 선임하되, 적임자 명단에 등재된 회계법인 등이 선임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채무자의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조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법원과 관리위원은 사건마다 조사위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평가(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되거나 인가 결정된 후 즉시 조사위원 업무수행 평가표를 작성한다)하고 있고,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 관리위원회는 매년 조사위원 평정 등의 결과를 참조하여 적임자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관리위원은 조사위원 선임시 법원의 조사위원 선임 의견조회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 관리위원캐비닛에 접속하여 의견을 회신한다.

2. 조사위원 선임시 지도 사항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부인권 해당사항의 유무, 자산 · 부채 항목 중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영업활동 중 비정상적인 거래유무 등을 중점 조사하도록 특별히 주지시킨다.

관리위원은 개시결정 직후 조사위원에게 보충설명을 통하여 조사보고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을 강조하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관리인에게는 조사위원의 지위와 역할을 소개하고, 조사결과 회생절차를 계속 진

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산정되므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사업계획안 설명 등에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왜냐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관리인이 추가자료 또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으로써 회생절차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3절 조사보고서

1. 조사보고서 내용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한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심리 집회의 수일 전(통상 5일 전)까지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조사위원은 그 외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명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시로 보고한다. 실무상 조사위원이 제1차 조사보고서와 제2차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조사결과 또는 의견은 아래 〈표 8-1〉과 같다.

〈표 8-1〉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구 분	조사결과 또는 의견
제1차 조사보고서	① 조사결과의 요약 및 조사위원의 의견 ② 채무자의 개요(조직 · 업무 · 재무 등의 현황) ③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④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⑤ 채무자의 재산상태 ⑥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⑦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⑧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⑨ 채무자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⑩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재무제표
제2차 조사보고서	①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여부 ㉮ 조사결과의 요약 ㉯ 청산배당액 ㉰ 변제액의 현재가치 ㉱ 청산배당액과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비교 ②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여부 ㉮ 조사결과의 요약 ㉯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 ㉰ 채무변제액 및 변제할 채무 ㉱ 변제자금의 조달 가능성

2. 조사보고서 제출

가. 조사보고서 사전 검토 및 법원 대면보고

실무상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수일 전에 법원에 대면보고하여 조사결과의 타당성 · 객관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관리인, 신청대리인 및 구조조정담당임원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관리위원은 조사위원의 법원 대면보고 전에 조사보고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아 법원에 전달하는 한편,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대면보고시 의견을 진술한다. 또한 조사위원에게 보고서 초안을 채무자 측(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지도하여 관리인이 대면보고시 검토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위원은 조사보고서 대면보고를 위하여 법원과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여 정한 후 관리인, 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 및 조사위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대표채권자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위원의 법원 대면보고시 법원은 중점 조사 요청사항의 조사결과, 자산 · 부채의 실사 결과,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며, 관리위원은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하게 된다.

나. 조사보고서 제출

조사위원의 법원 대면보고 결과, 법원에서 지적한 조사보고서의 수정 · 보완할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관리인과 대리인은 조사보고 결과 중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의 추정과 이에 따른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법원은 인용할 수 있는 주장인지를 청취하는 한편 관리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위원에게는 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조사 결과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리인이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인가 전 폐지'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다. 법원의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기간인 폐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폐지결정은 확정된다.

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및 수정조사보고서 제출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위원과 협의하게 되며, 관리위원은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보고하고,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필요시 조사위원에게 보고서 제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3. 조사보고서 검토시 점검할 내용

가. 조사보고서 검토시 중점 확인사항

조사보고서에 대한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인권 행사대상 행위, 임원과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책임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실사조정의 적정성 여부
- 부채내역과 시부인표의 비교, 우발채무의 적절한 평가 여부
- 담보물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적정한 평가 여부
- 청산배당률 산정시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순위를 따랐는지 여부
- 청산가치 산정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지 여부
- 미래현금흐름의 할인율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지 여부
- 매출액, 원가율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는지 여부
- 관리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이나 원가절감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 관리인의 향후 사업계획은 무시한 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여부
- 인건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규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 판매관리비에 인가 후 감사의 급여, 외부회계감사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사무실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이전할 계획인 경우 이전비용(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나. 조사보고서 항목별 점검 내용

1) 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원들의 책임 유무

가)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해당 여부

지배주주나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나)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있는 행위 유무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있는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추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중대한 책임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의 3분의2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를 1주로 병합하도록 자본을 감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법 205조 4항).

2) 부인권 행사 대상행위 유무

법원은 심문과정에서 부인권행사 대상(법 100조 내지 104조)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통상 조사위원에게 특별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관리위원은 채권자목록 검토 및 시부인 단계에서 담보권 설정 등 의심이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3)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장부 · 서류 ·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보고 ·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법 제88조, 제79조, 제649조 제3호, 제4호).

외상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는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선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하였는지 등 채무자가 제시한 자산가액에 대한 실사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채무자의 토지 ·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이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경우 실사가치 산정시 감정평가 등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조사한 것인지 점검한다. 장부상 자산가액과 실사 결과 자산가액에 차이가 많은 경우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자금추적을 통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였는지 점검한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가수금 조사시 통장거래상 입금내역 뿐만 아니라 출금내역까지 조사하여 입금 후 바로 출금해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점검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가 이를 유용하였는지 여부가 조사되었는지 점검한다.

주임종단기대여금 등 대여금의 경우 실재성이 없는 부분과 실재성은 있으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이 구분되고, 회수 불가능한 근거가 적시되었는지 점검한다.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재무제표와 회생신청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은닉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부채의 경우 많은 조사위원들이 부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생략하고 시부인표를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 · 부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4) 청산가치 산정

청산가치는 (조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채무자가 제시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회계담당자의 진술청취,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조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실사가치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청산조정을 하여 산정한다.

청산조정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역별 · 용도별 경매낙찰가율을, 기계장치 · 공기구에 대하여는 최근 수년간 취득금액 대비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며,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 선급비용, 재고자산, 무형자산, 보증금, 투자자산 등에 대하여는 자산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적정한 청산할인율을 적용하였는지, 청산비용과 현실적 회수 가능성 등을 각각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였는지를 점검한다.

자산별로 청산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낮게 산출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특별히 자산의 특성상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산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지도한다.

5) 계속기업가치 산정

계속기업가치는 통상 10년의 회생절차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이후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로 구성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아래의 〈표 8-2〉 참조.

〈표 8-2〉 계속기업가치 산정

① 총영업현금흐름 = 영업이익 - 법인세 등 + 감가상각비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② 순영업현금흐름 = 총영업현금흐름 - 유형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 영업 관련 투자
③ 계속기업가치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 + 비업무용자산의 처분대금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10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산출 근거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또는 보수적인지 여부를 점검한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우선 관련 산업분야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전망, GDP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와 채무자의 과거 수년간 영업실적, 업종 · 영업의 특수성, 채무자가 제시하는 구조조정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은 감정평가액 등 실사가치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계산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시하는 신규사업계획은 전부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목적으로 변제율을 높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무상태, 영업상태를 과장하여 제시함으로써 계속기업가치가 과대 산정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토대로 추후 작성하게 될 회생계획안은 인가결정이 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채무자의 자산 ·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가 채무자의 비용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조사위원의 자산 · 부채 평가 및 향후 매출추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계속기업가치 산정 검토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과거의 영업현황

먼저 과거 영업실적을 검토하게 되며, 동 자료의 많은 부분이 미래의 영업실적을 추정하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많은 기업들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수정 분개한 수정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출발이다.

나) 매출추정

향후 매출실적을 추정할 때에 회생기업의 특성상 과거 실적과 동일한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기간의 매출실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적을 감하여 추정하게 된다.

이때 산업동향, 경쟁기업의 동향, 해당 기업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후 회사의 향후 영업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거 실적 기준으로만 추정근거를 삼을 경우에는 회사의 새로운 영업계획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계획도 현실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한다.

건설업, 조선업을 포함한 수주산업은 수주를 받기위해 보증서의 제출이 필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보증서 발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항목이다.

경기변동 예측, 환율 등의 외생변수는 그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며, 필요시 외부자료(해운업 및 조선업의 경우 운임지수, 선박가격 전망 등)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다) 매출원가

특이한 영업변동이 없는 한 과거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자구노력에 의한 원가감소 노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신사업분야 등에서는 최근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거자료에 얽매이지 않도록 점검한다.

라) 판관비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채무자의 자구노력과 매출축소에 따른 비용절감 요인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또한 과거 발생하였던 경비를 제외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경우(예: 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회생기업의 특성상 감사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마) 순운전자본의 증감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회생기업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매입채무는 상당부분 회생채권이 되고, 매출채권은 회수가 가능하므로, 초기 현금흐름에 대규모 흑자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회수가 당초 추정 대비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도 있다(실제 회생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함).

바)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가 작은 경우 채무자는 자본적 지출을 최소화하여 계속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산업동향을 보면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본적 지출과 기술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상기 요소의 적정한 반영이 없을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6) 변제계획 검토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에서 정할 사항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대략의 안을 제시하고 각 조별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을 비교하여 보고한다.

이 때 조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특정 채권자조에 대한 변제율을 미리 조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변제율에 민감한 채권자들이 동 내용에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 변제율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조사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사례

- 재산조사나 매출, 원가, 손익추정,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직접 회계자료나 증빙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단순 추정이나 관리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경우
- 채무자의 보유재산 확인시 본인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
- 채무자의 부채 현황 조사시 특수관계인 및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공익채권의 규모에 관한 조사가 미흡하거나 회생계획 작성시 회생기간 초기에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경우
- 관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조사위원이 일방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관리인이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뿐만 아니라 관리인에게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통상 보고서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정한다.

관리인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표제만 바꾸어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내용이 채무자의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별도의 다른 내용으로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특히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

비 등을 토대로 한 영업이익 추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시한 자료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조사위원과 관리인이 서로 다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때 법원은 관리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위원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거나 관리인 주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에게 수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한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고 있고 달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리위원회에 조회하며, 관리위원회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다[양식 2-5].

제 9 장

보고집회 및 대체절차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법 제92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을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를 '보고 집회'라 한다.

법원은 보고 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① 주요사항요지의 통지, ②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③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데 이것이 '대체절차'이다. 관리인이 대체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위 보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8조 제3항). 법원은 대체절차에 대해서는 준칙 232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를 정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들은 회사의 현재의 경영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은 얼마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받기를 기대한다.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심리 및 결의 집회 전에는 충분한 정보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기본으로 하고 기타 채권자가 궁

금하게 생각하는 사항 등을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보고하는 사항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관리인이 조사위원의 보고 내용과 달리 보고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보고된 경우 관리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는 차입과,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는 M&A 방식이 있다. 따라서 관리인이 M&A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사전에 법원에 보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1. 보고집회 진행 순서

보고집회는 법원의 주관 하에 진행한다. 법원이 지정한 기일과 장소에 관리인, 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 및 조사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대형사건의 경우 관리위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다.

먼저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한다.

조사위원이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 결과,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한다.

출석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관리인 및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결정문에 기재된 보고집회를 이행하도록 한다. 관리인은 집회 전까지 ①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요약본 등이 포함된 관리인보고서 ② 출석현황표 ③ 예상질문과 답변 등 집회자료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에게 보고집회에 참석할 이해관계인들의 참석명단을 사전에 입수하여 이들에

게 배포할 만큼 관리인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한다.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생소하므로 사전에 관리인에게 기일조서 양식을 제공하여 절차진행 순서나 진술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집회시 법상 보고할 사항 이외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영업현황 및 추정 매출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추가 보고도 준비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보고 집회는 회생절차의 진행경과와 채무자의 현 상태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는 자리이므로, 관리인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궁금해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절 대체절차

1.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가. 통지내용 및 방법 등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는 보고집회를 대체하는 절차로서 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기일까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주요사항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관리인은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채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상대방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신규자금 지원자, 채무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자, 채무자의 자산에 관한 인수예정자이다.

준칙상 법원은 부채 규모 200억 원 미만 사건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보고집회를 대신하여 통지의 기한과 통지사항 및 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주요사항 요지 통지명령을 한다.

채무액이 크지 않고 채권 · 채무관계가 단순한 소액영업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이회생절차 대상 채무자에게는 관계인설명회 개최명령을 하지 않고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통지를 7일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되 모든 채권자 등에게 누락 없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관리인 보고서 및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첨부하여 통지한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는 채무자의 주요 사업내용,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부채총액,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시·부인 총괄내역,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사업 현황 및 전망, M&A·영업양도 또는 주요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를 위한 관리인보고서와 통지 방법, 통지 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통지일 전까지 '통지절차 착수의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요사항 요지 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사후 보고하되, 늦어도 통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후 보고에는 통지절차를 이행한 시기, 통지한 내용, 통지 현황, 통지하지 못한 상대방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관리위원의 주안점

관리위원은 개시결정 후 관리인에 대한 사전 지도시 법원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통지방법을 달리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며, 임의로 통지를 생략하거나 일부 회생채권자 등에게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작성한 주요사항 통지내용을 미리 점검하여 통지 내용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통지방법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한 후 법원에 통지절차 착수의 사전보고를 하도록 지도한다.

2. 관계인설명회

가. 관계인설명회 개최

관계인 설명회는 보고집회를 대체하는 절차로 관리인이 주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채 규모 200억 원 이상의 회생기업에 대하여 개시결정 시 관계인설명회 개최를 명하고 있다. 다만, 채무의 성격,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대체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도 있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보고집회를 열어야 하나, 회사의 사업장이 수 개 있거나 채권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1회에 한해 법원에 모이게 하기 보다는 회생법원 이외에 1곳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서 채권자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관계인설명회 개최 명령이 가능하다.

관계인설명회에는 관리인, 신청대리인, 조사위원, 구조조정담당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채가 300억 원 이상이고 회생채권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사건의 경우에는 주무관리위원이 그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인이 관계인설명회 개최 준비를 마치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및 노동조합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며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 ·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송, 모사전송, 구두 또는 유선에 의한 통지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설명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상녹화, 속기록의 작성 · 보존 등 설명회 종료 후에 설명회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필요한 경우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관리인은 설명회 개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설명회를 개최한 일시 · 장소, 설명회 일시 · 장소의 사전 통지현황 및 통지하지 못한 회생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현황과 사유, 설명회 출석현황, 설명한 내용, 진행 순서에 따른 설명회 진행 경과, 회생채권자 등의 의견진술이 있은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인은 설명회에 관한 녹취록 또는 속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래 〈표9-1〉 참조.

〈표 9-1〉 관계인설명회 보고내용

1)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2)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조사 결과 4)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및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 5)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6)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이 필요한 사정의 유무 7)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나. 관리위원의 점검사항

관리인이 관계인설명회 개최 준비를 마치면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리위원은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점검한다.

관계인설명회의 경우, 법원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도록 한다. 관계인설명회 개최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이 이해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 교체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 10 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예외적으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도 있음)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된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과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수정 및 변경하는 것을 감독·심사하고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법 제81조,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규칙 제22조 제1호).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는데(법 제50조 제1항 제4호), 통상 조사보고서 제출일 후 1개월 내외로 정하고 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결정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제출기간) 내에 관리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절차폐지사유가 된다(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대부분 사건에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안에 별도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법 제221조), 실제로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당해 회생계획안 제출자와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회생계획안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에는 ① 회생계획안 요약, ② 채권자 그룹별 변제할 채

권액의 현가율 비교표(현가변제율과 청산시 배당률의 비교), ③ 관할 세무서 · 관할 지방자치단체 현황(관서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담당자 등), ④ 조세채권 현황(조세징수관청 · 조세채권의 내용 · 조세채권액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담당자 등), ⑤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현황(근로자 측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등), ⑥ 사업계획 · 자금수지 대비표(제1차 조사보고서의 추정과 대비한 회생계획안의 연도별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 자금의 유출입 · 매각계획 등), ⑦ 주식지분 변동표(회생계획안의 주식 소각 · 병합 · 출자전환 등을 완료한 후의 주식지분)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초의 회생계획안과 회생계획 수정안을 비교한 수정비교표도 함께 제출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관리위원은 관리인의 회생계획 작성단계에서 회생계획이 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법 제193조), ②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었는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법 제217조, 법 제218조), ③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지(법 제231조, 법 제231조의 2), ④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법 제243조)를 점검한다.

관리인이 주요 채권자들과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채권자의 요구사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작성한 회생계획은 결의 집회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회사의 상황과 변제능력, 주요 담보권자의 요구사항, 담보물의 매각가능성, 회생계획안의 가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인의 자문에 응하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회생계획 작성과 결의 및 인가 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제2절 회생계획안 점검

1. 회생계획안의 작성 · 제출

관리위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에게 이해관계인의 목록 제출, 회생채권 등의 조사와 회생계획안 작성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여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힌 후 제출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법 제193조 이하의 법정요건과 법 제243조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법 제237조의 가결요건을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해진 제출기간의 7~10일 전에 관리인으로부터 초안을 받아 사전검토를 하고 있다. 사전검토시에는 채권자조별 의결권액 등을 토대로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관리인이 미리 확인한 채권자들의 반응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채권자들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위한 협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회생계획안은 가결요건이 충족되어야 인가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조기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이로 인한 영업력의 감소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권리변경계획은 조세 등 청구권 · 회생담보권 · 상거래 회생채권 · 나머지 회생채권의 순서로 수립하도록 하고 채권자별로 변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채무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권리변경을 정할 때에는 채무면제 이익의 발생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하도록 하고 각 이해관계인들에게 돌아갈 가치(출자전환된 주식 · 지분권 포함)의 현가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한다.

특히 관리인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자금수지계획표에 기초하여 그 범위 안에

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수행가능한 사업계획과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심리 집회 5일 전까지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및 수행가능성 여부에 관한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리위원으로부터 적정한지를 검토받아 지적사항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대면보고하며, 법원의 최종 확인 후에 제출한다. 아래 〈표 10-1〉 참조.

〈표 10-1〉 법정요건 및 인가요건 등 점검 사항

1. 법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법 제193조 제1항)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금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나 임의적 기재사항 (법 제193조 제2항)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 ·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법 제243조).

가.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다.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할 것
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채권별로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을 초과하여야 함)
마.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바.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등

3.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법 제237조).

가. 회생채권자의 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회생담보권자의 조 :
- 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다. 주주 · 지분권자의 조 :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 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계획안 주요 점검사항

가. 채권내역의 완전성

시인된 총 채권액과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 이의철회, 명의변경 또는 소멸된 채권 등의 기재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여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위원이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추후 보완 신고서, 이의철회 허가서,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채권소멸신고서 등과 대조하며 채권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성격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장래의 구상권 등) 및 변제방법이 채권의 성격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산출된 손익계산과 자금수지에 기초하여야 한다. 영업상 자금조달계획이 제1차 조사보고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만약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 수립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영업환경이나 채무자의 사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실제 영업 상황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시 조사위원이 수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비영업용 자산매각이나 영업용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매각시기, 매각금액, 대체 영업자산의 확보비용(임차보증금, 차임 등), 매각시의 세금이나 매각부대비용 공제, 자금운용(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매각 후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은 실제 유입되는 금액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청산가치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규자금 차입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시기와 차입규모 및 조달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입이 회생기간 초기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실제 차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결의 집회 전 채무자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 완료 등), 회생기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담보차입이라면 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 신용차입이라면 적정한 이자보상 비율을 적용하여 차입규모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다. 회생채무자의 경우 통상 이자보상비율은 3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M&A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나 사채발행을 통해 변제재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유입자금의 내역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다.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

채무 변제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조세 등 채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상

거래채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등의 순서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점검한다.

공익채권, 조세 등 채권의 변제에 따른 추정자금수지와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말 자금이월액의 적정규모를 점검한다(최종연도의 자금보유액등 적정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추가 변제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이 시점에서 각 조별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을 비교검토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청산가치산정표도 함께 검토한다.

라. 구주주 지분율의 적정성 검토

현가변제율을 확인하였으면 주주의 권리변경 후 최종 구주주 지분율이 회생채권 현가변제율 최저치보다 낮은 수치인지를 확인한다. 때로는 특수관계인 회생채권 권리변경에 따른 출자전환분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법원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을 100% 변제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이 없을 수 있으므로 구주주 주식을 단순히 일정비율 감자하는 것으로 한 사례도 있다.

3. 채권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해당 담보물이 영업용 자산인 경우나, 또는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차) 방식을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 변제유예, 회생기간 중 분할변제 등의 변제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회생담보권의 경우 변제시점에 따라 변제할 금액의 실질적인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방법을 정하여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회생담보권이지만 담보물이 다르거나 담보권 순위에 따라 청산시 배당률이 다른 경우에는 담보권자 간에 변제방법에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경

우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동일한 담보권자 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물상보증의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한 후의 미변제채권은 면제하는 것으로 정한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는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에 대해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채무변제시 담보권의 소멸 및 존속, 담보목적물의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방법, 보험사고 발생시의 처리방법,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담보목적물이 계획한 시기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각위임규정을 두는데, 매각위임을 하더라도 실제 매각시에는 매각방법 또는 매각가액 등에 대해 관리인을 통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임의경매방식의 매각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드물게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경매방식의 담보물 매각을 회생계획에 포함하는 사례도 있다.

나.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채권의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변제하고, 잔여금액은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권리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채무자의 경우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액은 신주를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출자전환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편, 개인 채무자의 경우 현금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액은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제시기는 채권자별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보증채권의 권리변경은 주채권에 비하여 현금변제비율을 낮게 정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보증채권의 경우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채권에 비해 열등하게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을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보증채권자에게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게 하고, 그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추정자금수지표상 권리변경 후 변제할 금액은 "미정"으로 될 것이다.

미발생구상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다른 회생채권의 변제 방법과 동일하게 변제방법을 정하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금액은 "미정"으로 기재한다.

다만, 보증채권이나 미발생구상채권의 변제금액을 "미정"으로 할지라도 그 현실화예상금액을 추정하여 미리 자금수지에 반영하여야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상거래채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소액상거래채권의 경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을 조기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하기도 한다. 다만, 드물게 소액상거래채권에 대하여 시인된 채권액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 시인된 채권액이 작은 채권자(소액상거래채권자)가 큰 채권자(상거래채권자)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변제받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유의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변제율을 통상 다른 채권자의 변제율보다 낮게 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기도 한다.

다. 조세 등 채권

조세 등 채권의 경우 인가시까지의 가산금 · 중가산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3년을 초과하여 변제를 유예할 경우 또는 권리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결의 및 인가를 위해서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년의 유예기간을 정할 때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인가결정 해당일에 최종 변제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법 제140조).

라. 신고하지 않은 채권의 처리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이의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하도록 한다. 미확정채권의 내용(채권의 종류, 목록 또는 신고번호, 채권자, 채권내용, 미확정인 채권액,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권리가 확정될 경우 그 권리와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준용할 만한 유사한 회생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 장래의 구상권자의 미확정 구상채권 등이 장래에 현실화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채권의 현실화 예상 금액은 미리 자금수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사위원은 이를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검토한다.

바.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반대급부로써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할 수 있고 이 채권은 예외적으로 특별조사기일 이후에도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사. 장래의 구상권

장래의 구상권자는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전부를 대위변제하여 채권이 전액 소멸한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권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아.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공익채권은 분할변제나 감면 등 권리변경의 내용을 규정한다 하더

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규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금 및 이자의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들과 분할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변제시기와 금액을 자금수지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준비연도 또는 제1차연도 등 초기연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안 제출 당시까지 발생한 공익채권 내역을 확인하고 그 전부가 자금수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개시 후 발생한 조세공익채권의 규모가 커졌는데도 자금수지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수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자구노력의 추진

조사보고서의 자구계획 내용, 자금수지계획표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 등 구체적으로 추진할 자구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기로 계획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 감정가액, 매각예상금액, 관련 비용, 회수예상금액, 매각예정연도 등을 표로 작성하여 표시하고, 부동산 등 처분시 중개수수료나 세금 등 처분과 관련된 비용도 고려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각을 예정한 자산에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체납처분은 인가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인가 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므로(예외사례 존재), 이를 간과한 경우 인가 이후 자산의 처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을 예정한 자산에 대한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인 조세채권 포함)이 있는 경우 매각연도에 해당 담보권의 변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개인채무자의 경우 자산의 조기 매각 등을 기재하는 것 외에 생계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안정적인 급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5. 예상수익금의 과부족시 처리 방법

가. 예상수익금 초과시

예상을 초과하는 영업수익금 또는 자산매각 대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의 변제, 운전자금의 사용,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한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한다. 이때의 할인율은 변제자금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할인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하며,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1차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있다.

나. 예상수익금 부족시

예상수익금 부족으로 회생계획안상의 변제금액을 전액 변제할 수 없을 때의 변제 순서를 기재하며, 총칙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6. 채무자를 인수할 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함과 아울러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때로는 채권자들의 요청 또는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인가 이후 특정 기간 내에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다.

M&A가 성사된 이후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에는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예정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다.

7.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화해나 조정의 수락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리인에 의한 소송의 수행 그 밖에 권리의 실행에 관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제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 증자의 필요가 있을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한다. M&A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시에는 M&A의 계약을 참조하여 법 제206조 등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자본의 감소

공정 ·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 감축의 정도를 회생채권자의 권리 감축의 정도보다 크게 하는 것이 실무례이므로, 주식병합, 출자전환 등을 한 후의 총 발행주식 중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재가치 변제율보다 낮은지 확인한다. 이사 · 지배인 등의 책임 있는 행위로 채무자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2/3 이상 감자하고 있는지(법 제205조 제4항), 출자전환 방식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수관계인 · 대주주 등과 일반주주를 차등 병합하거나, 자기 주식 무상소각을 할 수 있다.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통상 회생계획안 인가일 다음 날로 한다.

라. 출자전환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발행하도록 한다. 채무면제 또는 출자전환시 할증발행으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을 소진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을 조사위원에게 확인하도록 함).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기존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적정한지 점검한다.

마. 신주의 효력 발생일

주식병합, 신주발행, 주식 재병합의 각 효력발생일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자본감소에 의한 신주의 효력 발생일 다음날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자본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 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이나 보증채권의 경우에는 변제할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병합 등의 효력발생일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 하면 증권거래소나 예탁업무 대행기관의 업무절차와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증권거래소 등과 일정을 협의하도록 한다.

바.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 후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유지하도록 한다.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가 너무 클 경우 향후 M&A추진 등 신규자금 유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 한다.

9. 사채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법 제55조) 자금수급계획상 사채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지 불문하고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M&A 등으로 인한 사채 발행시에는 M&A 계약을 참조하여 법 제209조 등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0. 정관의 변경

출자전환으로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M&A를 통하여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할 때를 대비하여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M&A를 통하여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자가 최소한 기 발행되어 있는 주식 이상을 새로 인수하여야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충분히 여유있게 정하도록 지도한다.

11.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제3자 관리인의 경우와 관리인 불선임의 경우에 각각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사 ·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새로이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임기, 선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법 제203조).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이사 · 이사를 유임시키되, 회생계획인가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이사 · 이사를 선정,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인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인가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최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도록 지도한다.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관리인이 인가 이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원칙이며, 이 때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보통 1년으로 하고 있다.

12. 회생절차의 종결 · 폐지

회생계획상의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이 가능하도록 회생절차의 종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지도한다. 조기종

결시 채권자협의체가 회생계획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관리인이 신속히 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다.

13.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의 내용이 회생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6조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4. 기타사항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계획안 본문과 회생계획안 요약표 사이에 수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한다(엑셀수식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고 주요수치 직접 점검). 조사위원이 제시한 변제방법이나 현가변제율과 차이가 클 경우 원인을 확인한다. 모든 채권의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보다 높은지 확인한다. 가장 낮은 변제율을 가지는 채권의 현가변제율이 구주주의 지분율보다 높은지 확인한다(특수관계인 등 예외적인 경우 있음). 현가 할인율, 조기변제 할인율, 연체시 적용이율 등 각종 이율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제3절 회생계획안 요약표의 점검

관리인은 회생계획안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리위원은 그 내용과 수치 등을 점검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회생계획안,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등과 대조하며 확인한다.

1) 비교사업계산서(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2) 자금수지계획표

3) 변제계획안 요지

4) 조사기간 이후 회생채권 등의 변동사항

가)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나) 회생담보권 명의변경 내역

다) 소멸된 회생담보권 명세서

라)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마) 회생채권 명의변경 내역

바) 소멸된 회생채권 명세서

사) 미확정구상채권의 확정구상채권으로의 변동 내역

아) 추완신고된 벌금 · 조세 등의 신고명세서

5) 권리변경 및 변제율 총괄표

가) 채권별 청산가치배당률표

나) 채권별 현가율 및 배당률 비교표

다) 회생담보권 현재가치 변제율 계산 명세서

라) 회생채권 현재가치 변제율 계산 명세서

6) 적정 차입금 규모 산정 내역

7) 정관의 변경

8) 주주지분 예상 총괄표

9)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액

10) 의결권 비율 순위표 등

제4절 사전계획안 및 회생계획안의 수정

1. 사전계획안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 제223조 제1항). 결의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가결 여부에 영향력이 큰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한편 채무자의 구조조정과 추가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법 제223조 제4항, 제6항).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 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 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법 제223조 제7항).

2. 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 후 심리 집회 이전에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며, 관리위원이 사전 검토를 거쳐 주심판사에게 서면 또는 대면보고를 한 다음 수정안을 제출토록 한다.

또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회생계획 수정안 외에도 당초의 회생계획안과 회생계획 수정안을 비교한 수정비교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수정 취지와 수정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한다.

관계인집회가 임박한 때에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작성,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내역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등이 불리하게 수정되는 채권자들의 경우 기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해당 채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관리인에게 확인하고, 불리하게 회생계획안이 수정된 이후의 날짜로 다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11 장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 집회를 소집하고(법 제224조),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이 수정의 필요 없이 결의에 부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의 집회를 소집한다(법 제232조). 대부분 사건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특별조사기일, 심리 집회, 결의 집회를 같은 날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다(법 제186조).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일지정결정문을 송달하고 소환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보통은 회생계획안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뒤로 집회기일을 정하고 있다.

먼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하고 이어서 심리 집회, 결의 집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심리 집회는 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및 변제계획 설명 ② 조사위원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보장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의견 진술 ③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법 제225조) 순으로 진행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심리 집회 이전에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미리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리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수정에 대한 허가를 고지한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마치면 결의 집회를 진행한다. 결의 집회는 ① 결의를 위한 조분류(법 제236조) ② 의결권에 대한 이의 진술 청취 후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의 결정(법 제188조) ③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 집회 당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이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결의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관리위원은 회생계획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회생계획안 검토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심리 및 결의 집회 단계에서 관리위원이 추가로 점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이 가결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파악하여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에 속행기일 지정을 구하거나 강제인가결정을 구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관계인 집회자료를 점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셋째, 관리인으로 하여금 집회시 관리인이 보고할 사항, 이의할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 등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제2절 심리 · 결의 집회의 준비

1. 회생계획안의 최종 점검 및 제출

가. 수정안 제출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집회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 후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변제율, 변제시기 등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5], 담보물 매각계약 체결에 따른 변제 재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필요하다.

나. 집회 전 점검

관리위원은 집회 전까지 최종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공정 ·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생계획안은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배제될 수 있고(법 제231조) 이 경우 이미 지정된 집회 기일은 취소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5) 영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의 추정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의 결과와 상이한 추정을 한 근거를 소명하거나 조사위원이 수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다. 동의서 수령 등

관리위원은 집회기일 이전에 회생계획안을 검토하여 회생계획안에서 공익채권을 분할변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각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변제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수령하도록 하고, 조세 등 채권을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세채권자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하도록 하며(법 제140조 제3항), 자금 차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집회 이전에 현금유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자금수지의 추정과 수행가능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설명과 동의 설득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후 관리인은 즉시 채권자들과 접촉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며, 채권자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가. 위임장 수령

채권자가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결의에 대한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때 수임인은 관리인이 아닌 제3자(채무자의 직원 포함)로 하도록 지도함이 원칙이다. 관리인이 수임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혼선을 막기 위함이다. 채권자를 설득하여 위임장을 받을 때에는 위임장에 날인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날인된 인장이 채권자의 인감과 동일한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위임의 범위, 즉 속행 여부에 대한 결의 포함 여부 및 속행기일에서의 결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채권자가 직원에게 의결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채권자의 직원이 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결권의 행사 범위(① 당해 기일에서의 회생

계획안 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아니면, ② 속행기일지정 결의 권한에 한정하여 위임받았는지, ③ 당해 기일의 결의 권한 위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④ 속행기일에서의 결의 권한 위임까지 포함되는지 등)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급적 서울회생법원의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관리인은 대리인이 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권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채권신고접수증을 지참하고 집회에 출석하도록 미리 안내하면 집회 당일 이해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나. 중소기업 교섭지원 제도 활용

중소기업인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사이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중소기업 교섭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인에게 안내한다. 중소기업 교섭지원 제도의 활용은 법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추천한 교섭위원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채권자와 교섭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교섭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교섭위원 위촉계약, 교섭위원 서약서, 교섭결과 보고서 등 양식 안내). 관리위원은 관리인과 교섭위원으로 하여금 교섭 진행 경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한다.

3. 2차 조사보고서의 검토

법원은 관계인집회 5일전까지 조사위원으로부터 2차 조사보고서 초안을 받아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원칙, 수행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리위원은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관계인집회 기일에 임박해서 제출되는 경우에는 수정안이 제출된 즉시 조사위원에게 이를 알려 수정안을 검토하여 2차 조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하도록 하며 관리인에게도 조사위원의 2차 조사보고서를 받아 관계인집회자료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하고 있다.

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은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한 연도별 변제예정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과 청산시 배당률을 비교하여 현가변제액이 더 커야 하는데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만이 아니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도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담보대출 또는 무담보대출별로 평균적인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출시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이며, 대개 제1차 조사보고서에 현가할인율이 기재된다.

나.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안에 변제대상 채무가 누락 없이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회생계획안에 정한 변제자금을 현실적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지급의무가 확정된 변제대상 채권이 완전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조사기간 중 시인한 채권, 조사기간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관리인의 이의 철회로 증가한 채권, 채권자 명의변경신고 또는 조기변제·면제 등으로 소멸된 채권, 조사확정재판 결정으로 인해 확정된 채권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시인된 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현실화 예상액으로 정한 채권이 변제할 채무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2차 조사보고서에 적정하게 분석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조사보고서의 조사기준일(개시결정일) 이후 채무자의 월간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1차 조사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조사기준일 이후 매출실적이 차이가 크지 않은지, 차이가 크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2차 조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회생계획안에 첨부된 자금수지표와 1차 조사보고서의 자금수지표를 비교하여 주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지, 차이가 크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가 2차 조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4. 예상동의율 확인 및 집회 기일 연기

집회 기일 이전에 관리인이 예상동의율을 파악하여 법원에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상동의율을 파악할 때에는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 등 조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위임장을 수령한 경우와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동의할 채권자를 구분하여 파악하며, 의결권 비율이 높은 채권자부터 차례로 기재하고 동의 누적비율도 기재하도록 한다.

예상동의율을 파악하여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면, 변제율을 올리기 위하여 차입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변제시기 조정, 담보물 매각위임 시 경매 포함, 집회 전 담보물 매각계약 체결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집회 기일 1일 전에는 최종적인 예상동의율을 파악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부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요 원인과 속행하였을 경우 가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보고한다. 이는 법원이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집회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고 채권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결되더라도 기일을 진행하여 속행 결의를 거치는 것도 집회기일에서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회생을 위한 관리인의 노력을 기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므로, 집회기일 이전에 진행방향을 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회 기일 연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인(또는 대리인)이 사전에 법원에 사유를 설명하여 조율한 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채권자가 유동화회사에 채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동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협상 과정에서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집회 기일 연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하여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타당한 기일 연기 사유로 보기 어렵고, 기일 연기의 신청은 집회 직전까지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회 기일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여유가 없거나 법원이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기일에 집회를 개최한 후 회생계획안 심리를 하지 않고 법원이 현장에서 기일 연기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제3절 관계인집회 자료의 작성 · 제출

1. 관리위원의 점검사항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관리위원은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로 점검한다.

- 관리인보고서 :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표 : 추완신고된 채권 중 누락된 것이 없는지 여부, 시 · 부인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 통상 보증기관의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하도록 하므로 이를 확인
- 회생계획안 요지 및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요약)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출석현황 및 의결표 : 서울회생법원에서 정한 표준 양식에 따라 의결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실무적으로는 관리인이 작성한 후 법원실무관의 협조를 받아 정확성 여부를 체크한다.)

2. 예상질문 및 답변자료 준비

한편 관리인에게 집회에서의 예상질문 및 답변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관리인은 심리 · 결의 집회에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미리 파악하고, 질문을 받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집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회에서 발언할 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미리 예상 질문 및 답변 요지를 작성하여 집회 전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절 심리 · 결의 집회 참석

1. 집회 참석 준비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관리위원은 부채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거나 기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사건의 경우에만 관계인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관리위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집회 1~2주 전에 실무관의 협조를 받아 다른 사건의 관계인집회를 참관하도록 한다. 다른 사건의 집회 현장을 직접 보고 관리인이 발언할 순서, 내용 등을 꼼꼼하게 메모해 둠으로써 추후 집회 진행에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인으로 하여금 집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시나리오로 미리 작성하게 하고 관리위원이 사전에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관리인이 발언해야 할 부분(의결권 이의 진술, 회생계획안 부결시 필요한 경우 속행기일지정 요청 또는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한 강제인가 요청 등)을 사전에 숙지하게 하여 놓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집회에 CRO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채권자는 여타 채권자 등과 달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한다.

2. 심리 · 결의 집회 진행 순서

가. 심리 집회

1)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및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

2) 조사위원의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보장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의견 진술

3)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나. 결의 집회

1) 법원의 조분류와 의결권 행사 기준에 대한 고지

2) 관리인과 이해관계인의 조분류에 대한 의견 및 의결권에 대한 이의 진술

3) 의결권 이의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정 고지

4)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

5) 법원의 가결 또는 부결 선포

6) 관리인과 이해관계인의 회생계획안 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진술

3. 회생계획안 가결의 시기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결의 집회의 첫 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늘이더라도 1월을 넘지 못한다(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또한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더라도 6월을 넘지 못한다(법 제239조 제3항). 회생계획안이 위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법 제28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절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

1. 회생계획 변경안의 작성 · 제출

결의 집회의 속행 기일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결의 집회와 다르지 않다. 다만, 회생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생계획안의 변경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법 제234조), 변경된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 변제시기, 주식의 소각비율 · 병합비율 등이 당초의 회생계획안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한편 채권의 변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이어야 하므로 자금조달계획상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실무상 조사위원이 회생계획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변경에 대하여 집회 전에 미리 검토를 마쳐야 하고, 조사위원도 청산가치보장과 수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관리위원은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사전 점검한 다음 관리인으로 하여금 집회 전에 제출하게 한다.

2. 집회자료의 준비 · 제출

관리인은 원래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관리위원의 사전 지도를 받아 관계인집회(속행기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회생계획 변경안, 회생계획 변경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를 미리 인쇄하여 집회 참석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및 의결표'도 제출한다.

3. 결의 집회 속행기일의 진행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추후보완신고는 심리 집회의 기일까지만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에는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속행 집회에서는 조 분류, 의결권에 대한 결정이 결의절차 전에 다시 진행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회생계획안의 변경신청을 한다는 진술을 하고 회생계획 변경안의 요지 및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한다. 회생계획안 변경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경 없이 원래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그대로 다시 결의에 부치더라도, 법원은 결의절차에 앞서 조의 분류, 의결권의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므로 관리인은 그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다면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속행기일의 결의절차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속행기일의 재속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6절 회생계획의 인가

1. 회생계획 인부결정

가.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법원은 인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집회 당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거나 회생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때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속행기일 지정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3 이상, 주주·지분권자조 의결권 총수(실제 결의에 참가한 의결권 기준)의 1/3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법 제238조). 채무자가 부채초과 상태인 경우에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속행기일 지정 신청이 없거나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결의가 부결된 경우, 법원은 일단 집회를 종료한 후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한다. 결의절차에서 1개 조 이상 가결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반대하는 조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실무상 '강제인가'라고 부른다)할 수 있고(법 제244조), 관리인이 집회에서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강제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가.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인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미친다(법 제250조 제1항).

하지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②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법 제250조 제2항). 예를 들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공익채권자, 환취권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자가 변제기 유예에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공익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재는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음을 보고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다.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법 제251조).

담보권 말소는 법원의 직권 말소촉탁에 의하거나(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이 법원에 말소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 회생계획에 담보권 존속규정을 두는 경우는 담보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 권리의 변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법 제252조).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효과, 기한유예의 효과, 출자전환의 효과 등이 발생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의 소각 · 병합 등 자본감소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거나 변경된다(법 제264조 제1항).

마.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256조 제1항).

이와 달리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 징수유예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중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바.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고(법 제249조), 그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255조 제2항).

제 12 장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 수행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관리인은 우선 회생계획 확정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정관변경 허가,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 등 허가, 임원의 해임 및 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의 수행이란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를 위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영업목표를 달성하여 영업이익으로 변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은 영업이익만으로 변제를 이행하는 사례보다는 담보자산을 포함한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규로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인이 직접 자산을 매각함이 원칙이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최우선 순위 담보권자에게 담보자산의 매각을 위임할 수도 있다. 외부자금 조달은 M&A(주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 또는 차입에 의하는데, 전자의 경우 인수자에게 경영권이 이전되고 후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데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관리인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로 M&A를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고 원회생계획상 권리를 추가로 감축하여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회생계획 인가 이후 관리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영이 정상화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경영환경이 인가만 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가 직후부터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만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담보자산을 처분해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예정한 경우이다. 해당 담보물을 회사가 영업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반드시 재임차를 전제로 하여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 달성이 어렵거나, 회생계획 인가 전 평가한 가치보다 시세가 하락하였거나, 조세채권자의 가압류, 체납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매수 희망자가 매수를 꺼리게 되는 등의 이유로, 담보물 처분이 어려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회생계획 인가 전·후 구조조정 조치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인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인이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하여 법원 허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조세채권에 의한 압류 및 체납처분의 취소는 인가 이후에는 통상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존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변제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금차입 또는 M&A 추진 등 어떠한 전략이 회사의 사정에 가장 적합한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위원이 할 일

1. 관리인 지도 및 조사위원의 평가

가.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즉시항고 기간(공고 후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실무상 관리인이 인가결정문 사본을 회생계획에 첨부하여 확정본을 작성하고 회생계획 확정본을 전자 접수한 후 필요시 제본하여 별도 제출하도록 한다.

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관리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혹 정관변경 조문이 기존 정관의 조문의 위치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회생계획에 변경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정관의 조문 체계에 맞추어 변경안을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신청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구주주의 주식병합,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주식 재병합 등 자본금 변동사항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회생계획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때에 인가받은 회생계획과 대조하여 발행주식수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이사 ·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허가신청

회생계획안 표준안에서는 인가시점에 관리인이 법률상 관리인인지 제3자 관리인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현 대표이사 · 이사는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전원 유임하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현 대표이사 · 이사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준안에 불과하므로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회생계획에서 대표이사 등이 유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대표이사 등이 인가에도 불구하고 유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유임되는 대표이사 · 이사의 임기는 회생계획의 인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대표이사 ·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임원선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인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간(통상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최, 위 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허가를 받아 개최하도록 지도한다.

2) 회생계획에서 대표이사 등이 퇴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표준안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 · 이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고,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개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다.

대표이사 ·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각 1년 이내로 한다. 인가 전 M&A가 완료되어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허가신청서 지도

해임대상 및 선임대상 임원의 인적사항을 허가내용에 포함하여 신청하고 임원의 수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정관상 임원의 수를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개최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등을 명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상법에서 규정한 기일 전(통상 14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마. 조기종결 가능성에 대한 안내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법 제283조와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종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결을 추진하여 일반기업으로서 자율적이고 개선된 신인도를 바탕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회생기업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조기종결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안내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조기종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변제허가에 대해서 지도한다.

바. 조사위원 및 구조조정담당임원에 대한 평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관리위원은 즉시 조사위원평가표 및 구조조정담당임원 업무수행평가표에 의해 조사위원과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법원에 파일로 송부한다.

2.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회생계획 인가 후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므로 관리위원회 의견조회에 대하여 조속히 회신하도록 한다[양식 2-6]. 통상 기존의 구조조정담당임원이 그 임무를 적정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구조조정담당임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3. 각종 등기촉탁신청 안내

가. 회생계획의 등기변경사항

회생계획에서 정관의 변경, 자본 변경의 효력발생시기를 인가결정일 무렵으로 정한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자본의 변경 및 임원의 변동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법원사무관 앞으로 등기촉탁을 신청하도록 한다.

나. 말소촉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256조). 따라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기존에 이루어진 절차의 말소촉탁을 신청하게 한다.

이와 달리 실무상 조세채권에 의한 압류 및 체납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취소 명령을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제3절 회생계획의 수행

1. 사업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여야 회사를 재건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제 재원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기업으로서 변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속한 경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 각종 항목별로 회생계획의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회생계획의 수행 상황을 법원이 파악하기 쉽도록 관리인이 각종 보고서를 법원에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가. 자산 매각에 대한 지도

채무자가 인가 이후에도 정상적인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담보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제때 매각하지 못하여 변제를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수익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이다.

우선,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매각대금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자산매각시 향후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의 자산매각대금의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자금수지계획상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변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는 매각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매각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매각절차를 준비하고 변제기일에 임박하여 진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영업용 자산은 일반적으로 매각 후 재임차가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자산관리공사, 연합자산관리(주)에서 제공하는 Sale & Lease Back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특히 현재 영업용으로 사용 중인 자산의 매각 지연 가능성이 큼).

자산매각이 어렵고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것이 자산 처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다.

비업무용 자산은 인가 직후 매각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리스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조속히 반납하도록 지도한다.

나. 자산 매각시 유의할 점

매각금액이 담보가치 평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담보가치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매절차에 의해야 하지만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자가 저가 매각에 동의하더라도, 미변제되는 회생담보권의 향후 변제 방안 또는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것보다 매각대금이 낮아서 발생하는 변제자금 부족의 문제 등에 관해 처리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관리인이 담보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담보물 매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기도 한다.

다. 매각방법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한다. 그러나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가격에 의해 매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소액의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사전에 법원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3개사 이상의 매수희망자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아 비교검토하여 처분하게 한다.

매각하는 자산이 담보물인지 기타 자산인지 구분하여 지도한다. 회사의 주요자산, 등기 · 등록자산 및 담보자산의 매각시 법원에 사전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지도한다.

라. 매각 위임

회생담보권 담보물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우선 순위 담보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임하도록 지도한다. 매각위임에는 경매진행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다.

매각 위임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매각 위임 후 지연이자 문제를 사전에 정하기도 한다.

마. 강제집행 등의 말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연히 실효되지만, 자산매각 시에는 등기부의 형식적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직접 말소촉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관리인이 직접 해당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신청서와 함께 인가결정등본 및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바.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보전처분등기 말소

등기부상 외관이 남아있으나 회생절차 진행 결과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말소대상 등기에 대하여는 통상 담보물 매각시 법원의 말소허가를 받아 말소등기촉탁으로 처리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말소하기도 한다.

조기종결의 경우에는 종결 전 말소가 필요한 등기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 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매각허가 후 매매가 확실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전등기 말소허가를 받아 사전에 말소촉탁하기도 한다.

3. 회생채권 등의 변제

가. 변제의 지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는 변제기(통상 연말로 정하고 있다)에 이루어지나 담보물 매각 또는 조기종결을 준비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기보다 앞서서 조기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던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관리위원이 사전에 변제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절히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제기에 이루어지는 변제의 경우에는 변제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으로 하여금 미리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변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채권 및 금액을 확정하고 그 개별 명세 및 인가된 회생계획상 변제계획의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채권자별로 차등이 있는지, 기존에 변제한 금액과 잔액이 얼마인지 관리인이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조기변제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일부 채권자의 채권만 변제할 경우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회사의 보고서류 점검과정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의 의견을 법원에 보고한다.

나. 종결을 위한 조기변제

종결을 염두에 둔 조기변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중에서 어느 채권을 어느 수준에서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하고 있는데, 주로 최초로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조기변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조기 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변제기에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의 변제허가 지도

회생계획에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기일이 연말로 계획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제자원 확보를 위해 월별 자금수지가 회생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도한다.

회생계획 표준안에서는 변제기에 변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관하여 "예상수익금의 부족으로 회생계획의 변제금액을 전액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우선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 순으로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의 연체이자, 회생채권의 연체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의 채권을 우선 변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법원과 협의를 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변제된 회생채권의 향후 변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한편 변제재원이 부족하나 공사 수주, 각종 보급서 발급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차입을 통하여 채권액을 전액 변제한 후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도 한다.

라. 변제이행 결과보고

변제 이행 후 변제 허가서 사본 및 변제 증빙을 첨부하여 변제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회생계획수행현황보고서의 형태로 변제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채권자의 연락두절, 수령거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제하지 못한 경우 미변제 금액 및 사유를 보고하고 공탁 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차후 변제함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마. 조기종결 지도

변제이행보고 이후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하여 법원과 협의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종결을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제4절 회생계획의 변경

1.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282조 제1항). 회생계획을 관계인집회 없이 법원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관계인집회 후 법원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회생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라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회생계획 인가 당시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현재와는 다른 회생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사태의 출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가 후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변경, 합병계획의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예정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관련 기업의 부도, 주력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 파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변경할 필요'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회생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회생계획을 변경하면 그러한 사태를 회피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종전 회생계획의 인가는 처음부터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후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단순히 경영부진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생계획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영업부진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회생채권을 이월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변경사유가 아님을 관리인에게 안내한다. 채권자가 변제기 유예에 동의하기만 하면 그로써 회생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 점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한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에서의 심리와 결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282조 제2항).

실무상 인가 후 M&A가 성사되어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일괄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려고 할 때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회생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과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2. 회생계획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해 변경회생계획이 법 제243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그렇지 않으면 회생계획 변경 불허가결정을 한다. 예를 들면 원회생계획에는 회사분할에 관하여 추상적인 규정만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부인권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실제 회사를 분할할 필요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회사분할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회생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생계획변경이므로 집회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2012회합185 ㈜웅진홀딩스 사건 등).

3. 회생계획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 제282조 제2항 소정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회생계획에 비해 질적 · 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재감축, 담보권의 해제, 변제기의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현금변제

조항을 출자전환 조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의결권 비율감소와 주가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등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률적 자문을 받아 회생계획변경에 관한 방향을 정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 변경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시 점검사항

변경 회생계획안 작성 기준일을 정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고 변경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전검토를 받도록 지도한다. 개시결정 당시 선임된 조사위원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변경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추정자금수지 등을 검토하게 하여 사전에 적정성을 협의한다.

원회생계획안의 내용, 인가 후 변제 내용, 변제 후 확정 채권액을 병기하여 변경 전후의 흐름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다. 관계인 집회 및 인가

회생계획 변경이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종전의 회생계획 인가절차와 동일하게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및 결의 집회, 인가를 거쳐야 하므로(법 제282조 제2항), 관리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관계인 집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으므로(법 제282조 제4항 제1호),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는 각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별로 원회생계획에 찬성하였는지를 표시하는 란을 따로 둔다. 동의 간주 조항의 효과로 인해 회생채권자 등에게 변경회생계획안 요지를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5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1. 자금조달에 대한 지도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자금조달은 사업계속을 위한 운영자금 및 변제재원 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금조달은 주로 관리인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며, 관리위원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형식을 취한다. 운영자금의 마련 방법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2.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금융기관 예금반환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체납처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소하는 것이 실무례이므로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체납처분의 취소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 자금차입

가. 회생계획에서 차입방법과 대상이 특정된 경우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차입방법과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자금차입을 추진하는 경우, 관리위원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적합한 허가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한다.

나. 회생계획에서 차입방법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또는 개인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금을 신규로 차입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어음할인 방식에 의한 자금차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익채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므로(법 제180조 제7항),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양식 1-11].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차입허가신청시 법률상 관리인 본인,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각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담보여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실상 채무자 운영에 사용하고 나중에 채무자의 영업수익으로 개인적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식의 자금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진행하는 자금지원제도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안내한다.

다. 신규차입 허가신청시 지도사항

자금차입에 있어 법원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사항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공익채권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지도한다.

차입자금 사용계획,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의견조회를 하기 위한 공익채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자금 대여자가 변제 우선권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익채권자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될 수 있음을 지도한다.

4.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계속을 염두에 둔다면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결국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은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가운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를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설비 매각으로 인하여 가동능력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 차량 등에 체납처분이 있고, 자산매각시 위 자산에 체납처분된 조세를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체납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5.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실무상 회생계획 인가 후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M&A를 위해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면서 인수자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자가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므로(법 제206조, 법 제209조), 신주나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3 장

회생절차에서의 M&A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가. 의의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또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회사에 외부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회사의 실질적이면서 신속한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는 회생절차에서의 M&A를 염두에 두고 인수예정자를 확보한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바로 M&A를 추진하는 등 단순히 회생계획 수행방법이나 종결수단이 아닌 회생회사의 사업계속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회생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회생절차에서의 M&A의 특징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감소, 신주발행 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하고(법 제55조 제1항),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등은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 · 대가 · 상대방 등을 정하여야 하므로(법 제200조), 자본감소와 신주발행, 영업양도를 수반하는 M&A는 회생계획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생계획 인가 후의 M&A 또한 변경회생계획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준칙 제241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내 M&A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이하 이 장에서 '준칙'이라 한다)를 제정하여 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M&A 절차의 성공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의 승인 절차와 매각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M&A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가. 회생절차에서 M&A의 중요성 인식

회생계획 인가 전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거나,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등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할 때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만다.

나. 관리위원의 역할

1) 관리인에 대한 조언

관리위원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관점에서 관리인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 중 회사 내부 역량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지 전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할 때 관리위원이 회사의 상황과 과거 다양한 M&A 사례를 감안하여 당해 회사에 적합한 M&A 추진 전략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물론, M&A 매각주간사가 자체적으로 관리인과 협의하여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리위원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

계자 전체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조언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M&A를 추진함에 있어 법원에 의견제시

관리위원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M&A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 M&A 추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M&A 진행 중에도 법원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M&A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관리인이 M&A를 추진함에 있어 그 절차가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위원은 M&A 진행상황 및 법원에 대한 보고내용을 점검하는 등 관리인을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2절 M&A의 종류 및 절차 진행의 원칙 및 개요

1. M&A의 종류

가. 시행시기에 따른 분류

M&A는 시행시기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고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예정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은 있으나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과다하고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를 꺼리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고 잠재부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2)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방법으로 M&A를 선택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하거나 또는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성공가능성 없는 M&A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만 지연되어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M&A의 성공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M&A (변경회생계획에 의함이 원칙)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와, 회생계획 인가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상 인가 후 M&A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인수금액에 따라 회생계획상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변경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인집회를 거쳐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방식에 따른 분류

M&A는 그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경우에 따라 2개 이상의 방법이 혼용되기도 한다.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M&A (대표적 방식)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이다.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은 채무자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구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식의 감자를 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법 제264조 제2항),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M&A에 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M&A

채무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를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거래선, 영업상의 비밀, 노하우 등도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고,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채무자에게 양도 가능한 사업부와 양도 곤란한 사업부가 혼재하고 있어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양도 곤란 사업부로 인하여 인수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때, 채무자에게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대규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자의 입장에서 인수에 따른 부담이 큰 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회생절차에 의한 영업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불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61조 제2항).

다만 영업양도방식은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특정승계절차이므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에 비하여 양도절차가 복잡하고 양도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등이 부과되며 잔존자산 처분이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를 바로 종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회사채 발행 방식

회생절차에서의 M&A는 대부분의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M&A 방식이다.

4) 회사 분할

회생회사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으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5) 신회사 설립

회생계획에서 회생회사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신회사에 양도하고, 신회사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2. M&A 절차 진행의 원칙

가.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1)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M&A 방법과 일정 선택

M&A는 채무자 외에도 매수인, 회생채권자,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좌우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복잡한 법률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추진하는 M&A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관리인은 매각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원칙과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매각주간사, 우선협상대상자, 인수예정자 선정시 최종 용역제안서나 인수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법원과 협의하여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준칙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M&A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부적절한 인수희망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채권자협의회, 감사 등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M&A의 악용 방지

1) 필요성

회생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악을 끼친 채무자의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수희망자를 M&A 절차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2) M&A 절차 단계별 조치

가) 매각공고와 입찰안내서에 기재

일반적으로 '인수희망자에게 구 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인수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인수희망자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인수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관리위원은 관리인과 매각주간사에게 인수의향서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지도한다.

다) 인수계약 체결 후 계약해제 사유

인수자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인수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인수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해제사유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 회생계획안 배제 및 불인가 사유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배제사유가 있는 자를 인수자로 하여 회생계획이 작성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결정(법 제231조의2)을 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법 제243조의2)을 할 수 있다.

다. 법원 허가사항 및 보고사항 준수

1) 원칙적 허가사항

M&A 진행과정에서 다음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 M&A 절차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법
-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 매각공고
- 입찰안내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 체결
- 인수대금 조정
- 인수계약 체결

2)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지도

관리위원은 M&A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또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더라도 M&A 절차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법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관리인을 지도한다.

3) 사후보고 지도

관리위원은 관리인과 매각주간사가 사전에 수립한 M&A 일정에 맞추어 인수의향서 제출보고, 인수제안서 제출보고 등을 하도록 지도한다.

라. M&A 일정 준수

관리위원은 관리인과 매각주간사가 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M&A 추진 일정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제3절 M&A 절차 일반

1. 주요 일정

인가 후 M&A 기준으로 주요 일정 예시는 아래 〈표 13-1〉과 같다.

〈표13-1〉 인가 후 M&A 일정표 예시

구분	소요기간	업무내용
매각주간사 선정	2주	주간사 선정 필요성 검토
		선정기준 마련
		용역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매각주간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6주	매각주간사의 실사 및 평가
		실사 결과 법원보고(주심판사 대면보고)
		M&A 전략수립 → 법원 보고
		잠재적 투자자 물색
		기업매각공고(법원의 허가), 인수의향서 접수 및 평가
		회사설명자료(Information Memorandum) 발송
		실사를 위한 자료실(Data Room) 준비
		인수의향서 제출자의 예비실사
		입찰안내서 및 양해각서안 배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주	선정기준 작성
		구속력 있는 인수제안서(LOI) 접수 및 평가

구분	소요기간	업무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행보증금 납입 및 양해각서(MOU)의 체결
		법원의 허가
회생계획변경과 그 준비과정	10주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계약금 납입 및 인수계약(본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
		채무재조정을 위한 채권자와의 협상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인수대금 완납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회생절차 종결	7주	인수기획단 파견
		임원진 개편
		감자,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 절차 이행
		회생채무 변제
		담보권 말소
		회생절차 종결

관리위원은 상기 일정표를 기준으로 채무자와 매각주간사가 자체 일정 체크리스트(아래 예시 〈표 13-2〉 참조)를 구비하여 일정관리 및 허가/보고사항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 자산 및 부채 규모, 상장회사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특히 소규모 회사의 경우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단계 중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과정을 생략하기도 한다.

〈표 13-2〉 M&A 추진 상세 체크리스트 예시

일 정	내 용	매각주간사	회사	비 고
D-0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신청		○	
D+2	매각주간사 선정 공고 및 용역제안서 요청 문서 발송		○	
D+10	용역제안서 접수,검토 및 평가		○	필요시 Presentation을 받음
D+17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허가신청		○	
D+24	매각주간사 용역 계약 체결	○	○	
D+27	업무시작 (Kick-off)	○		
D+27	자산 · 부채 실사보고서 및 회사소개서 작성	○		
D+27	입찰관련 서류 및 투자자리스트 작성과 마케팅 시작	○		
D+36	실사자료 및 매각전략 보고	○	○	
D+45	매각공고 및 공고문안 허가신청		○	
D+51	매각공고 및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 배포 개시		○	신문공고 및 회사 홈페이지 관리
D+61	입찰안내서(양해각서) 확정 및 회사 앞 제출	○		
D+62	입찰안내서(양해각서) 법원허가 신청		○	
D+65	인수의향서 접수마감	○		인수의향서 제출자(정보이용료 기납부)에게 회사소개서 배포
D+67	인수의향자 앞 개별 예비실사안내문 발송 및 입찰안내서 배포	○		
D+68~69	Data Room 설치	○	○	자문사와 회사 Data Room 제공자료 및 장소 등 협의
D+72~76	예비실사	○	○	자문사 및 회사 예비실사자 질의사항 대응
D+74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 보고 및 확정	○		
D+79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 법원허가신청		○	보안유지 필요

일 정	내 용	매각 주간사	회사	비 고
D+81	입찰서류 마감	○		매각주간사 및 관리인 입찰마감 후 개별입찰서 밀봉 확인 후 법원에서 주심판사와 함께 개봉
D+81	입찰서류 평가	○		
D+8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회사 앞 제출	○		
D+8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법원허가신청		○	
D+8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D+87	우선협상대상자 앞 이행보증금 예치계좌 통보		○	향후 질권설정을 위해서 반드시 보통예금계좌(회사명의) 통보
D+88	우선협상대상자 이행보증금 예치			입찰금액의 5%
D+89	양해각서 체결기간 연장신청(필요시)		○	
D+89	양해각서 법원허가 신청		○	
D+90	양해각서 및 질권설정계약서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관리인
D+90	이행보증금 질권설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앞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배부		○	은행의 승낙신청서 사전협의필요
D+94	우선협상대상자 앞 본실사 안내문 발송	○		
D+96	정밀실사 준비	○	○	서류검증, 실물확인 및 증빙확인 등에 대비
D+96	연장시 양해각서 법원허가신청 DEAD LINE		○	
D+97	양해각서 체결 DEAD LINE		○	
D+101~111	정밀실사	○	○	매각주간사 및 회사 우선협상대상자 질의사항 대응
D+114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결과에 따른 인수대금 조정 요청			
D+116	인수대금 조정기간 연장신청(필요시)		○	
D+116	인수대금 조정 사항 법원허가신청		○	
D+117	인수대금 확정			
D+122	투자계약서 체결기간 연장신청(필요시)		○	

일 정	내 용	매각 주간사	회사	비 고
D+122	투자계약서 법원허가신청		○	
D+124	우선협상대상자 계약금 예치			확정된 인수대금의 10%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포함)
D+124	계약금 질권설정		○	
D+124	투자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관리인
D+127~129	채권자 개별접촉 채무조정 협상	○		
D+129	회생계획안 준비	○	○	
D+134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D+137	관계인집회일정 통보 및 회생계획안 요지 발송		○	관계인집회 2주전
D+149	인수대금전액 예치			확정된 인수대금의 100% (계약금 포함)
D+149	인수대금전액 질권설정		○	
D+152	관계인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	○	법원일정 감안 조정 요망
D+156	주식병합을 위한 구주권제출 공고		○	주식병합시 적용
D+156~184	구주권제출기간(1개월)			제출기간 만료일 효력발생
D+185	신주 및 회사채 발행		○	
D+186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	
	회생절차 종결신청		○	

2. M&A 착수

가. M&A의 주체

채무자 회사의 M&A 추진의 주체는 관리인으로, M&A 착수시점도 관리인이 결정한다.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M&A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고, 매각주간사 용역계약부터 인수계약 체결까지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매각주간사와 별도로 회계자문, 법률자문,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절차

1) M&A 추진을 위한 보고

관리인은 M&A를 추진하기 전 법원에 M&A 추진 시기, M&A의 방법, 예상일정 등을 보고한다.

2)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M&A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M&A 진행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도 적정한 방법으로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원의 허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M&A를 추진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법원에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M&A 계획 및 구체적인 예상일정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M&A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매각주간사 선정

가. 매각주간사 선정의 필요성

1) 매각주간사의 역할

매각주간사는 관리인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M&A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M&A 진행 초기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지 않고 M&A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이미 기존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M&A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안에서 새로이 M&A를 진행하면서 이미 확실한 인수희망자가 있고 그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조건이 기존의 인수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새롭게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지 않고도 M&A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매각주간사 선정 대상 업체

1)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준칙은 M&A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M&A팀 및 위 업체들의 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매각주간사 선정에 있어 회계법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회계법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건별 특성에 맞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컨소시엄을 선정할 경우 주의사항

매각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사 등 투자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각주간사로서 용역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의 규모, 매각 절차 진행 중 예상되는 법률적, 경제적인 문제들의 발생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선정방법

관리위원은 회사의 규모, 사안의 특수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매각의 난이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인이 아래 방법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1) 공개경쟁방법

가) 절차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주요 업체에 대한 용역제안서 제출안내서 발송을 병행하여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선정절차를 거쳐 매각주간사를 선정한다.

나)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대규모 회사로 주주, 채권자만이 아니라 근로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특별히 절차의 공정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등 매각주간사의 역량이 중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제한적 경쟁방법

가) 절차

복수의 업체에 용역제안서 제출안내서를 발송하여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선정절차를 거쳐 매각주간사를 선정한다.

나)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소규모 회사로 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매각주간사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관심을 보이는 다수의 인수희망자가 있어 매각주간사의 마케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3) 수의계약

가) 절차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인은 그 업체가 제시한 용역제안서상 조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용역수수료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적합한 경우

개시신청 전 또는 인가 전 M&A 진행 중인 사건으로 기존 절차의 매각주간사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임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M&A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안에서 매각주간사 용

역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의 매각주간사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라. 사전에 구체적인 매각주간사 선정기준 마련

1)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

관리인은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때에도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규칙 제49조), 복수의 용역계약서가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용역제안서 제출기간 만료 전에 구체적인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선정기준 평가요소

관리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맞추어 아래의 평가요소들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가) M&A 수행 · 자문 실적

나) 참여인원의 능력 · 경험

다) M&A 추진계획의 적정성

라) 회사현황 및 M&A에 대한 이해도

마) 용역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3) 유의사항

가) 과거의 수행, 자문실적에 과도하게 배점하지 않도록 주의

선정기준 마련시 M&A수행 · 자문실적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하게 되면 특정 대형법인이 사전에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수행실적 등은 매각주간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참여하는 구성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간사가 제시한 수수료의 의미

용역제안서에서 매각주간사가 제안한 용역수수료의 적정성 여부가 매각주간사 선정기준 중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용역수수료는 협상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안된 용역수수료의 액수가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관리인이 그 순서대로 용역수수료를 협상하여 매각주간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4)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표 예시

관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상황에 맞는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인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3-3〉은 실무상 이용되었던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표의 예시로, 채무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주간사 수수료의 적정성 및 기타 사항 등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될 수 있다.

〈표 13-3〉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표 예시(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 가 항 목	배점	등 급 별 배 점					평가방법
		A	B	C	D	E	
1. 주간사의 규모 및 참여인원	**5**	**5**	**4**	**3**	**2**	**1**	절대평가
가. 매출액	2	2	1.6	1.2	0.8	0.4	
		1,5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나. 자산규모	2	2	1.6	1.2	0.8	0.4	
		1,0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다. 참여인원수	1	1.0	0.8	0.6	0.4	0.2	
		7인 이상	6인 이상	5인 이상	4인 이상	4인 미만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배점					평가방법
		A	B	C	D	E	
2. 골프장 관련 업무실적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구조조정/조사위원 등 업무실적	**20**	**20**	**16**	**12**	**8**	**4**	절대평가
가. 건수 기준 수행실적	10	10	8	6	4	2	
		4건 이상	3건	2건	1건	1건 미만	
나. 금액 기준 수행실적	10	10	8	6	4	2	
		3,000억원 이상	2,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 M&A 실적 최근 3년간 M&A 자문 실적에 한함 (회생/비회생 포함) MOU 체결 후 진행 중인 경우 진행 건수 및 금액 * 0.5	**10**	**10건 이상**	**8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2건이상 4건 미만**	
가. 건수 기준 수행실적	5	5	4	3	2	1	
		10건 이상	8건	6건	4건	4건 미만	
나. 금액 기준 수행실적	5	5	4	3	2	1	
		6,000억원 이상	4,000억원 이상	2,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 회사현황 및 M&A에 대한 이해도	**20**	**20**	**16**	**12**	**8**	**4**	상대평가
가. 회사현황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나. 회사의 M&A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5. M&A 추진 계획의 적정성	**45**	**45**	**36**	**27**	**18**	**9**	
가. M&A 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10	10	8	6	4	2	
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및 이해조정능력	10	10	8	6	4	2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배점					평가방법
		A	B	C	D	E	
다. 잠재적 인수자 확보 여부 및 인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능력	20	20	16	12	8	4	상대평가
라. 회계 · 세무 등 자문 활용계획	5	5	4	3	2	1	
합 계	**100**	**100**	**80**	**60**	**40**	**20**	

마. 선정절차

1) 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공개경쟁방법에 의할 경우), 주요 업체에 대한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서 발송

가) 공고

매각주간사 선정 계획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서 발송

회사의 규모, 특징에 맞추어 관리인이 정한 4~8개의 주요 업체에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서를 발송한다.

2) 용역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절차

복수의 용역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미리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1차 서류심사 후 자격이 충분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Presentation을 요청하여 평가에 참조하기도 한다.

나) 평가위원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을 작성할 때 평가위원도 함께 정해놓도록 지도한다.

다) 협상의 우선순위 업체 결정

복수의 용역제안서가 접수되면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한 다음, 순위가 우선인 수개의 업체 중 순서대로 용역수수료, 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3)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매각주간사 입장에서는 장기일수록 유리하므로 보통 1년에 6개월 연장가능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매각주간사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6개월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정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인수자가 해외업체인 경우에는 그보다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수료

매각주간사의 용역수수료(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채무자의 업종 · 내용 · 규모 · 자금사정, M&A의 성사가능성, 매각주간사의 업무의 난이도, 수행능력, 인수희망자 유치 및 인수대금 결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준칙상 기준금액의 (+)60% ~(-)60% 범위 내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결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M&A의 성사가능성이 높은 경우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4) 매각주간사 용역계약 체결

용역제안서 제출업체와 용역수수료,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조건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로 최종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바. 매각주간사의 주요업무

- 매각전략수립 및 투자자 유치

- 매각대상의 가치평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최적의 M&A 진행 방안 마련
-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문 및 문서 작성
- 매각공고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의 종결까지 M&A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업무 지원
- 법률, 세무,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제반 검토와 자문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를 위한 업무 지원
- 기타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요청하는 사항

4. M&A 준비 단계

가. 매각주간사의 실사

1) 원칙

매각주간사는 직접 또는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다. 실사기준일은 최대한 실사시작일로부터 최근일을 선택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일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인가전 M&A의 경우 개시결정일 기준, 인가 후 M&A의 경우 가장 최근의 회계결산일 등을 실사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2) 매각주간사 실사를 생략하는 경우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매각주간사 실사에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주간사가 별도의 실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매각주간사 실사의 기능

매각주간사 실사에 따라 산정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최저매각대금과 적정한 인수대금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고, 실사로 파악한 회사의 현황과 재무구조 등을 바탕으로 매각가능성 및 관계인집회에서의 채권자들의 동의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매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잠정적인 매각금액을 공표할 경우 인수제안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실사결과 보고

1) 대면보고 원칙

관리인과 매각주간사가 실사결과를 법원에 대면보고 하도록 지도한다. 실사결과 보고시 구체적인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예상일정 및 매각공고를 위한 사전보고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실사결과 검토시 유의사항

매각주간사는 청산가치를 낮게 책정하여 M&A의 성사가능성을 높이고자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이를 유의하도록 지도하고, 대면보고시에도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M&A 전략 수립

1) 일반사항

관리인과 매각주간사가 M&A 착수 전에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M&A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가능성의 예상이다. 때로 가능성이 없는 M&A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실패시 매각가액만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하며, 매각방식도 회사 전체를 매각할 것인지 일부만을 매각할 것인지 결정하여 매각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사례

예시 1) 주식회사 팬텍의 경우 수차례 매각절차에서 실패한 후 인수희망자들이 선호하는 기술부문만을 물적 분할하여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을 마련한 사례

예시 2) 주식회사 이에프씨의 경우 주사업부문인 에스콰이어의 향후 영업전망이 불투명하여 회사를 3개 부문으로 분리하여 매각시도하면서 전 부문을 모두 인수하겠다는 인수예정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매각추진하여 흥행성을 높였으며, 그 결과 특정부문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자를 제치고 회사전체를 인수하겠다는 인수예정자에게 매각하였던 사례

라. 잠재적 투자자 물색

관리인은 매각주간사와 협력하여 잠재적 투자자(Potential Buyer)를 물색하게 된다. 하지만 M&A절차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관리인이 M&A의 성사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념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5. M&A 실행 단계

가. 매각공고

1) 공고내용

관리인이 매각전략을 수립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공고를 하도록 하고, 매각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매각의 개요 : 매각대상, 매각방법, 입찰방법, 채무자의 영위업종

나) 진행일정

다)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접수 :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

라) 예비실사 : 기간, 참가자격 등

마) 인수제안서 접수 :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서류 등

2) 공고에 대한 점검사항

또한 매각공고는 신문 공고뿐 아니라 채무자의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회생회사 M&A 안내”에 게재되도록 지도한다. 각 분기마다 채무자의 홈페이지 매각공고 공시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갱신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분기별 보고서의 M&A 항목에 인터넷에 공시된 M&A 관련 사항의 점검 결과와 갱신 여부 및 갱신 내용을 명기하여 보고하였는지 점검한다.

나. 회사설명자료(Information Memorandum) 배포

관리인은 인수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에게 회사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이 때 회사에 유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우발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재하여 진술 및 보장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인수의향서 제출 보고

인수의향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관리인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의 현황, 인수목적, 인수의향서에 나타난 투자전략, 자금조달계획, 향후 회사 경영방안 등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라. 인수의향서 제출자의 예비실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후 회사에 마련된 자료실에서 채무자 회사의 재무 관련 자료, 영업 관련 자료 등 정보를 통하여 예비실사를 할 수 있다.

마. 입찰기일 준비

1) 입찰안내서 및 양해각서안 배포

관리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에게 예비실사 기간 중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데,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의 목적, 거래구조, 컨소시엄의 구성 등 입찰의 개요
- 입찰금액의 의미, 확정된 인수금액의 사용계획(사용용도) 등
- 입찰서류의 종류, 제출기한, 제출장소
-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액수, 처리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서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지위 상실
- 이행보증금의 납입과 처리방법
- 양해각서(안)
- 입찰 이후 잠정적인 M&A 추진 일정
- 기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인수희망자에게 구 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인수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가) 유의사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전략적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에 비하여 우대받도록 배점함으로써 채무자를 실제로 경영·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수희망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전에 법원과 협의과정을 거치되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수제안서(입찰서) 제출일 직전에 관리인이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에도 상세 선정기준을 허가받는 대신 평가대상 항목과 배점만을 허가받도록 지도한다.

나) 평가항목

(1) 인수대금의 규모 및 유상증자 비율(가중치가 가장 큼)

(가) 평가방법

인수대금은 기준금액에서 일정 단위입찰금액당 점수를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된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75점 + (입찰금액 – 기준금액) ÷ 단위입찰금액} × 가중치
> ※ 단위입찰금액 당 1점 변동예정
> ※ 75점은 임의로 정한 점수임. 평가요소 중 인수대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 점수가 상승함

인수대금은 회생채권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무자회사가 공익채권 등이 과다하여 M&A 이후에도 추가 운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운영자금 투입 규모를 별도 평가요소로 감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 기준금액의 결정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표 변제율에 해당하는 금액(매각 목표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최저 매각가격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관리위원은 매각주간사에게 기준금액을 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적정한 단위입찰금액

단위입찰금액이 작을수록 평가항목 중 인수대금의 가중치가 올라가게 된다. 단위입찰금액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규모, 예상 매각가격, 청산가치, 인수자가 승계하는 공익채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비교를 위하여 매각주간사에게 몇 개의 단위입찰금액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입찰금액별 점수표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라) 유상증자비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과 회사채 발행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입찰금액 중 신주 인수대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상증자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에 유리하므로, 유상증자비율이 일정 비율 증가할 때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수제안서상 유상증자비율이 특정 비율 미만일 경우 무효처리를 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유상증자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무효처리하는 유상증자비율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지의 정도, 매각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 인수대금의 조달확실성(자금조달증빙)

(가) 자금조달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찰참가자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 상장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잔고 증명, 금융기관장이 발행한 대출확인(확약)서, 투자확약서 등이다.

(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자금조달증빙 비율의 결정

절차의 안정성이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대금의 조달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대금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조달증빙 비율을 정하여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 50% 이상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하고 있다.

(다) PE의 특수성 고려

PE(Private Equity) 등 Fund 운용사의 경우 사실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Blind Fund를 포함한 실투자가 가능한 Fund운용규모가 인정되기도 한다.

(3) 인수대금 중 부채부분의 조달조건(회사채 인수조건)

회사채 발행규모는 이자보상비율, 차입능력 등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고려할 필요도 있다.

(4) 인수 후 경영능력

인수 후 회생회사를 실제로 경영, 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의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 경험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대표적인 비계량적인 평가요소로 관리위원은 위 평가항목이 너무 자의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시 주의한다.

(5) 인수희망자(Consortium 구성 시 인수금액 최대인 투자자)의 재무건전성

주인수자의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인수희망자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주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여서 동종 업계의 평균부채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동종 업계 평균부채비율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

(6) 종업원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입장

인수희망자의 고용승계 조건 및 구체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7)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요청 여부

필요한 경우 인수희망자가 요청하는 양해각서 수정 요구수준도 평가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양해각서의 내용 중 실사기준에 관한 사항과 인수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수희망자 측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예시

관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상황에 맞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인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3-4〉는 실무상 이용되었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의 예시로, 채무자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배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정을 하도록 한다.

〈표 13-4〉 평가기준 예시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배점</th><th colspan="7">배점 기준</th></tr>
<tr><td colspan="2">입찰금액</td><td>75 + α</td><td colspan="7">{75점 + (입찰대금 -700억원) ÷ 단위입찰금액} × 가중치
• 매각대금 700억원, 유상증자 비율 50%가 75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준금액으로 설정.
• 단위입찰금액: [ ]억원 (입찰대금 [ ]억원당 1점 변동)
• 유상증자 비율이 50%이면 가중치를 100%로 하고, 유상증자 비율이 1% 증가시마다 0.1%의 가중치 부여
• 최저매각가 미만의 입찰시 무효처리
• 유상증자 비율 50% 미만일 경우 무효처리</td></tr>
<tr><td rowspan="4">회사채 발행 조건</td><td rowspan="2">이자율</td><td rowspan="2">2</td><td colspan="3">3.0% 이하</td><td colspan="2">3.0% 초과 6.0% 미만</td><td>6.0% 이상</td></tr>
<tr><td colspan="3">2점</td><td colspan="2">1점</td><td>0점</td></tr>
<tr><td rowspan="2">만기</td><td rowspan="2">2</td><td colspan="3">5년 이상</td><td colspan="2">2년 이상 5년 미만</td><td>2년 미만</td></tr>
<tr><td colspan="3">2점</td><td colspan="2">1점</td><td>0점</td></tr>
<tr><td colspan="2" rowspan="2">자금조달 증빙</td><td rowspan="2">6</td><td>100%</td><td>90%이상 100%미만</td><td>80%이상 90%미만</td><td>70%이상 80%미만</td><td>60%이상 70%미만</td><td>50%이상 60%미만</td><td>50% 미만</td></tr>
<tr><td>6점</td><td>5점</td><td>4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d>무효</td></tr>
<tr><td colspan="2" rowspan="2">주인수자의 재무건전성</td><td rowspan="2">5</td><td colspan="3">국내 동업계 평균부채비율 미만인 경우</td><td colspan="2">국내 동업계 평균부채비율 이상 1.5배 미만인 경우</td><td>국내 동업계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경우</td></tr>
<tr><td colspan="3">5점</td><td colspan="2">2.5점</td><td>1점</td></tr>
<tr><td colspan="2" rowspan="2">인수 후 경영능력</td><td rowspan="2">5</td><td colspan="3">인수 후 장기적 회사 경영계획이 세부평가 항목 중 4가지 이상 포함한 경우</td><td colspan="2">인수 후 장기적 회사 경영계획이 세부평가 항목 중 2가지 이상 4가지 미만 포함한 경우</td><td>인수 후 장기적 회사 경영계획이 세부평가 항목 중 2가지 미만 포함한 경우</td></tr>
<tr><td colspan="3">5점</td><td colspan="2">2.5점</td><td>1점</td></tr>
<tr><td colspan="2" rowspan="3">종업원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td><td rowspan="3">5</td><td colspan="3">고용승계를 5년 이상 보장한 경우</td><td colspan="2">고용승계를 4년 이상 5년 미만 보장한 경우</td><td>고용승계를 3년 이상 4년 미만 보장한 경우</td></tr>
<tr><td colspan="3">3점</td><td colspan="2">2점</td><td>1점</td></tr>
<tr><td colspan="5">구체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제시한 경우</td><td colspan="3">고용안정 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이 미흡한 경우</td></tr>
<tr><td colspan="2">합계</td><td>100 + α</td><td colspan="5">2점</td><td colspan="3">0점</td></tr>
</table>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상 무효사유

(1) 일반적인 무효사유

상기 평가기준 중 인수대금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상증자비율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 50%), 자금조달증빙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예, 50%), 종업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무효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2) 탄력적인 실무운용

다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무효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M&A 성사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인적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채무자의 노동조합이 너무 강력하여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M&A과정에서 이를 조건으로 걸 수도 있을 것이다(현대피앤씨 주식회사의 경우 M&A 추진 전에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전 직원의 희망퇴직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M&A를 진행).

마) 우선협상대상자 배제사유

단기적인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목적의 인수희망자는 배제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구체적 배제사유는 준칙 제241호 제17조 참조)

3) 인수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인수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매각규모에 따라 3~7인으로 구성하되, 관리인, 감사 또는 CRO, 매각주간사 담당자, 법률자문 담당자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4) 최저매각가격 및 단위입찰금액의 결정

일반적으로 입찰기일 2~3일 전에 최저매각가격과 단위입찰금액을 결정하는데, 구두로 결정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서 이를 결정하여 적은 금액을 밀봉하여 보관하였다가 인수제안서 제출 후에 개봉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인, 매각주간사 등 M&A 업무 관련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배점내용이나 최저매각가액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바. 인수제안서 제출 후 절차 진행

1) 인수제안서의 개봉

관리위원은 인수제안서가 접수되면 접수 마감 즉시 관리인과 매각주간사가 인수제안서를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주심판사와 주무관리위원 입회하에 밀봉된 인수제안서를 개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확인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관리위원은 제출된 인수제안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유효한 입찰이 있는지 여부와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자를 확인한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무분별한 인수제안서 제출을 막아 M&A 절차 악용을 방지하고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제안서 제출시 일정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인수제안서 개봉 전 입찰보증금의 입금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3) 평가결과 보고

위와 같은 인수제안서 개봉 및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수제안서 평가위원들은 미리 작성해 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관리인은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평가결과를 보고할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추어 적정

하게 평가하였는지 검토하고, 각 평가위원별 심사표 등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도 점검한다.

사. 유효한 입찰이 없을 경우 처리 방안

1) 무효사유가 보완 가능한 경우

임의적 무효사유로 정한 경우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한 후 무효처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유효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2) 무효사유가 보완 불가능한 경우

인수희망자가 제출한 인수제안서의 무효사유가 보완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법원에 보고한 후 매각주간사에서 이를 무효처리한다.

제출한 인수제안서가 없거나 전부 무효처리된 경우에 관리위원은 관리인과 매각주간사가 후속 M&A 절차 진행, 향후 M&A 추진 방향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절차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의 처리

접수된 인수제안서 심사과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인수대금의 규모가 큰지 → 유상증자 금액이 큰지 → 기타 비계량지표의 배점점수가 큰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예비협상대상자 선정

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각 인수제안서 제출자의 구체적인 인수대금 금액, 유상증자 비율 등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나. 양해각서 체결

1) 양해각서 내용 확정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리 배포한 양해각서 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인수대금 조정

- 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
- 인수대금 조정 절차 및 조정 기간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나) 이행보증금의 납입 및 처리방안

다) 정밀실사 기준 및 기간

라)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마) 양해각서 실효사유 및 해제사유

2) 이행보증금 납부 확인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위 이행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7.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가. 정밀실사

인수예정자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다.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는 실사기준일 현재 실사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가 매각주간사가 정한 실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인수대금 조정

1) 인수예정자의 인수대금 조정 요청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결과와 매각주간사가 작성한 실사보고서상 조정기준금액(보통은 자산총계에서 실사대상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차이가 양해각서상 인수대금 조정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인수예정자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수대금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정요청의 타당성 검토

가) 지도사항

관리위원은 인수예정자가 정밀실사 후 인수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항이 수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관리인 및 매각주간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매각주간사나 관리인이 M&A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조정 요청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 매각주간사 검토의견서 제출

인수예정자의 인수대금조정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은 매각공고 전에 자체실사를 주관한 매각주간사에게 인수예정자의 정밀실사결과와 매각주간사의 자체실사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인수예정자가 주장하는 인수대금 조정사항이 양해각서상 조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인수대금 조정시 고려사항

인수예정자가 실사기준일 이후의 자산, 부채의 변동사항을 가지고 인수대금 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회생절차상의 M&A에서는 일반 M&A와는 달리 부외부채나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 양해각서에 인수대금의 5% 한도 내에서 인수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수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객관적인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선에서 채권자들의 동의 가능성과 인가 후 M&A의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8. 계약금 납입 및 인수계약 체결

가. 계약금 납입

인수대금이 확정된 후 인수예정자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수대금의 약 10% 상당(기납입된 이행보증금 5% 포함)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PE 또는 해외투자자 등이 인수예정자인 경우 동 금액의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보증서 등으로 대체되는 사례도 있다.

나. 인수계약의 내용

인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최종인수대금 및 계약금에 관한 사항

- 인수대금 및 그 지급시기와 방법
- 인수대금 지급 조건
- 전체 인수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은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전액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
- 인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수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조항

2) 신주발행 및 인수, 회사채 인수에 관한 사항

3) 회생계획안 제출에 관한 사항

4) 인수대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

5) 인수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 자본감소, 유상증자, 사채 인수에 관한 내용
- 인수기획단의 파견
- 회생절차의 종결에 관한 내용
- (인수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8) 인수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내용
- 원칙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9. 인가 후 M&A에서의 회생계획변경과 그 준비과정

가.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

관리위원은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관리인이 변경회생계획안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변경회생계획안 작성시 변제재원은 매각대금에서 매각주간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경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M&A 절차에 깊이 관여한 매각주간사가 이를 보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변경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집회 준비

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적정한 기간을 두고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변경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여부 및 수행가능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다. 집회 전 인수대금 예치 확인

전체 인수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이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전액 예치되어야 하므로, 관리위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예치될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기한 내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수의계약에 의한 M&A

채무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희망자가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개매각절차에 의한 M&A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을 원하는 인수예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Stalking Horse 방식의 M&A를 권장한다.

다만, 이미 M&A를 시도하여 실패한 경우에는 매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의 지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원하는 자의 인수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의 담보금을 몰취조건부로 예치하도록 하기도 한다.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1. 매각절차의 간이 · 신속화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므로 신속성을 요한다.

가. 매각주간사 선정절차의 간소화

인가 전 M&A의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함에 있어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경우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회생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 실사절차 생략 가능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후 M&A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대금증액 규정의 필요성

인가 후 M&A의 경우 통상 인수대금 감액규정만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가 전 M&A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경제사정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야 M&A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인수희망자의 인수의지가 강력하여 인수대금의 증액요구에 응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입찰안내서 및 양해각서(MOU)상 대금증액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인은 인가 전 M&A 절차에서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은 영업양도

가. 개요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추진할 수 있다(예, 주식회사 한진해운).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지만(법 제62조 제4항), 만일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한다면 위 상법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62조 제3항).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이 채무자의 사업에 중요하지 아니한 일부이고 그 영업의 계속이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손실을 발생시켜 인가 전이라도 시급히 정리하는 것이 이익이 된

다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시기의 검토

관리인은 ① 채무자가 영위하고 있는 복수의 영업 중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실적이 양호한 영업에 경영을 집중하면서 그 이외의 영업을 매각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영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채무자는 해산 · 청산하는 쪽이 보다 많은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인가 전 영업양도를 검토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는 통상 그 신청 전후에 양수인 후보자가 존재하거나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 영업양도 계약시 유의사항

관리인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야 한다(법 제62조 제1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무효이다(법 제62조 제5항, 법 제61조 제3항).

관리인이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

관리인은 양수인 물색이나 영업양도 허가신청시 ① 양수인 후보자의 선정방법 ·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② 입찰조건에 가액을 하락시키는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법 제62조 제3항), 이를 위해서 관리인은 영업양도 추진시 미리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영업양도시 담보권 등의 처리

회생절차에서 인가 전에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인

이 회생담보권자와 교섭을 통하여 담보권의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사용할 금액과 담보권의 소멸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포함시켜 법원으로부터 영업양도의 허가를 받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을 변제함과 동시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도대상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업양도 허가가 있은 후 관리인이 그 취소를 신청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1. 기존 M&A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추진된 채무자에 대한 M&A 절차에 대해 법원이 개시 전 진행된 M&A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제시된 인수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M&A 절차를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존 M&A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부터 진행된 M&A가 공정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선정된 인수자 혹은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공개매각방식을 통한 인가 전 M&A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선정된 인수예정자의 우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래의 Stalking Horse 방식에 따른 M&A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 (Stalking Horse 방식의 M&A)

1. 개요

M&A 공고를 하기 전 적정한 인수조건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조건보다 더 좋은 인수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기 위하여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인수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Stalking Horse 방식의 M&A라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인수희망자에게는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최고가 인수희망자의 인수희망가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인수희망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보고

관리인은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준칙 제1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인수희망자에 대한 보호

가. 해약보상금(break-up fee) 및 보상금(topping fee)

관리인이 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경우, 인수희망자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이 M&A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인수를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수희망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으로 인수 불발시에는 입찰절차 내

인수희망자가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topping fee)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고 전 인수희망자의 선택권 부여

관리인이 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경우 공고 전 인수희망자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통한 인수자 선정절차에서 다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은 다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공고 전 인수희망자에게는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지 않고,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종전에 제시한 인수조건에 비해 채무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절차의 효율성 및 입찰참여자들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인수예정자 선정

새로운 인수예정자 선정절차에서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제시된 인수내용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할 수 있다.

제 14 장

관리인의 허가신청 · 보고 및 법원의 감독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되어 법원이 보전처분 결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과 개시결정(법 제61조 제1항)을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업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은 채무자나 관리인의 허가 신청서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잘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법원 허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또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93조). 따라서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은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영실태와 회생계획 수행상황을 점검 ·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그 동향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서면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회생회사나 관리인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허가하는 업무는 관리위원의 처리업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회생회사의 영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회생회사별로 정해지는 보전처분과 개시결정 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허가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회생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과 개시결정 직후 유의사항 전달 등을 통해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

한,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허가사항인지 몰라 문의해 오는 경우 내용을 잘 안내하여 관리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이 보전처분에서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이나 허가사항에 관한 결정에서 허가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법 제61조 제3항 본문)가 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인 해임사유(법 제83조 제2항 제2호), 나아가 형사처벌(법 제648조 제1항)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념하여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단 전자로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내용이나 증빙 미비가 발견되면 취하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해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관리인이 허가사항을 전자접수하기 전에 관리위원은 이메일 또는 대면으로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서 내용이나 증빙 미비로 허가신청이 불허가되거나 반려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한다.

허가사항은 법원 허가사항과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허가사항으로 나뉜다. 관리위원은 법원 허가사항의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결재를 하고, 관리위원 위임 허가사항의 경우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서 내용이나 증빙에 미비가 발견되면 관리위원은 채무자나 관리인에게 신청서를 취하하고 미비한 점을 보정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허가사항의 경우 관리위원은 확인결재를 함과 동시에 해당 문서에 공용부전지를 첨부하여 검토의견을 기재한다(공용부전지는 해당 사건을 조회하여 “전자소송기록뷰어”를 열고 해당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제2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1. 보전처분(개시결정 이전) 과정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서 검토를 거쳐 7일 이내 보전처분 결정(법 제43조 제2항)을 하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신청내용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도 있으며 보통 2~3일 이내 보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 발령되는 보전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2017. -. -.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 2. 부동산 · 자동차 · 중기 ·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원(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 4. 노무직 ·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회생회사는 위와 같은 보전처분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보전처분 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개시결정전 채무로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용된 금액 이상의 채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는 모두 법원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일정한 행위가 관리위원의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개시결정 후 허가사항과 구별된다.

2. 개시결정 이후 종결시까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법 제61조 제1항)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들은 대체로 채무자의 중요 결정사항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지출이 수반되는 법률행위 등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와 내용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허가 및 위임사항"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법원 허가사항과 관리위원에게 위임하는 허가사항을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주요 결정 내용은 아래 〈표14-1〉과 같다.

〈표 14-1〉 허가대상행위

구분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법원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사항
가	부동산 · 자동차 · 중기 ·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나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금 (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
다	금 (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
	제3자의 영업의 양수	○	
라	항목당 금 ( )원 이상의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제외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마	금 (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구분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법원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사항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사	어음 · 수표계좌의 설정, 어음 · 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해지)	○	
자	소송행위(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 · 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		○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단 판결의 경우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허가 제외하고 보고로 갈음함)	○	
차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	
카	권리의 포기	○	
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하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너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신청	○	

제3절 허가신청 관련 지도

1. 사전 허가 신청하도록 지도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및 허가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허가 사항 중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의 경우 가급적 그 기한의 1주일 전에, 늦어도 3일 전에는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회생채권 조기변제(법 제132조)나 신규자금 차입(법 제179조 제2항)과 같이 허가 이전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허가신청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 대상 행위에 관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자제출 허가신청의 원칙

2014. 4. 28. 회생파산 전자소송이 시행되면서 허가는 관리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허가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한 다음 관리위원이나 법원에서 허가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리인이 대면 또는 전화에 의하여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항상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허가결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관리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3. 허가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지도

- 법원 또는 관리위원 각 허가 위임 사항 구분

- 신청서에 관리인의 신고 인감 날인 및 구조조정담당임원(인가 후에는 감사)의 확인 서명
- 허가신청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 · 간결하게 작성하여 신청서로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대금지급의 경우 지급 사유 및 발생일자 기재[지급대상 금액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채권발생 일자(거래일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아님)를 명확하게 기재]
- 허가 받을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량, 단가 등)
- 지급 상대방을 명확하게 기재(법인인 경우 "(주)00000",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성명(상호)" 형식으로 기재)
- 시재보유액을 기재하게 하여 지급재원 유무 확인(다만, 시재보유액이 부족한 경우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예정액이 있어야 하며, 수입처, 수입일자, 수입금액을 명시)
-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첨부
  - 내부 품의서 사본(신청 내용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또는 구매신청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 인보이스 등)
  - 계약서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 부동산, 차량 등 등기 등록 대상 자산과 관련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해당 증빙 서류
  - 원자재, 차량, 기타 자산과 구매 및 매각과 관련된 경우 비교견적서
  - 급여 지급 신청시에는 급여대장
  - 거래기관이 관련된 경우 해당기관의 문서 등

4. 허가신청 항목 및 신청 사례

가. 부동산 · 자동차 등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일체 처분행위

1) 설명

법원 허가사항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익물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임대를 하는 등의 모든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아닌 재산'의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사항에 해당함에 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의 처분행위는 그 시가에 상관없이 모두 허가사항에 해당함을 지도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실무상 회생계획에서 자산을 매각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매각예정자산이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시기나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인이 회생계획이나 채무자의 자금수지계획, 향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는지를 점검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등기 등록 자산의 매각은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공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모가 작은 부동산이나 개인 주택은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정매매가격의 파악을 위해 재감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매각절차(공매 또는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실제 매각 추진 후 계약 단계에서도 매수인의 선정, 매각가격, 대금수령 및 채권변제에 대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 주의한다. 공매절차에서 유찰된 경우에도 재공매를 통해 매각을 할 계획이라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 주식과 같이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미리 허가받은 매도금액에 구애되어 매각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장 및 비업무용 자산(차량 등) 공개 매각[양식1-1]
- 비업무용자산(주식) 매각허가 신청[양식1-2]

- 아파트 공개 매각 실시 결과보고 및 재공개 매각
- 부동산 일반 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양식 1-3], [양식1-4]
- 노후 렌터카 매각
- 차량 폐차
- 아파트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토지잔대금(정산금)을 납부한 다음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회사 앞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는 경우
- 해저통신국 유휴 공간 임대차계약 체결(임대)
- 회사 소유 상가의 임대

나. 등기 · 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1)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 )만 원[6]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일정한 시가 이상이면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6) 실무상 채무자의 금원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준칙 212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을 제정하여 실무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이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래 〈표 14-2〉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14-2〉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연간 매출액(원)	기준액(원)
100억 이하	5,000,000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10,000,000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20,000,000
1,000억 초과 ~ 5,000억 이하	30,000,000
5,000억 초과	50,000,000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그 시가와 상관없이 허가가 불필요하다. 다만 허가가 불필요하였던 처분행위에 관하여도 매월 월간보고서로 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통상적인 가격으로 ( )만 원 이상의 의류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반품 받은 의류를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거나, 의류 제조용 기계 설비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 금액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해진 공사현장 기자재, 컴퓨터 등의 매각
- 건설회사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출자 및 현금 또는 예금의 담보 제공
- 사용하지 않은 기계기구 매각
- 불용 재고자산(제품, 판매기간이 지난 의류 등) 일괄 매각 허가 신청

다. 재산 양수 관련

1) 금 ( )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단, 제3자의 영업의 양수는 제외)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실무상 기준금액은 채무자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재 구매[양식1-5]
- 판매를 위한 상품 구매
- 기계장치, 제조용 장비 구매(등기·등록 재산 제외)
- 채권의 양수

2) 제3자의 영업의 양수

법원 허가사항이다. 영업양수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 압출 사업부 인수
- 태양광 발전 사업부 인수

라. 금원 지출 관련

1) 항목당 ( )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지출(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변제 제외)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를 제외하고는, 항목당 기준금액 이상의 금원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위 다.항 재산양수 관련의 설명과 같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를 묻지 않고 법원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금지출에 관한 허가사항의 대부분을 관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허가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월 월간보고서로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항목당 기준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분할하여 항목당 지출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것처럼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원 지출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하여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금원지출 허가 신청서에는 세금계산서(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또는 대금청구서로 대체)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양식1-6]
- 원자재 구매 및 대금 지급[양식1-5]
- 임대료 지급 허가 신청[양식1-7]
- 리스료 납부
- 개발 금형비 대금 지급
- 통신회선 사용료 지급
- 외주가공비, 용역비 지급
- 공사대금 지급
- 선박 용선료, 유류비 지급
- 코스관리비 지급

2)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

회생계획의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묻지 않고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상 관리인들이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공익채권 변제허가만을 받은 후 회생채권을 공익채권과 함께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를 변제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법 제132조). 회생채권에 대한 인가 전 변제는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그 허가를 할 때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무상 관리인이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경우는 법원이 별도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관리인들이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이미 회생계획에 그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변제자금이 부족하여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회생계획에는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안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의 내역,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의 연체이자의 적용 여부, 미변제 사유 및 향후의 대책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회생채권 조기변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채권 조기 변제(인가 전) 허가 [양식1-8]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양식1-9]
- 소액 회생채권 인가 전 조기 변제
  -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액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과 같이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건설회사인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과 같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상거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공급하는 해외업체여서, 회생채권의 미변제를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면 단기간 안에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전대차계약 재계약 및 회생채권 변제
- 회생채권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7) 회생계획에는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자금으로 회생채권을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체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한 사례가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다.

마. ( )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 매매 · 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 · 의무부담행위

1)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기준금액은 계약기간 중 지출될 예정인 계약 총액으로, 그 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임차를 가리키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위 가.항에 정해진 법원 허가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상 채무자의 영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예컨대, 해운회사의 선박임차 또는 용선계약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관리위원과 협의를 거쳐 법원 허가사항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2)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원의 신규채용 계약체결 [양식1-14]
- 본사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임차)
- 창고 임차계약 체결(임차)
- 선불시스템 서버장비 관련 유지보수 업무 위임재계약 체결(위임)
- IDC 보안 서비스 업무 위임계약 체결(위임)
- 서울-부산 간 인터넷 백본망 용량증설을 위한 장비구매계약 체결(매매)
- 수도권 기지국 회선 21개소 구축공사계약 체결(도급)
- 퇴직자 충원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고용)
- 정비고 신축공사 계약 체결(도급)
- 차량 위수탁 계약 체결
- 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1) 설명

법원 허가사항이다.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는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운영자금 등을 차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의사항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는 법원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 자금을 빌려야 한다.

실무상 허가 없이 관리인, 대표이사 개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 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차재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그것이 차재에 해당하는지, 매매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관리위원에게 문의하여 허가대상 행위인지를 구별하도록 한다.

3)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채 발행 허가 신청[양식1-10]
-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양식1-11]
- 회생계획의 변제 대상 채권 변제를 위한 자금 일시 차입
- 다른 회사에서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는 행위
- 친척 또는 친구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사. 어음 · 수표계좌의 설정, 어음 · 수표용지의 수령 · 발행행위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어음 · 수표 계좌를 설정하고, 어음 · 수표 용지를 수령하는 행위, 어음 ·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라는 특성상 실제로 어음 ·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해지

1) 설명

법원 허가사항이다. 해제 또는 해지가 아니라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법원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는데, 확답을 하는 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연장결정을 받아야 한다.

2)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박 용선(○○지역 도로공사) 계약 해지
- 미이행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양식1-12]
- 회생절차 개시 이전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건이 불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자. 소송행위

1) 설명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법원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다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 · 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분기보고서를 통하여 그 가압류 · 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 · 가처분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허가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편 소송행위 중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은 법원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

로, 대부분의 소송행위는 법원 허가사항이 된다.

2)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
- 사용료 청구의 소 제기
- 렌터카 사용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 상대방과 화해
- 임의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 소송 결과보고 및 수용 허가 신청
- 1심 소송결과 보고 및 항소 제기 허가 신청[양식1-13]
- 채권 가압류 및 체납처분 취소명령 허가 신청[양식1-14]
- 소송 수계 허가 신청
- 부인권 소송
- 화해결정에 대한 수용 또는 이의제기 허가 신청

3) 유의사항

관리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다.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소의 제기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각종 소를 제기하는 것과 그 소송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모두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소송대리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하는데, 그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구두로 협의를 한 후, 법원에 미리 성공보수금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대리인의 선임 허가신청 - 성공보수금 과다를 이유로 한 불허가 - 성공보수금 약정을 수정한 소송대리인 선임 재허가신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조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서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의 판단에 비추어 그 조정 내용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정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조정을 권유한 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기일까지 그 조정 내용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겠다고 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그에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진술하여야 한다.

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은 법원 허가사항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그 결정 내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의기간 안에 이의 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의기간을 경과시켜 버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이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하여야 한다.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으면 이에 대해 이의를 하든, 이의를 하지 않든 그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이의기간이 2주인 경우 적어도 이의기간 만료 1주 전에는 법원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의기간 경과 직전에서야 비로소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에게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라) 상소의 제기

관리인이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법원의 허가 없이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소의 제기 여부 결정 역시 법원 허가사항이므로, 상소제기기간의 말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전에 법원에 항소제기 여부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차. 인사 및 보수결정

1) 과장급 이상(임원 제외)의 인사 및 보수결정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원 승진 인사
- 승진, 호봉승급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2)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가) 설명

법원 허가사항이다.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에는 비등기임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임원의 인사 중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후에 하는 사항이다.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법 제203조 제5항). 따라서 채무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 법원과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재신임 여부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수의 변동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통상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도 회생계획에 정하고 있다.

나)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규 임원 해임 및 선임 인사[양식1-16]
- 임원 급여 조정 허가 신청[양식1-17]
- 기술본부장 보직 인사
- 영업본부장 사임으로 인하여 상무이사인 영업본부장 신규 선임
- 임원 퇴직금 지급

카. 권리의 포기

1) 유의사항

법원 허가사항이다. 채무자의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 외에서도 합의를 통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체된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되 기한을 나누어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연체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기로 하되 당초 원리금 중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기로 하는 경우 등은 모두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출처로부터 8억 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는데 매출처가 균등분할상환계획과 함께 이미 발생한 이자의 면제를 요청하였고, 관리인은 매출처의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권 원금 8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자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경우

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법원 허가사항이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담보물의 범위 및 가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추후 채권자의 담보권에 관한 증빙서류 추가 확인 및 추가감정 등을 통해 담보물 가치를 확정한 후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채권 증빙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채권 증빙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법원의 허가사항이다.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리스 조건 변경 재계약

하.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법원의 허가사항이다.

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법원의 허가사항이다. 희망퇴직의 경우를 포함한다.

너. 감자 · 신주발행 · 합병 등

법원 허가사항이다.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 해산 · 조직변경이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법 제55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지사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도 시행할 수 없는데, 이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 감소[양식1-18]
-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및 자본금 변경[양식1-18]
- 회생계획 인가 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 회생계획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2) 합병 · 해산 ·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자의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주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직후에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지며, 구조조정이나 사업부문의 변동 등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필요도 없이 퇴직하였거나 퇴직할 임원이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남아 채무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설명

신규투자, 관청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이나 벌금의 납부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무는 관리위원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사항들이 관리위원 허가사항으로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임금교섭행위

관리인의 임금교섭행위는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임금의 지급수준은 채무자의 수익성과 자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종전 실무사례를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종업원들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합의한 뒤 법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준칙 254호 '단체협약 체결'에서는 관리인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에는 인

건비의 지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임금의 인상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건비의 지급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임금인상을 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달성 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함이 타당하다.

다)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 개최[양식1-19]
- 회생채권자 등 목록 변경 · 정정
- 회사 본점 이전
- 취업규칙 개정, 단체협약 변경 및 임금 협약 체결(연봉제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도입,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중간정산 실시
-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체결
- 일본 합작 법인 설립

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법원 허가사항이다. 대규모 회사에 있어서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 지출이 수반되면서 단순 반복되는 허가 대상 행위를 특정하고, 각 허가 대상 행위별로 한도 금액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한 후 허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양식1-20]. 서울회생법원은 준칙 제212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기준”에서 포괄허가 대상행위 등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대상 행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직원 급여, 연차수당 및 퇴직정산금 대금 지급
- 사무실, 공장의 임차료, 관리비 지급
- 하도급 · 용역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 지급
- 공사수급계약(신규, 변경)체결 및 보증서 등 제공 행위
- 아파트 분양 및 분양권 전매계약 동의
- 발주처 사업비 인출 동의

2) 제외 대상 행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는 법원 허가사항으로 포괄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유의사항

포괄허가대상행위는 구조조정담당임원 또는 감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구조조정담당임원 또는 감사의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포괄허가에 의하여 지출한 자금내역 및 체결한 계약서는 다음 달 월간보고서에 포괄허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이행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포괄허가를 초과하여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5.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가.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초마다 전년도의 접대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신년의 접대비 예산을 편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대비 예산 편성지침은 아래 〈표 14-3〉과 같다.

〈표 14-3〉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인별(임원별 · 부서별), 비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나.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관리인은 접대비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임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접대비 사용방법은 법인카드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할 경우 적정한 사전 내지 사후 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다.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접대비 사용실적은 채무자의 감사(감사가 없는 회생회사는 관리인)가 확인하고, 관리인은 법원에 그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은 아래<표 14-4>와 같다.

〈표 14-4〉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 매분기 보고서 제출시 임원별 · 부서별 사용실적은 따로 항을 만들어 보고한다. - 접대비와 구별되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은 따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6.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검토

가. 직원 급여(임원 제외) 지급 허가신청

- 급여 지급에 대한 허가사항은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 허가사

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의 급여는 일단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더라도 처리하는 업무의 실질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지급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 허가신청서에는 급여지급 대상기간과 지급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 신청서의 지급 명세에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인원수 및 금액(총급여액, 공제액, 실지급액)의 기재여부를 확인한다.
- 전월과 금월의 급여 지급액을 비교하면서 급여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차이의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 급여지급 전 · 후의 채무자의 자금보유액을 기재하여 지급자금 확보여부를 확인한다[양식 1-6].

나. 직원 채용 허가신청

- 직원 채용에 대한 허가사항은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 직원 채용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한다.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최소화함이 타당하나, 회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양식1-15].
- 신규채용 예정 직원의 성명, 근무예정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봉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이력서와 급여수준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퇴사직원 없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이나 조사보고서상의 인건비 한도금액 이내인지 확인한다.

다.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 원자재 구입 허가사항 역시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 자재 구매업무(업체선정 및 구입가격)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매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비교 견적에 의해 대상 업체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양식1-5].
-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독과점 품목, 발주처에서 대상업체 지정, 구매조건 유리 등) 기재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토한다.
- 구입대상 자재비용의 발생 시기 또는 기간을 명시하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 각종 계약서 등) 첨부여부를 확인한다.

라.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는 법원 허가사항이다.
- 차재는 법원 허가사항이면서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므로(법 제179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2호), 그러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지도한다[양식1-11].
- 신청서에는 차입금액, 용도, 이자율, 상환방법을 상세히 기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와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위한 공익채권자 명부를 확인한다.
- 회생절차에서 차입금은 최우선 변제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하는 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여처로부터 각서를 받아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마.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 통상 회생계획에는 회생계획 인가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 변경, 임원 퇴임 및 신규임원 선임,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즉시 위 사항들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모두 법원 허가사항에 해당한다[양식1-21].
- 회생계획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후 50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감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을 신속히 마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바.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조사기간 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별조사기일에서 시 · 부인을 한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하여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거칠 수 없거나, 증빙자료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이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를 철회하여 이의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양식1-22].
- 채무자의 이의철회는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한다.
- 이의철회 및 정정허가신청시에는 이의철회 사유 기재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첨부여부를 확인한다.

제4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1. 개요

법원과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영실태와 회생계획 수행상황을 점검 ·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그 동향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서면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한편 관리인은 위와 같이 법원이 보고할 사항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보고서 제출지도 및 점검

가. 관리인이 제출해야할 보고서

1)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보고서

실무상 회생계획 수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로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2/4분기보고서는 제목을 '반기보고서'로 붙이고, 4/4분기보고서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단, 매 분기 말의 월간보고서(3, 6, 9, 12월의 월간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관리위원은 보고서 점검 후 검토의견을 법원에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제출할 보고서의 내용과 제출요령을 정한 준칙 제213호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한 준칙 제252호 '채무자의 자회사 현황보

고'를 제정하여 채무자의 자회사 현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기타 주요사항 발생시 보고할 사항

이러한 보고로는 회생채권의 소멸이나 변동에 관한 보고,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사임 보고(사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의 결과 보고 등이 있는데, 종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항에 대한 결과나 회생계획 수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나. 월간보고서 제출지도 및 점검

1) 제출지도

관리인은 월간보고서를 익월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반회생사건은 익월 15일까지 제출). 관리위원은 월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월간보고서 작성시 관리위원의 지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입금실적과 자금수입의 구분

'매출실적과 입금실적'에 있는 '입금실적'은 매출액 중 입금된 금액을 기재하고, '자금수지표'에 있는 '수입'은 영업외수익 등을 포함한 전체 자금수입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똑같은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금수지표'에서는 수입내역을 매출채권 회수금액과 영업외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매출실적과 입금실적'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자금수지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한다. 실무상 관리인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한다.

다) 받을 어음

'받을 어음'에 대하여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및 '자금수지

표'에 반영하지 않고(다만 자금수지표에 주석으로 별도 표기한다), 실제로 입금된 경우에 비로소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중 '입금실적'에, '자금수지표' 중 '수입금액'에 반영한다.

라) 12월 월간보고서의 사업계획서 및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

12월 월간보고서에 '사업계획서'와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월별 매출목표 및 자금수지계획과 분기별 손익목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회생계획상 당해 연도 변제분에 대한 이행상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허가사항 이행 여부 기재

월간보고서에는 당월 허가사항내역 및 허가금액의 당월 지출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허가 시점과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월간보고서만으로는 당초 허가된 금액과 그에 기한 실제 지출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물론 그 지출금액이 언제 허가된 금액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인은 월간보고서에 기재된 '허가사항 지출내역'에서, ① 그 표 우측 말미에 '비고'란을 두어 그곳에 당해 지출금액에 관한 '허가일자, 문서번호, 허가내용, 허가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② 당초 허가된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그 원인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그 차액을 향후 지출할 예정이라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종전에 제출된 월간보고서와의 불일치

월간보고서 중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자금수지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이 차례로 모두 기재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실무상 종전에 제출된 월간보고서와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자금수지표'의 기재사항이 다르게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제출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 회생계획과 실적의 비교

인가 후 회사의 경우 매출, 입금, 이월잔액 등 항목에서 자체 목표가 아닌 회생계획 대비 달성 정도를 표시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월간보고서를 통한 주요 점검사항

- 매월 20일까지 월말보고서가 적정한 형식과 내용으로 제출되는지를 점검
- 매출액, 매출입금, 자금수지 등 회생계획과 비교 및 시재의 적정성 점검
-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지출금액과 허가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
- 지출내역의 합계는 자금수지 지출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예금현금 현황은 거래통장 잔액 합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점검
- 지출내역은 통장 거래내역(필요시 현금출납부 거래내역 포함)과 일치하는지 여부
- 공익채권 발생규모 및 추이 점검, 매출채권 보유액(실제 회수가능액) 점검
-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확인(필요시 현금출납부 또는 현금계정 제출 받음)
- 일반회생의 경우 자금수지상 월간 적립액이 연간변제 예정액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출을 조절하도록 지도함

3) 검토의견 작성

관리위원은 제출된 월간보고서에 대해 특이사항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기재한다.

- 매출액의 급변, 자금수지의 급변, 시재상황
- 법률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회생계획 수행 여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경영상 중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

다. 분기보고서 제출지도 및 점검

1) 제출지도

관리인은 분기보고서를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반기보고서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관리위원은 분기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분기보고서 작성시 관리위원의 지도사

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손익계산서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손익계산서에도 '회생계획' 및 '회생계획 대비 달성률'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기재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회생계획 수행상황 등

실적과 회생계획상의 예정치 사이에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석을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 중 전기에 비하여 큰 변동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도 각기 주석을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 접대비 사용현황

분기보고서에는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액), 실제 지출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월간보고서와의 차이점

월간보고서와 달리, 분기보고서에는 주요 부문(품목)별 매출실적표, 주요 부문(품목)별 생산실적표,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대금 결제현황표(수출부문이 있는 경우), 수주실적표(건설, 조선 등 주문생산부문이 있는 경우), 분기 대차대조표, 분기 손익계산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변제현황표, 공익채권 현황표, 접대비 사용현황표, 사업현장명세표(건설업자의 경우)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

반기보고서에는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연간보고서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연간보고서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작성

관리위원은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사항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기재한다.
- 법률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회생계획 수행상황에 따라 법원 대면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경영상 중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
- 분기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 매출액, 영업이익, 보유시재
-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 점검 : 총 채권액, 금년 변제예정액, 이행 지체 중인 채권, 자산매각 등 진행 상황
-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점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의견서에 대한 점검

라.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1) 제출지도

관리인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역시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연간보고서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연간보고서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명시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회사 현황 및 연간 보고서를 통한 관리위원의 점검 및 지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사현황이 회생계획 수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적정성 여부 점검
- 회계감사 실시여부 및 감사의견 점검
- 연간 경영실적의 적정성 점검
- 회생계획 수행 실적 및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점검
- 기타 채무자 회생과 관련한 주요사항 점검 보고

2) 검토의견 작성

관리위원은 주로 회생계획 수행현황을 파악하여 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마. 허위보고의 파악 및 지도

관리위원은 주요 허위보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허위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실무상 관리인이 법원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발생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법원의 허가 없이 이미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마치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회생채권 변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채무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실제 사용 명목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변제한 후, 법원에는 변제허가내용에 따라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

이러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절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1. 관리인의 민 · 형사책임

가. 개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의 각종 허가신청과 보고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므로, 관리인은 그 결정에 맞추어 각종 허가신청업무와 보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등의 목록과 시부인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책무를 부담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후부터 종료시까지 법원이 명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각종 책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각종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82조).

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① 관리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재산이 일실된 경우, ②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시 · 부인을 잘못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다.

다. 형사책임

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45조 제1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48조 제1항). 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48조 제2항).

채권자협의회의 자료 제공 청구에 대하여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49조 제1호).

2. 관리인에 대한 감독

법원의 관리인에 대한 감독권은 ① 관리인의 해임, ② 관리인의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 ③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실시, ④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실시, ⑤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등을 통하여 행사된다.

가. 관리인 해임

법원은 관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 심문절차를 거쳐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법 제83조 제2항).

관리인은 법원의 해임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법 제83조 제4항), 일단 해임결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한다. 관리인의 해임사유는 아래 〈표 14-5〉와 같다.

〈표 14-5〉 관리인의 해임사유

해임사유	상세내용 · 예시
제7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이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관리인 선임 후 발견된 때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 관리인이 회생절차 진행 도중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특정인의 편의를 보아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때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치중하는 경우 - 관리인이 회생계획 수립이나 그 수행 가능성 검토와 관련하여 조사위원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위원 보수 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작성 ·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 합리적 이유 없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위 기재에 상당할 정도의 임무 해태가 있는 경우

나. 법원 선임 감사를 통한 감독

1) 감사의견서 검토

감사는 관리인의 분기보고서 제출시 별도로 감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의견서에는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하고, 특히 ①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② 당해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③ 자회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감사의견서 점검 후 특이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한다.

- 회계감사 실시 허가사항 및 감사의견 점검
- 상법 제413조상의 보고사항 여부 점검
- 감사실적 지적사항 여부 점검

- 주요 경영실적 점검
- 회생계획 이행가능성(변제현황) 점검

2) 자금수지상황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관리위원은 감사가 보고하는 자금수지상황 보고서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재의 변동상황과 그 사유, 회사가 적정한 시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감사가 회사의 자금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만약 자금수지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3) 법원 대면보고에 대한 지도

감사는 ①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 ② 채무자 내부의 특이한 사정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③ 채무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사항, ④ 급속을 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통상적인 체계를 거쳐서 보고하기에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한 감독

1) 회계감사계약 체결 허가신청

회생절차가 개시된 모든 채무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적절하고 책임 있는 외부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영세한 소규모 법인인 경우 등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외감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

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외부감사인을 지정 요청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지정된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채무자가 외감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외부감사인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외부감사인의 서약서를 첨부하고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계약의 내용, 최근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회계법인내역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외부회계감사계약 체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자격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만한 충분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3년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조사위원직을 수행하였던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동일한 외부감사인과는 3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간 연속하여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반기 또는 기말마다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관리인이 제출하는 반기 · 연간보고서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라.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허가사항 검토

채권자협의회는 ①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의회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및 보수를 결정한다.

3. 관리인에 대한 평정

관리위원은 준칙 제215호(관리인 평정)에 따라 매년 12월 말에 관리인으로부터 회사 경영현황 자료를 받은 후 관리인에 대한 관리위원의 평가의견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관리위원은 회사현황 보고자료와 기존에 제출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보고서, 각종 허가업무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관리인 평정을 한다. 평정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생계획상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변제 이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 매각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법원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허가신청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법적 절차나 내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제 15 장

회생절차의 종결 · 폐지

제1절 개요 및 관리위원의 주안점

1. 개요

가.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83조 제1항). 관리인이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거나 M&A 성공으로 변제계획을 일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그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조기에 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

나. 폐지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로 구분된다. 법원이 인가 전 폐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은 보통 ①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제1차 조사보고서나 수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금유지능력이 결여되고 신규자금 차입에 실패하여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회생계획 인가 후의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실무상 관리인은 법원에 폐지요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 준칙 제251호

서울회생법원은 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게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생절차 종결에 관한 실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관리위원의 주안점

가. 조기종결 지도

1) 조기종결의 필요성

대부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신규자금 차입 및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 현저한 곤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다른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2) 패스트트랙에 따른 회생절차 조기종결

법원은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의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의 하나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이다. 과거에는 M&A를 통해 제3자가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고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경우 외에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다면 나머지 회생계획 수행에 장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통해 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3) 조기종결을 위한 관리인 지도

관리인은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를 잘 숙지하고 변제자원의 마련 등 조기종결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위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회생절차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종결이 가능하도록 관리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회생계획 수행현황 점검

관리인의 회생채권 변제허가 신청시 회생절차 종결 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후 법원과 협의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법원에서 종결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월간보고서나 수행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변제이행현황이 지극히 부진하거나 영업상황이 부진하여 정상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지 여부에 대해 법원과 협의한다.

제2절 회생절차 종결

1. 종결의 요건

가. 채무자회생법상 종결의 요건

1)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을 것

2)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나. 종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시 고려사항

회생계획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함에 있어 채무자가 변제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장차 나머지 회생계획의 수행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였거나 채무자의 매출실적이나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 담보물이 처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2. 종결을 위한 준비

가. 조기변제 지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것이 종결의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관리위원은 채무자가 신속하게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12장 제3절 3. '회생채권 등의 변제' 참조.

나. 조기종결을 위한 자료제출요청

1) 종결신청서 초안 검토

관리위원은 종결신청서를 안내하여 종결신청서 초안을 메일로 제출받아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검토한다.

2) 종결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종결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지도한다.

가) 채무자의 일반 현황

채무자의 개요, 회생절차 진행경과, 회생계획 주요 요지(채권별, 총시인액, 총변제액,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 연도별 회생계획 이행 현황

나)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판단에 관한 자료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 변제 현황 및 변제 가능성, 재무상태(자산, 부채 현황), 영업실적(매출, 영업이익, 자금수지 등), 채무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내 · 외부적 요인 유무, 회생절차 종결시 기대되는 이익, 채권자 보호방안(채권자 협의체 구성 등)

다) 기타

진행 중인 소송, 부인의 청구 여부, 담보물 매각 계획 등

다. 관리인의 법원 보고 지도

1) 법원 면담 준비

관리인은 종결을 위한 준비상황이나 종결신청서 제출 전에 종결 여부를 검토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관리위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이 종결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과 협의하도록 지도한다.

2) 법원 보고사항 점검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보고할 때 법원이 종결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점검한다.

가) 회사현황보고 : 인가된 회생계획 대비 매출 및 영업수익 달성률 등

나) 회생계획 수행 현황 내지 구체적인 조기변제 계획

다) 종결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 유무

라) 종결신청서 초안

라. 법원 보고 후 관리인 안내사항

관리위원은 아래의 사항을 관리인에게 안내한다.

1) 종결신청서 제출

- 법원 면담 결과 종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신청서의 내용에는 법에서 정한 종결사유의 긍정요소들에 대한 실적내용을 기술하고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지도한다.

2) 채권자협의체 구성

- 필요한 경우 종결 후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채권자협의체 구성을 지도한다.
- 채권자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들의 종결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는 서면

을 제출하도록 한다.

- 다만 채권자협의체 구성은 종결의 필요요건은 아니다.

3) 관리인 퇴직금 · 특별보상금 지급 신청

-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절차의 성공적 졸업을 의미하므로 실무상 관리인에게 퇴직금 ·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의 재직기간, 경영성과 또는 M&A 성과, 채무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신청을 하도록 지도한다.

3. 종결에 대한 의견서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법 제257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은 종결결정 전 종결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위원은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다[양식 2-7].

법인사건의 경우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전자소송기록에 등재하도록 한다.

4.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종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 수행하던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이 회사로 복귀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변제를 지체하면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일반회생 사건에서는 권리변경 채권의 경우 잔여채권을 모두 변제했을 때 면제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주지시켜 수행의지를 갖도록 지도한다.

5. 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회생절차종결 후 회사의 감독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체 구성 및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자협의체는 당해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를 감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채권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체 구성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으로 하되,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그 구성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을 권고한 경우에도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은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6.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절차 안내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므로, 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관리인 계산보고서는 관리인과 대표이사(종결 후)의 인수인계서에 해당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제3절 회생절차 폐지

1. 인가 전 폐지

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어 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관리인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조사보고서에 대한 관리인의 의견이 조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경우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위 관리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신규 자금 투입, 자산매각 또는 인가 전 M&A를 통하여 청산가치가 보다 큰 금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수행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실무상 회생계획안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지는 않는다.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회생계획안을 배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이 법률규정에 반하거나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에서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지정된 경우라면 집회기일도 취소한다.

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가 폐지됨은 당연하다.

마. 가결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정해진 가결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위원은 가결기간 안에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인에게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도를 하고, 가결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기간 만료 전 연장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인가 후 폐지

가.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인가 후 폐지 사유는 주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인가 후 폐지를 위한 준비

인가 후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여 관리인의 폐지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회생계획 수행이 더 이상 어려워 보이는 경우 법원과 협의하여 관리인 면담을 준비하여 방향이 결정되도록 한다.

장기간 보고서 미제출, 이행지체, 연락두절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나 폐지여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 등 후속 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주로 일반회생 채무자 해당). 연락이 두절되거나 통화를 회피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청 당시 실무자들을 통하여 연락 및 설명을 부탁한다.

3.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바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의 취하, 즉시항고장 각하결정, 항고기각 결정의 확정 등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폐지공고 후 폐지결정 확정시(2주)까지는 제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지도한다.

4. 폐지에 대한 의견서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법 제257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은 폐지결정 전 폐지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위원은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다[양식 2-8].

법인사건의 경우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전자소송기록에 등재하도록 한다.

5.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절차 안내

가. 관리인 계산보고 안내

회생절차 폐지로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므로, 관리인은 지체 없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나. 회생절차폐지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6조 제1항),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법 제6조 제2항).

1)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전 파산관재인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한다. 관리위원은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다.

2) 파산선고기일 출석 안내

관리위원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예정된 파산선고일 며칠 전에 파산선고일정을 안내한다.

제 16 장

간이회생절차

1. 간이회생절차의 내용

가. 간이회생제도의 취지 및 회생절차와의 관계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99%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법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다.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로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293조의3).

나.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준칙

서울회생법원은 간이회생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준칙 제261호 '간이조사위원 선임 및 평정', 준칙 제262호 '간이회생사건 구조조정담당임원(CR○)'을 제정하여 간이회생사건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적용대상 기업

1) 소액영업소득자의 의미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법 제293조의2 제2호),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금액은 30억 원이다(시행령 제15조의3).

2) 소액영업소득자의 판단기준

소액영업소득자를 판단할 때 공익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개시신청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가. 인가요건 완화

현행 회생제도의 가결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동의하고 의결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법 제293조의 8).

나. 관리인불선임 원칙

간이회생사건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조사

간이조사위원은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과 별도로 간이조사위원 적임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적임자에서 임명한다. 간이조사위원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 및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생략할 수 없다.

간이조사위원은 기존의 전형적인 조사방법들(회계장부 검토, 문서열람, 자산실사,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외부자료 검색, 추세 분석, 통계자료 분석 등) 중 채무자의 업

종 및 영업 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다.

라.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마.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로 인한 간이회생절차 폐지

간이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러한 경우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속행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인에게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 간이회생절차 운영상의 특징

가.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진행

대표자 심문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을 이용한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되,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관계인 집회의 대체절차로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적극적 활용

1)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의 필요성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 법률상관리인을 견제하거나 감독할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규모가 영세하여 회생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없는 소기업인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각종 허가사항 신청서 작성 등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생절차에 전문성을 가지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 간이회생사건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선정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간이회생사건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자를 면접을 거쳐 선정하지 아니하고, 미리 확보해 놓은, 감사 업무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경륜이 있는 사람 중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다.

3)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위촉 및 업무

관리위원은 법원이 선정한 구조조정담당임원을 관리인이 위촉하도록 지도한다. 간이회생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부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때까지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하여금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채권자협의회의 원칙적 불구성

간이회생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신속한 종결

소액영업소득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기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록 1

관리인 허가신청서 양식(예시)

[양식1-1]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비업무용자산(차량) 매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계획상 제1차 연도(20○○년)에 변제하기로 한 조세채권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 소유의 비업무용 자산인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 허가 신청 비영업자산(차량) 및 매각 금액

대상	차종	차량 현황		금번 매각			비고
		수량	장부가액	매각시기	수량	매각금액	
비영업용 차량	벤츠 E200						
비영업용 차량	BMW						

2. 매각계약 체결 업체 : AA 엔카

가.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등재된 AA엔카 및 BB자동차, CCC코리아 중고몰 2개 업체로부터 차량매입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고의 금액을 제시한 SK엔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나. 차량매입 견적서 비교

구분	AA엔카	BB자동차	CCC코리아
매수 희망 금액			
기타 조건			

3. 매각일자 : 법원허가 후 즉시

4. 매각대금 사용 계획

구분	금액	비고
본건 매각 금액		
매각 수수료		본건 매각에는 수수료가 없음
허가받은 조세채권 변제		기 허가 받은 조세채권 변제
변제 후 잔액		잔여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1) 비영업자산의 매각대금으로 회생계획상 제1차 연도(20○○년)에 변제하기로 계획된 조세채권을 변제하고 잔여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매각대금 중 ○○○○○원은 공익채권 변제를 위해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안의 비영업자산의 매각 관련 부분 사본 1부
2. 차량 매입 견적서 3부
3. 자동차 매매계약서(안)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2]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비업무용자산(주식) 매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의 비업무용 자산 중 ○○○○ 주식회사 발행 주식(이하, “본 건 주식”)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매각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처분)허가 신청 대상 주식

가. 매각대상 주식 현황

구 분	보유수량(=매각대상)		지분율	주 가 (20○○.○.○○.기준)	시가액 (20○○.○.○○.기준)	회생계획안상 처분예상액
	감자 전	감자 후				
○○○○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코스탁 상장주)						

나. 회생계획인가당시, 채무자가 보유 중인 ○○○○ 주식회사 발행 주식 총 수는 ○○,○○○주로서 ㈜○○○○ 및 ○○○○○○의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이었으나, 회생담보권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처분에 제약요인은 없음

다. ○○○○ 주식회사는 20○○. ○○. ○○ 이사회결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4:1 무상 감자를 실시함(첨부1. "거래소공시" 참조). 이에 따라 감자 후 채무자 보유 주식수는 11,248주가 되었음

라. 무상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로 20○○. ○○. ○○.자 거래정지된 상태이나, 20○○. ○○. ○○.자로 신주상장 및 거래재개 예정임

마. 위 표상 주가(○,○○○원/주) 및 시가액(○○○,○○○,○○○원)은 20○○. ○○. ○○.자 거래정지일 당일의 종가 및 시가액으로서 거래재개일 전일인 20○○. ○○. ○○.까지 불변함

2. 본 건 주식의 매각 사유

가. 본 건 주식은 비영업용 자산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매각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 ○○○○ 주식회사의 워크아웃 개시(20○○. ○○)로 보수적 관점의 경영이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향후 본 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다만, 20○○. ○○. ○○.자 ○,○○○억원 규모의 채권출자전환에 의해 ○,○○○(주)의 자본잠식상태가 해소된 점, 20○○년 감사보고서 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점은 주가상승의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건 주식의 거래재개일(20○○. ○○. ○○.)에 맞춰 본 건 주식을 신속이 처분하는 것이 채무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본 허가신청일 기준 아직 거래재개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재개일 도래 후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적기 매각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허가신청합니다.

3. 본 건 주식 매각 내용

가. 매도방법 : 장내 시가매도

나. 예상 매도가액 : ○○○,○○○,○○○원

(예상 매도가액 = 최소 매도단가 ○○,○○○원/주[주1)] × 매각대상 주식수 ○○,○○○주)

※ 주 1) : 최소 매도단가(○○,○○○원/주) 산정근거

① 20○○. ○○. ○○.자 거래재개일의 예상 주가 형성범위 : ○:1감자에 따라 거래재개일의 기준가격은 ○○,○○○원/주(○,○○○원 × 4)가 되며, 장 개시 전 호가 범위가 "50% ~ 150%"임에 따라 시초가는 ○,○○○원 ~ ○○,○○○원까지 형성 가능하고 당일 종가는 '시초가±30%'이므로 ○,○○○원 ~ ○○,○○○원까지 형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첨부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 참조)

② 위 거래재개일에 형성 가능한 주가 범위에서 회생계획에 기재된 본건 주식의 처분예상액 ○○○백만원(첨부3.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참조)을 충족할 수 있는 주당 단가가 ○○,○○○원이므로 이 금액을 최소 매도단가로 설정하였음

다. 매도기간 : 거래재개일인 20○○. ○○. ○○.부터 20○○. ○○. ○○.까지
(최소 매도단가 미도달시 처리방법 : 최소 매도단가 이상에서 즉시 매도할 것이나, 20○○년 ○○월 ○○일까지 주당 시가가 최소 매도단가에 미달될 경우에는 매도단가를 조정하여 귀원의 별도 허가를 득한 후 처분하도록 하겠음)

4. 매각자금 사용 계획

첨부서류 : 1. 거래소공시 [○○○○(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 ○○)] 1부
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 1부
3.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발췌(비업무용 자산의 조기매각)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3]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담보부동산 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 "제○○장 자구노력의 추진"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 대상 담보 부동산

담보물 소재지	담보 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담보 권자	감정평가액[주]	매각예상금액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의 매각연도	비고

주) 한국 감정원 평가 금액 : 평가 기준일 : 20○○. ○○. ○○.

2. 매각계약 체결 및 금액

가. 매각 계약 체결 : 20○○. ○○. ○○(계약서에 아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회생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 매각금액

(1) 매각금액 :　　원(　　원)

매각금액	회생계획안 매각예정금액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일)	비고
			매각금액이 매각예정금액 이상으로 담보채권자 동의 생략함

주) 부가세 대상 건물의 경우 부가세 금액 및 매각금액 포함여부 표시

(2) 매각대금 수령 일자 및 금액

구 분	금 액	납부일	비 고
계약금	매매금액의 10%	계약체결 당일	20○○. ○○. ○○. 수령함
중도금	매매금액의 40%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잔 금	매매금액의 50%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3. 매수인 인적사항

가. 매수자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다. 주 소:

라. 채무자와 관계 :

4. 매각 추진 과정 및 매각 방법

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소와 인터넷 관계자들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나.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 가액이 소액이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부동산중개인의 소개)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위의 부동산은 공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규모 부동산으로 매각예상가액 이상의 원매자가 있어, 조속한 매매를 위해 수의계약에 의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5. 회생담보권 변제 등 부동산 매각 금액 사용 허가 신청

매각금액	매각금액 사용			비고
	사용 내역		금액	
	매각부대비용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소 지급 (매각대금의 ○.○○%)
		양도소득세		
	회생담보권	담보채권액		
	회생채권	임차보증금		
	공익채권	임금/퇴직금		
	이전비용	보증금 및 임차료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 등		
	합 계[주)]			

주) 매각대금 수령하여 채권 변제 등을 완료한 후 별도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첨부 : 1.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안) 1부
2. 회생계획안(회생담보권 변제 계획 부분) 1부
3. 매각 대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소유자 및 근저당권 설정 부분) 1부
4. 부동산 담보배분 명세서 (채권시부인표에 첨부된 내용) 1부
5. 매수인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3-1]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담보)부동산 매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인가 받은 회생계획 "제○○장 자구노력의 추진"내용에 따라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 변제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 대상 담보 부동산

담보물 소재지	담보 부동산	담보권자	감정평가액㈜	매각예상금액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의 매각연도	비고

(주) 한국 감정원 평가 금액 : 평가 기준일 : 20○○. ○○. ○○.

2. 매각계약 체결 및 금액

가. 매각 계약 체결 : 20○○. ○○. ○○(계약서에 아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회생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 매각금액

(1) 매각금액 :　　원(　　원)

매각금액	회생계획안 매각예정금액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일)	비고
			매각금액이 매각예정금액 이상으로 담보채권자 동의 생략함

(2) 매각대금 수령 일자 및 금액

구 분	금 액	납부일	비 고
계약금	매매금액의 10%	계약체결 당일	20○○. ○○. ○○. 수령함
중도금	매매금액의 40%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잔 금	매매금액의 50%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3. 매수인 인적사항

가. 매수자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채무자와 관계 :

4. 매각 추진 과정 및 매각 방법

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소와 인터넷 관계자들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나.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 가액이 소액이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000 부동산중개인의 소개)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위의 부동산은 공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규모 부동산으로 매각예상가액 이상의 원매자가 있어, 조속한 매매를 위해 수의계약에 의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안)　1부

2. 매각 대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소유자 및 근저당권 설정 부분)　1부

3. (필요시) 부동산 담보배분 명세서(채권시부인표에 첨부된 내용)　1부

4. 매수인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4]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담보부동산 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허가 신청(매각예정금액 이하 매각)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 "제○○장 자구노력의 추진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 대상 담보 부동산 내용

담보물 소재지	담보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담보권자	감정평가액(주)	매각예상금액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의 매각연도	비고

주) 한국 감정원 평가 금액 : 평가 기준일 : 20○○. ○○. ○○.

2. 매각계약 체결 및 금액

가. 매각 계약 체결 : 20○○. ○○. ○○(계약서에 아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각계약 체결

(특약사항)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회생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 매각금액

(1) 매각대금 : 원(원)

매각금액	회생계획안 매각예정금액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일)	비고
			매각금액이 매각예정금액보다 낮아 담보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

주) 부가세 대상 건물의 경우 부가세 금액 및 매각금액 포함여부 표시

(2) 매각대금 수령 일자 및 금액

구 분	금 액	납부일	비 고
계약금	매매금액의 10%	계약체결 당일	20○○. ○○. ○○. 수령함
중도금	매매금액의 40%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잔 금	매매금액의 50%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3. 매각대금 사용 허가 신청

가. 매각 부대비용 지급 :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 지급

나. 회생담보권 변제 : 매각부대비용 제외하고 원으로 변제

회생담보권자	변제 대상 회생담보권금액	이번 변제금액[주)]	변제 후 잔액 (미변제 회생담보권)	비고
합 계				

주) 매각대금 수령하여 채권 변제 등을 완료한 후 별도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 미변제 회생담보권 처리 :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제○장의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변제 방법으로 변제할 예정입니다.

4. 매수인 인적사항

가. 매수자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다. 주 소:

라. 채무자와 관계 :

5. 매각 추진 과정 및 매각 방법

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소와 인터넷 관계자들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나.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 가액이 소액이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부동산중개인의 소개)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위의 부동산은 공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규모 부동산으로 매각예상가액 이상의 원매자가 있어, 조속한 매매를 위해 수의계약에 의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6. 회생계획안 매각예상금액 이하로 매각하는 사유

가. 매각 사유 :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정가액이 시세대비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매각예상금액으로는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어려워 담보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담보채권자 동의 : 매각계약 체결에 앞서 매각 부동산의 담보채권자들에게 매각금액과 관련 담보채권 변제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서를 본 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7. 기타(사업장 이전 등)

첨부 : 1.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안) 1부
2. 회생계획안(회생담보권 변제 계획 부분) 1부
3. 매각 대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소유자 및 근저당권 설정 부분) 1부
4. 부동산 담보배분 명세서 (채권시부인표에 첨부된 내용) 1부
5. 회생담보권자 동의서 각 1부
6. 매수인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5]

관리위원 허가위임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제 목 : 원자재 구입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공장 가동에 필수품목인 원자재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원자재는 ----------의 용도로 특수하게 생산되는 원자재로서 이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불량을 줄일 수 있고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조건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4. 구입대상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8개사가 있고, 그 중 아래 3개사의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비교 견적 내역

품명	수량	견적 내용(입찰 결과)					
		A사		B사		C사	
		단가	총금액	단가	총금액	단가	총금액
○○○							
○○○							
합 계							

주) 비교견적이 불가한 사유 : ----------

2. 구입대상 업체 선정 : 상기 3개 업체를 비교 견적한 결과 가격 및 품질을 고려하여 A사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3. 원자재 구매 대금 지급 일시 :

4. 원자재구입대금 지급 전후 자금보유 현황

구분	보유자금 (20○○.○○.○○현재)	원자재 구입금액	지급 후 보유자금	비 고
현 금				
예 금				
합 계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지급품의서 사본 1부
2. 견적서 사본 각 1부
3. 원자재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작성 참고 사항]
1. 비교견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
(예시)
- 독점생산 품목으로 생산업체 없음(증빙서류 별첨)
- 생산 제품 구매처에서 지정한 원자재(증빙서류 별첨)
- 계속 거래해 온 업체이며 범용성이 없는 원자재로 생산 기일 및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기존 거래처 원자재 구매가 필요함
- 원자재 수입의 경우 수입사유(국내에 없는 원자재 등)
2. 원자재 구매 대금 지급 일시 기재
-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 별도로 대금지급 허가 신청을 받지 않도록 기재
3. 허가 신청과 동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것

[양식1-6]

관리위원 허가위임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제 목 : 20○○년 ○○월 임직원 급여 지급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년 ○○월분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급여 및 산정기간 : 20○○년 ○○월분(○○월 1일 ~ ○○월 31일)
2. 지급예정일 : 20○○년 ○○월 ○○일
3. 총 급여 지급액 : 원(실지급액 원)

구분	금월				전월	
	인원	총급여액	공제금액	실지급액	인원	총급여액
임 원						
직 원						
계약직						
일용직						
합 계						

주) 전월대비 인원 및 급여 변동 요인 :

4. 본건 지급 전후 보유 자금

구분	보유자금 (20○○.○○.○○현재)	급여 지급액	급여지급 후 보유자금	비 고
현 금				
예 금				
합 계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지급품의서 사본 1부
2. 20○○년 ○○월분 임직원 급여지급대장 사본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작성 참고 사항]
1. 개시결정일 이후에는 관리위원 허가사항으로 개시결정전에는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전월대비 총급여액의 증감액이 있는 경우 증감 사유를 기재할 것
(예시)
- 개시결정전으로 임원 3명 급여 지급 제외
- 전월 직원 6명 퇴사로 인한 급여 감소
3. 정기 상여금 지급이나 급여 인상으로 인해 총급여액이 증가된 경우 증빙서류 추가 첨부할 것
- 정기 상여금 지급 : 상여금 지급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인상액 지급 : 급여 인상 허가서 사본
4. 임직원 급여지급대장 작성
- 임직원 급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임직원의 직위를 반드시 기재할 것
- CRO가 선임된 경우에는 임원급여에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것

[양식1-7]

관리위원 허가위임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제 목 : 20○○년 ○○월 임대료 지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가 임대하여 사용 중인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한 20○○. ○○월분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대료 지급 대상월 및 산정기간 : 20○○년 ○○월분(○○월 1일 ~ ○○월 31일)
2. 지급예정일 : 20○○년 ○○월 ○○일(임대계약서의 ○조 ○항에 의거한 지급일)
3. 임대료 총지급액 : 원(부가세 포함)

구분	임대인	임대면적	전월		전월	
			임대료	부가세	임대료	부가세
공장						
본사사무실						
합 계						

4. 임대료 지급전 보유자금 내역

구분	보유자금 (20○○.○○.○○)	지급임대료금액	지급 후 보유자금	비 고
현금&예금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지급품의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8]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인가 전 변제의 경우)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생채권자 ○○○○이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원재료 공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채무자의 운영에 필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회생채권자 ○○○○이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용역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위 회생채권자에게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한 조기변제를 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제할 회생채권 명세

회생채권자명	회생채권금액	변제할 금액	채무 발생시기	채권자의 변제 요청 사유

2. 조기 변제 목적(회생채권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는 점 구체적으로 소명)

-

3. 조기 변제 요청에 대한 협의 과정 및 내용

4. 변제 시기 :

5. 회생채권 변제 전후 자금보유 현황

구분	보유자금 (20○○.○○.○○현재)	회생채권 변제액	변제 후 보유자금	비 고
현 금				
예 금				
합 계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변제품의서 사본 1부
2. 회생채권 조기 변제 요청 접수 현황 및 변제 계획 1부
3. 회생채권자 변제 요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작성 참고 사항]
1. 변제 요청 사유와 채무자가 변제해야만 하는 변제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 회생채권 변제 대상 :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 등 영세업체에 한하며 대기업의 경우 금액의 다과를 떠나 우선 변제가 불가하므로 제외할 것
3. 조기 변제 요청 증빙 서류 및 채권자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기재할 것
- 회생절차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마련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일부는 조기 변제하고 일부는 회생채권으로 권리변경 합의 등(합의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허가를 전제로 합의서 초안 마련하여 첨부할 것)

[양식1-9]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 경우)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제2차 연도(20○○년)에 변제해야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등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제 허가 신청 내용

가. 변제 신청 금액 : ○○○○원(₩○○○○원)

구분		회생계획에 따른 제2차 연도(20○○년) 변제 계획				비고
		총 변제금액	기변제액	이번 변제분	변제 후 미변제액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보증채권					
	소 계					
회생채권	담보신탁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임대보증금채권					

구분		회생계획에 따른 제2차 연도(20○○년) 변제 계획				비고
		총 변제금액	기변제액	이번 변제분	변제 후 미변제액	
	미확정구상채권					
	조세등 채권					
	공익채권					
	소계					
합계				○○○○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제금액표 밑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연도(20○○년) 변제 대상 채권의 ○○○%를 (조기) 변제
- 조세채권은 20○○년도(2차년도) 변제 대상 채권 전액 변제(세무서 요청)

나. 변제 예정일 : 가능하면 특정일을 명시하기 바람(20○○년 ○○월 ○○일 예정).
[또는 제2차 연도(20○○년) 변제기일]

다. 변제 방법 : 회생계획안 내용에 따라 변제기일에 변제(또는 조기변제 할인율 ○.○○% 적용하여 할인 변제)

라. 변제자금 : 영업 수익금

마. 변제 목적 : 회생계획안 이행(또는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통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

2. 회생계획 변제 이행 현황(본 변제 허가 신청 금액을 변제를 반영한 현황임)

구분		총 변제 채권금액	준비연도		제1차 연도(20○○년)		제2차 연도(20○○년)	
			변제계획	변제액	변제계획	변제액	변제계획	변제액
회생 담보권	대여금채권							
	소계							
회생 채권	담보신탁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임대보증금채권							
	미확정구상채권							
	조세등 채권							
	공익채권							
	소계							
합계								

(미변제액이 있는 경우)

- 미변제 사유 및 변제 대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회생채권 변제 전후 자금보유 현황

구분	보유자금 (20○○.○○.○○현재)	회생채권 변제액	변제 후 보유자금	비 고
현 금				
예 금				
합 계				

첨부 : 1. 회생채권 변제 계획 총괄표 사본 1부
2.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사본 1부
3. 변제대상 채권자 및 변제금액 현황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10]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회사채 발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귀 법원으로부터 ○○○○ 주식회사로부터 ○○○억 원을 회사채 형태로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확약 계약 허가 신청”(20○○. ○○. ○○.)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확약서(Letter of Commitment)”를 체결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20○○. ○○. ○○. ○○○○ 주식회사와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종전 사모사채인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기 허가된 투자 확약 계약 및 종전 사모사채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모사채인수계약 내용

가. 계약의 개요

1) 계약체결일: 20○○. ○○. ○○.(효력발생은 법원 허가 후 즉시)

2)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나. 주요 계약조건

1)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 제○○회 무보증 사모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억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억 원
5)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금 10억 원권 ○○매, 금 5억 원권 ○○매, 금 1억 원권 ○○매
6) 사채의 표면이율: 연 ○.○○%
7) 만기: 20○○. ○○. ○○.(○○년)
8) 원금의 임의 조기상환: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9) 납입일 및 발행일: 20○○. ○○. ○○.
10) 기타: 사채 발생 계약의 체결시 20○○. ○○. ○○.자 사모사채인수계약의 효력은 상실

2. 사채발행 내용 요지
가. 사채 발행일 : 20○○. ○○. ○○.
나. 사채발행금액 : ○○○원
다. 사채발행대금 납입일 : 20○○. ○○. ○○.
라. 사채 발행 조건 :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내용과 동일

3. 사채발행대금의 사용계획
가. 사채발생에 따른 사용가능 금액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입금	사채발행대금		
지급	취급수수료		
	사채이자		
사내유보	질권 제공		
	사채이자		
지급 및 유보 합계			
잔여액(사용가능 금액)			

나. 사채발생 대금 사용 계획(채권 변제 계획을 기술하세요)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안의 사채 발행 관련 부분 사본 1부
2.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11]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운영자금(변제자금) 차입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현재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신규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차입이 가능한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규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 "제○장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중 "제○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제1, 2차 연도(20○○년, 20○○년)의 회생채권 중 일부금액을 변제하였으나, 미 변제액에 대해서는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 차입이 가능한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규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차입금액 : 일금○○○○원(○○○○원)
2. 용 도 : 임직원 급여, 필요 원자재구입비용, 운영비용 지급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차, ○차년도 변제금액으로 사용)
3.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 연 ○% 이자율 및 원금 변제시 매달 말일 이자 지급
4. 자금 차입처
   가. 성 명 : ○ ○ ○
   나. 주민등록번호 :
   다. 주 소 :

라. 채무자와의 관계 :

5. 차 입 일 : 법원 허가 득 후 즉시 차입(20○○년 ○○월 ○○일 예정)
6. 상 환 일 : 회생계획 제10차 연도(20○○년) 이후 또는 회생절차 폐지 이후 변제 예정
7. 상환방법 : 회생계획 제10차 연도(20○○년) 이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8. 기존 공익채권자의 권리보호 : 공익채권자는 없음(필요시 공익채권에 대한 우선변제 포기 동기서와 강제집행 포기 각서 첨부)
9. 차입된 자금 사용 계획 : 제1차 연도(20○○년) 및 제2차 연도(20○○년) 미 변제금 변제

구분		변제계획			변제 및 면제			변제 잔액 (이번 변제 후)
		제1차 연도 (20○○년)	제2차 연도 (20○○년)	합계	제1차 연도 (20○○년)	제2차 연도 (20○○년)	합계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	변제							
	면제							
조세채권								
합 계								

첨부서류 : 1. 차입자금 사용계획(회생채권 변제 현황표) 1부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금 증서 등) 1부
3. 최우선공익채권 포기 동의 및 강제집행 포기 각서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작성 참고 사항]

1. 자금 차입 사유와 변제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 자금 차입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채무자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
3. 차입처로부터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및 강제 집회 미이행에 대한 각서 징구 첨부할 것
4. 첨부 :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동의 및 강제집행 포기 각서(양식)

[첨부]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동의 및 강제집행 포기 각서

자금 대여자 : ○○○
대여 금액 : 일금○○○○원정(\○○○○원)
채무자(차입자) : ○○○

1. 위 대여자 ○○○은 상기 금원을 채무자 ○○○에게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 대여금은 최우선 공익채권을 포기하고 일반 공익채권으로 변제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 대여자 ○○○은 상기 금원을 차용기한 만료 후 일시 또는 분할로, 이자는 차용기한 만료 후 연○%의 이율로 계산하여 원금 변제 시 같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여자 ○○○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대여금액 및 이자,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17. . .

위 각서인
대여자 :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통

[양식1-12]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와 체결한 미이행 쌍무계약인 ○○ ○○ 자재납품 및 설치 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회생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지하고자 하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내용

가. 계약체결일자 : 20○○. ○○. ○○

나. 계약 내용 및 수익률 분석

공사명	발주사	계약금액 (총공사비)	계약금	예상수익	예상 수익률
	○○○○(주)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다. 계약금 수령 여부 : 계약체결시 총공사비의 10%인 ○○백만원 수령함

라. 이행보증서(금) 제출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서 제출

마. 공사 계약 요약 : 본 공사는 ---------- ---------- 공사로 발주사인 ○○○○ 주식회사와 수주계약을 체결하였음.

2. 해지사유

가. 자금 수지 악화 : 회생절차 진행으로 20○○년 ○○월 공사 착공을 해야 하지만 공사비용의 선투입과 회전의 불확실성으로 공사 개시가 어려움 상황임.

나. 계약파기 사유 발생 : 본 공사 계약서에서 정한 중대한 계약파기 사유 발생으로 발주사에서 계약파기를 통지해 왔으며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다.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 : 계약당시 채무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계약이행 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발주사에서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 청구
(서울보증보험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예정임)

라. 기타 아래와 같은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3. 계약 해지에 따른 영향

가. 본 계약 해지가 채무자의 향후 영업(추가 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은 ---------- 일 정도로 회사의 영업에 ---------- 정도의 영향이 예상됨

나. 기존 거래처의 요청을 수용하여 업계 내에서 신인도 하락을 최소할 수 있는 점 감안

다. 계약 이행시의 수익 예상(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익성이 변경됨)

당초 예상수익(부가세 제외)			**현재 예상되는 수익(부가세 제외)**		
계약금액	투입원가	예상수익	**계약금액**	**투입원가**	**예상수익**

※ 회생절차로 원자재 구매 자금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인건비 부담을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투입원가가 높아지고 공사기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부담 예상

※ 투입원가 증가로 손실이 예상되므로/수익금액이 낮아 질 것으로 보여 계약해지 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라. 계약 해지시 계약금(26,400천원) 반환 대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후 회생채권(구 상채권)으로 신고할 예정으로 채무자의 자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4. 종합의견 및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공사의 계약 해지를 위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자 허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상황에서 채무자가 조기에 공사재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금융비용, ○○○○○ 등의 손실은 채무자 또는 수주사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공사 중단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추가 발생비용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사계약해지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자 역시 본 공사계약해지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발생액을 경감시키고 향후 수주를 위한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계약 해지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계약포기 각서(합의서 등) 1부
2. 미이행쌍무계약 관련 계약서(자재납품 및 설치 공사 계약서) 1부
3. 발주사 등의 요청 문서(내용증명) 각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13]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소송결과 보고 및 항소(상고) 포기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주식회사 ○○○○과 체결한 "업무지원 시스템 개편 및 인프라구축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을 상대로 ----------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는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 ○○. ○○. ---------- 라는 내용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채무자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가받을 사항

 가. 상고의 포기

  1) 20○○나○○○○○○(본소) 계약대금청구, 20○○나○○○○(반소) 기타(금전) 소송에 대한 상고포기

  2) 원고(반소피고) :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

  3)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

  4) 소송물가액 : 원고(반소피고)-○○○,○○○,○○○원/
  피고(반소원고)-○○○,○○○,○○○원

나. 상고기간(불변기한) : 20○○.○○.○○. 선고, 20○○.○○.○○. 00:00 판결문 수령하여
20○○.○○.○○.까지

2. 상고 포기 사유

가. ---------- 로 인하여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채무자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판결에 승복하여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다.

3. 소송개요 및 소송 진행 경과

가. 사건 : 계약대금 청구 20○○나○○○○○○(본소)
기타(금전) 20○○나○○○○(반소)

나.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

다. 항소심 소송물가액 : ○○○,○○○,○○○원(1심 본소 청구액, 1심 판결액의 합계)

라.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 및 위 금원 중 금-------원에 대해서는 --------부터, ----------원에 대해서는 -------부터, 금------원에 대해서는 --------부터, --------원에 대해서는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각 연○○%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임을 확정한다"

마. 1심 패소(본소청구기각, 반소청구인용)

바.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사. 항소심 판결 주문(2015.11.16. 선고, 2015.12.5. 0:00 판결문 수령)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법적 쟁점사항
가.

나.

다.

5. 소송대리인의 의견

첨부서류 : 1.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소 ----------판결문 1부.
2. 서울고등법원 본소 ----------판결문 1부
3. 소송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소송 및 채권 관련 증빙 서류 1부
5.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14]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채권가압류, 국세지방세 등 강제집행 취소명령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한 채권자가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20○○카단 ○○○○○사건외 ○○건의 채권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 등으로 ----------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현금 관리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업실적 유지를 위해 이용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 등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가 따르고 있고 고객들의 불편으로 영업에도 지장이 있어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수행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채무자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및 정상정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생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취소 허가 신청 대상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 등의 내역

가.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현황

번호	사건정보			채권자			제3채무자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채권자	채권내용	채권금액	채무자	채권내용	금액
1									
2									

나. 취소대상 체납처분의 내역

번호	채권자					제3채무자		
	채권자	채권내용	압류일	납부기한	채권금액	채무자	채권내용	금액

2.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취소명령이 필요한 사유)

가. 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목적물인 제3채무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은 다수의 고객의 골프장 이용요금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매출에 있어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현금결제 매출만으로는 도저히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결제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객이 입회보증금 회생채권자이기도 하여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의 투명성에 대하여 채권자 및 고객들에게 크나큰 오해와 불신만 양산하게 될 것이며 회사 내에서 고객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에 필수적인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본 취소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취소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취소명령 시 수금 가능 금액

번호	채권자	제3채무자	채권종류	미수령금액	수령가능금액	비고
합 계						

4. 취소 결정 시 수금액 사용계획

사용용도	사용금액	비고
사용액 합계		

5. 기타 참고 사항

가. 채무자는 카드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회사 운영을 위하여 대안으로 관계회사 법인을 통하여 카드결제 대행을 하였으며 이에 여신전문 금융관리법 위반 고발 등으로 더 이상은 카드결제로 인한 영업이 불가능하여 현재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고객들의 불만과 골프예약의 취소 및 채권자들에게 불신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따라서 위의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체납처분 등이 취소되어야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 등의 취소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채권가압류, 국세체납처분 목록 및 결정문 사본 각 1부.
3. 취소 후 수금액 사용 계획 증빙 서류 각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작성 참고 사항]

1. 취소 명령 요청 사유와 채무자가 수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기재할 것
2.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날인 하여 첨부할 것
3. 강제 집행 결정 사건을 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취소 명령 신청건과 구분할 것
4. 첨부 : 서약서(양식)

[첨부]

서 약 서

채무자회사의 관리인 ○○○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및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취소결정을 받아 카드결제가 가능케 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려 취소명령 신청을 합니다.

본 취소결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도 회수되는 자금의 사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사용함에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기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취소된 가압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공평한 이익보호를 위하여 회생계획안 인가전 폐지결정을 받게 될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 취소로 회수한 금액을 정당한 압류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채무자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양식1-15]

관리위원 허가위임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제 목 :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년 ○○월 퇴사자(예정자)가 많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퇴사자(예정자) 현황

직원명	직급	생년월일	근무부서	직책	연봉	비고

2. 채용허가 신청자 현황

직원명	직급	생년월일	채용부서	직책	연봉	비고

3. 채용사유 및 인원 현황

가.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충원으로 ----------

나. 채용일정

다. 인원 현황

구분	20○○년말	20○○년 ○○월	채용허가 신청인원	증감	비고
본 사					
1공장					
영업소					
합 계					

4. 채용시기 : 허가 후 즉시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채용품의서 사본 1부
2. 신규 채용자 이력서 각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작성 참고 사항]
1. 채용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용후의 인원 현황을 자세하게 기재할 것
2. 근로계약서 첨부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것
3. 채용과정 : 채용일정(공고, 면접, 합격자 발표 등)등을 기재하여 공정하게 직원 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회사의 특수관계인가 관계여부 확인
-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이 채무자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채용사유 등을 별도로 기재할 것

[양식1-16]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신규 임원 선임 허가 신청(제3자 관리인)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현 임원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으로 전원 퇴임하였고, 아래와 같이 신규 임원선임을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원퇴임

가. 퇴임 내역

순번	직 위	성 명	주 소	담당업무	퇴임일자	비고
	대표이사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사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사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사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나. 퇴임 사유

1)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기존의 임원 전원 퇴임함

2) 인가된 회생계획"제○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항"에 회생회사의 현 임원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신규 임원선임

가. 선임 내역

순번	직위	성 명	주 소	담당업무	임 기	비고
	대표이사				법원의 선임 허가일로부터 1년	
	이사					
	이사					
	이사					

나. 선임사유

1) 대표이사 ○○○ : 현재 전무이사 직위로 영업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2) 이사 ○○○ : 현재 상무이사 직위로 공무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3) 이사 □□□ : 현재 부장 직위로 경영기획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법상 필요 이사 수 충족을 위해 선임

다. 선임 임원의 보수 및 처우

1) 대표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전무이사 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전무이사로 함.

2) 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무이사 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상무이사로 함.

3) 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장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부장으로 함.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항 : 제○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항 사본 1부
2. 선임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17]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임원 급여 조정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개시결정에 맞추어 재직 중인 임원들의 급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재직 임원 및 급여 조정 내역

구분	직위	임원명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후		비 고
			연 봉	급여액	연 봉	급여액	
등기	대표 이사	○○○					관리인 법원 결정
등기	사외 이사	○○○					전액감액
미등기	이사	○○○					20%감액
등기	감사	○○○					
미등기	감사	○○○					

2. 급여 조정일 : 개시결정일 이후 급여부터 조정
 - 개시결정일 이전 급여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권리변경 예정임

3. 급여조정 대상자의 급여조정 내역
 가.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

 나. ○○○(사내이사) :

 다. ○○○(감사) :

4. 급여조정 제외 임원의 제외 사유
 가. ○○○(상임이사) :

 나. ○○○(비상임 감사) :

첨부서류 : 1. 회사의 정관(임원 관련 부분) 사본 1부
 2. 대상 임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3. 20○○.○○월 임원 급여 대장 사본 1부
 4. 급여조정 대상 임원의 동의서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18]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 제○○장(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의 내용에 근거하여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주식병합, 출자전환, 주식재병합)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가. 주식병합의 방법 :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주와 우선주 ○○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고, 그 밖의 주주가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20○○년 ○○월 ○○일(회생계획인가일 또는 회생계획인가일로부터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다. 주식병합 후 납입자본금(주식 수 및 자본금)

구분		주식병합 전		자본감소(주식병합)		주식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 수 (단위: 주)	보통주						
	우선주						
	합계						
자본금 (단위: 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가. 출자전환 방법

1)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2)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나.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다.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라. 주식의 발행가액: 5,000원

마.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 출자전환 후의 자본금(단위 : 주, 천원).

구분	주주명	출자전환 전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구 주주	특수관계인						
	그 밖의 주주						
	소계						
출자전환 신주발행	회생채권(대여금채권등)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등)						
	소계						
합 계							

3.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가. 주식의 재병합 방법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재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재병합합니다. 다만, 회생채권(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합니다.

다만,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주식의 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다. 주식재병합 후 자본금

구분	주주명	주식재병합 전		자본감소 (주식재병합)		주식재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구 주주	특수관계인						
	그 밖의 주주						
	소계						
출자전환 신주발행	회생채권(대여금채권등)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등)						
	소계						

4. 기타 사항 : 주식병합,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후의 주식 수와 자본금의 액수는 본 장 제○절 내지 제○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첨부서류 : 1. 주식병합 전후의 자본금 변동현황 1부
2. 출자전환 대상채권 및 출자전환 후 자본금 변동현황 1부
3. 주식 재병합 전후의 자본금 변동현황 1부
4. 회생계획안 해당부분 사본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19]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주주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 제○○장(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 ○○. ○○. ○○:○○
 나. 장소 : 서울 ---------- 본점 회의실 101호

2. 주주총회 안건 : 회생계획 제○○장 제○항에 근거한 신규 임원의 선임
 가. 신규 임원 선임
  1) 선임대상자

순번	직 위	성 명	주 소	담당업무	임 기	비고
	대표이사				선임일로부터 1년	
	이사					
	이사					

2) 선임사유

가) 대표이사 ○○○ : 현재 전무이사 직위로 영업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나) 이사 ○○○ : 현재 상무이사 직위로 공무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다) 이사 □□□ : 현재 부장 직위로 경영기획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법상 필요 이사 수 충족을 위해 선임

나. 선임 임원의 보수 및 처우

1) 대표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전무이사 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전무이사로 함.

2) 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무이사 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상무이사로 함.

3) 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장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부장으로 함.

3.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퇴임 대상 임원 현황

가. 퇴임 대상자

순번	현직위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담당업무	비고
	대표이사				
	이사				
	이사				

나. 퇴임 사유

1) 인가된 회생계획 "제○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항"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원은 전원 유임되고, 그 임기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인데 본 주주총회에서 신규 임원이 선임되므로 퇴임함

첨부서류 : 1. 회생계획 제○○장(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해당 부분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선임 대상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20]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금전지출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 지출 건별 허가신청 업무를 생략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회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괄허가를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대상 등)
 - 첨부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 참조

2. 포괄허가 시행일 : 법원 허가일 이후

3. 포괄허가 적용기간 : 채무자가 포괄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함(또는 채무자가 포괄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함)

4.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대상 제외 사항
 가.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나. 제3자의 영업의 양수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마.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사.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의 결정
아. 등기 임원의 인사 및 보수 결정
자. 직원의 채용, 승진 및 보수 인상,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차.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카. 권리의 포기
타.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하.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거. 각종 법률 및 회계자문(외부회계감사 포함)계약
너. 접대비 예산 편성
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포괄허가에 따른 업무 처리 방법
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후 집행하겠습니다.
나. 포괄허가에 대한 자금 집행은 CRO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 포괄허가로 지출한 자금 내역 및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은 그 다음 달 월간보고서에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시하여 그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라. 포괄허가를 얻은 후 추가적으로 포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도로 법원허가를 받아 추가하겠습니다.

첨부 :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 1부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

20○○. .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1. 포괄허가 신청 취지(목적)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채무자의 사업계속에 필요한 항목별로 법원의 포괄허가를 받음으로써, 추후 채무자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포괄허가 신청사항

가. 임직원급여(임원, 연봉직, 생산직), 상여(급여성 상여에 한함), 연차수당 및 퇴직예정자의 퇴직정산금 대금 지급

1) 임원(비등기임원 포함) 보수는 법원의 급여조정 허가 금액 지급
2) 임원 및 직원급여는 매월 ○○일 지급
3) 임원 퇴직정산금은 사안 발생 시 법원 허가신청

나. 하도급,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생산 및 영업을 위하여 발생한 독과점을 제외한 입찰을 통해 하도급, 용역 계약(신규, 변경) 등 체결 및 대금 지급.

1) 계약금액은 ○○ 원 이하 / 대금지급 ○○ 원 이하.
2) 대금지급의 경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CRO(구조조정담당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다. 원자재 구입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부원료, 소모자재, 보조재료, 유류 등의 자재 구매 대금 지급.

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 지급

(4-1) 본점 및 지점의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납부 / 생산설비, 선박, 중장비 임차료와 철도, 항만부지, 국공유지 임차료, 관리비 납부

(4-2) 본사 및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한 최소운영경비 납부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역(총괄)

❑ 채무자의 사업계속 및 운영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금액(월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적 요	지급예정일	한도금액(월)
1	임 직 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현장 상용직, 일용직	매월 일	
2	하도급 용역비	하도급, 용역비 지급	매 지급건별 한도금액	
3	자재구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소모자재, 유류 등의 구매비용 지급	매 지급건별 한도금액	
4-1	임차료	본점 및 지점 사무실, 생산용 설비 등 임차료 및 관리비	매월 일	
4-2	운영비	본사 및 사업소 등의 운영경비	매월 일	
합 계				

1. 임직원 등 급여 지급 허가신청

❑ 채무자 회사 직원들의 급여(퇴직금 포함)와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하여 대해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임직원 급여 지급 금액

(단위:원)

항 목	인 원	급여 및 상여금(월)	비 고
임 원			비등기임원 포함
정규직원			
본사 파견직			
현장 일용직			
계			

(*) 인원 및 직원 급여 등은 세금 공제 전 금액기준임.

2. 신청(지급) 금액
 가. 개시결정 이후 월 급여 원
 나. 퇴직예정 직원의 퇴직금 지급(임원의 퇴직금 제외)

3. 지급시기 : 개시결정 이후 월 급여 매월 일

4.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급여 지급시 유의사항
 가. 임원의 퇴직정산금 지급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하여야 함.
 나. 예시
  ① 임원 및 연봉직 직원의 고정급여
  ② 매월 인원 변동, 생산직 연장근로에 따른 생산직 직원의 변동 급여
  ③ 퇴직예정자 발생시 퇴직정산금 지급

첨부서류 : 1. 임직원 급여 명세서[급여, 상여금 지급 품의]
 2. 퇴직정산금 명세서

2.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 체결 및 대금지급 허가신청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 사업장에서 발생한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 지급에 대하여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하도급, 용역 계약 및 대금 지급에 대한 포괄허가

가. 적용범위 및 원칙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하도급, 용역 포함)에 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 지급

1) 계약금액은 ○○원 이하, 대금 지급은 ○○원 이하로 한정.

2)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CRO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함. 계약금액 원을 초과하는 계약과 대금지급 원을 초과하는 지급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나. 계약 및 대금지급의 종류

구 분	적 요	항목	비고
하도급, 용역 (신규계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해 하도급, 용역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용역 (변경계약)	하도급, 용역계약 이후 물량의 변동, 물가 연동, 작업조건, 계약기간의 변동 등에 의한 기존 계약의 변경 및 대금 지급.	증액계약, 감액계약, 공기변경, 정산계약	

2. 신청 사유

가.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지급 행위가 **년간 평균 ○○건 이상 발생**되는 바, 개별 건수별로 법원허가 신청시 과중한 업무부담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연도별 계약건수 및 금액 현황

구분	20○○년	20○○년	20○○년	비고
계약건수	○,○○○	○,○○○	○,○○○	
계약금액	○○○억 원	○○○억 원	○○○억 원	

다. 연도별 대금지급 현황

구분	20○○년	20○○년	20○○년	비고
지급건수	○,○○○	○,○○○	○,○○○	
지급금액	○○○억 원	○○○억 원	○○○억 원	

라. 채무자의 사업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하도급, 용역계약 행위가 20○○년 기준 연간 ○,○○○건 이상 발생하고 그 거래금액도 ○○○○원에 이르고 있어, ○○○○을 한도로 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포괄허가의 취지에 부합함

항 목	계약 건수	계약 금액	비고

3. 자재구매 계약 및 대금지급 허가신청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 사업장에서 발생한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계약 체결(신규, 변경)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자재구매 계약 및 대금 지급에 대한 포괄허가

가. 적용범위 및 원칙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원료, 연료, 소모자재, 유지류 등)에 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자재구매 계약(기존, 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 지급

1) 계약금액은 원 이하, 대금 지급은 원 이하로 한정.

2)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CRO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함. 계약금액 원을 초과하는 계약과 대금지급 원을 초과하는 지급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나. 계약 및 대금지급의 종류

구 분	적 요	항목	비고
구매계약 (신규계약)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자재납품사와 입찰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자재구매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구매계약 (변경계약)	구매계약 이후 물량의 변동, 물가 연동, 단가 조정 등에 의한 기존 계약의 변경 및 대금 지급.	단가인상, 단가인하 등 계약서, 정산합의서	

2. 신청 사유

가. 채무자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 구매업무에 따른 대금지급 행위가 **년간 평균 ○○건 이상 발생**되는 바, 개별 건수별로 법원허가 신청시 과중한 업무부담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연도별 계약건수 및 금액 현황

구분	20○○년	20○○년	20○○년	비고
계약건수	○,○○○	○,○○○	○,○○○	
계약금액	○○○억 원	○○○억 원	○○○억 원	

다. 연도별 대금지급 현황

구분	20○○년	20○○년	20○○년	비고
지급건수	○,○○○	○,○○○	○,○○○	
지급금액	○○○억 원	○○○억 원	○○○억 원	

라. 채무자의 사업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자재구매계약 행위가 20○○년 기준 연간 ○,○○○건 이상 발생하고(그 거래금액도 ○○○○원) 그 대금지급액수도 ○○○○원에 이르고 있어, ○○○○을 한도로 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포괄허가의 취지에 부합함

항 목	계약 건수	계약 금액	비고

4-1. 임차료, 관리비 허가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무자의 본점 및 지점 사무실, 설비, 선박 및 공공부지인대, 중장비 등의 임차료, 관리비에 대해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본점 및 지점의 사무실 임차 내역

(단위:원)

구분		소유자	면적	임차기간	보증금	월 지급 금액		
소재지	용도					임차료	관리비	계
서울 ○○동	사무실							
수원 ○○동	숙소							
합 계								

2. 신청(지급)금액 : 임차료 및 관리비 원
(각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전기세 등 실비 지급)

3. 지급사유 : 본점 및 지점 등의 임차료, 관리비 지급

4. 지급시기 : 임차료 및 관리비 각 월 1회

* 예시

첨부서류 : 1. 임대차계약서

4-2. 본점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허가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본점 및 지점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최소 경비에 대해 포괄허가를 신청하고, 각종 법률 및 회계 자문수수료 등은 개별 사안별로 별도 법원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 사무실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단위:원)

항 목	세 부 내 용	신청금액(월)	비 고
복리후생비	직원 중식, 야근식대		
	차대, 생수음료대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통 신 비	전화료, 문서발송비, 정보통신이용료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지급수수료	전산용역, 사무실보안 용역수수료		
	각종 증명서발급 수수료, 택배 등		
임 차 료	복합기, 차량 임차료		
기타			
계			

(*) 20○○년 경영계획상 월 판매관리비 예산은 약 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소 사무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원을 신청함.

(*) 접대비(교제비)는 별도로 법원에 접대비 예산 한도 배정 승인을 받아 CRO의 동의를 얻어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예정임.

2. 신청(지급)금액 : 매월 원

3. 지급사유 : 본사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비용

4. 지급시기 : 항목별 비용발생 시 수시 지급

* 예시

[양식1-21]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 20○○년 ○○월 ○○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인가된 회생계획 "제○○장(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생계획안의 정관 변경 내용

가. 비교표

구분	조항	변경전	변경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0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0주로 한다.
신주인수권	(신설) 제17조	(신설)	제17조(신주인수권) 1.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들은 각자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와 회생담보권 및 호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나. 채무자 회생계획 기간 중에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첨부서류 : 1. 변경 전 정관 사본 1부
2. 정관 변경 목록 1부
3. 회생계획안 제○장 정관의 변경 부분 사본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22]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이의철회 및 정정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가 20○○. ○○. ○○. 제출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기간 시·부인 명세표에 대하여 회생채권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인한 회생담보권 일부를 이의철회하고, 같은 금액만큼 회생채권 시인액을 정정하여 감소시키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의 이의철회 : 채무자가 20○○. ○○. ○○. 제출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기간 시·부인 명세표에 대하여 회생채권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인한 회생채권을 이의철회하고, 같은 금액만큼 회생채권 시인액을 정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철회 및 정정 내용

가.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단위 : 원)

구분			조사기간 시부인 내용			이의철회액	이의철회 후 시부인 결과	
신고번호	채권자명	채권내용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시인액	부인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계								

나. 위 가.에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에 따른 회생채권 시 · 부인액의 정정

(단위 : 원)

구분			정정 전 회생채권 시부인			정정액	정정 후 회생채권 시부인	
신고번호	채권자명	채권내용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시인액	부인액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 이자						
합계								

2. 이의 철회 및 정정 허가 신청사유

(회생담보권 예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기간에 채무자회사 소유의 담보물(○○○ 공장)의 감정 평가가 진행중이어서 일응 부인한 바 있으며, 담보물 평가가 완료되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이의철회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시 · 부인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회생채권 예시) 채무자회사의 주채무자 ㈜○○○○ 청구 이의 소가 진행 중이던 관계로 채권자 ○○○○(주)이 회생채권(신고번호 채권○)으로 신고한 금 ○○○○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소송 중)이므로 부인"하였고, 채권자는 귀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 (20○○회확100○○○)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 ○○. ○○. 청구이의 항소 건에 대한 항소기각 결정으로 주채무자가 패소하였는 바, 부인했던 금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인정(시인)하고자 합니다.

3. 이의의 대상인 권리의 확정 여부

예시) 채권자가 신청한 이 법원 20○○회확○○○○ 사건이 진행 중임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함

첨부서류 : 1. 이의철회 채권자의 시 · 부인 정정 및 이의철회 내역표 사본 1부
2. 이의철회 전(정정 전) 회생채권 시 · 부인 총괄표 사본 1부
3. 이의철회 후(정정 후) 회생채권 시 · 부인 총괄표 사본 1부
4. 감정평가서 사본 1부(필요한 경우)
5. 이의철회사유 소명자료(예시 : 서울○○법원 20○○나200○○○ 판결문, 제시된 어음원본 등 기타 자료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23]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조언과 협력, 자금수지상황의 점검,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 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위촉하고자 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 : ○ ○ ○ (○○○○.○○.○○생)

2. 위촉기간

가. 위촉계약 체결일 : 20○○. ○○. ○○.

나. 임기 : 아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위촉 계약 체결 후 채무자회사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날

2) 위촉 계약 체결 후 채무자회사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회생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회사의 감사를 선임한 날

3. 구조조정담당임원(CRO)보수 : 월 ○○○만원(연봉 ○○○○만원)

4.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 내용(업무 내용)

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

나. 채무자회사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다.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채무자회사의 자금수지상황 보고

라. 기타 채무자회사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검토 등

첨부서류 : 1.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계약서 사본 1부
2.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사본 1부
3.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이력서 사본 1부
4.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서약서 사본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양식1-24]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법률상)관리인 인장 조제보고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개시결정 후 (법률상)관리인의 인장을 조제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법률상)관리인 : ○ ○ ○
2. 관리인 인장 조제 내역 : 첨부 참조

첨부서류 : 1. 법인인감 조제내역 및 책임각서 1부
2. 회수한 법인인감 내역 1부
3. 인감신고서 1부
4. 인감대지 1부
5. 별지목록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법인인장 조제내역 및 책임각서와 회수한 법인인감 내역

1. 법인인장 조제내역

구분	인장	사용부서	용도	관리책임자	
				정	부
법인 인장	인장	관리인실	법원제출문서 등 주요사항 일반상거래용 금융기관용 등	관리인 김갑동	과장 이을순
				서명	서명

2. 인장에 대한 책임각서

인장에 대한 책임각서

제목 : 법인사용인장에 대한 관리책임의 건

채무자는 년 월 일 시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리인 법인 인장과 사용인장을 조제하고 사용함에 있어 본 인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고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구분	인장	사용부서	용도	관리책임자	
				정	부
법인 인장	인장	관리인실	법원제출문서 등 주요사항 일반상거래용 금융기관용 등	관리인 김갑동	과장 이을순
				서명	서명

3. 회수한 법인인장 내역

구분	인장번호	인장	사용부서	용도	관리책임자
법인인감		인장	본사	회사 주요사항	관리인 김갑동 서명
사용인감		인장	관리팀	은행용/대관업무용	

[작성요령]

1. 추가할 사용인감이 있는 경우 용도구분하여 내역에 포함하면 됩니다.
2. (법률상)관리인 인장조제 보고시 필요서류
   - 법인인감 조제보고1부, 책임각서 1부, 회수한 법인인장내역 1부
3. 관리인 인감신고시 필요서류
   - 인감신고서 1부, 인감대지 1부, 관리인인감증명서 1부, 관리인 주민등록초본 1부, 관리인 선임등기에 필요한 별지목록 1부

별지 목록

구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원인
대표이사/ 법률상관리인	○○○	○○시 ○○구 ○○로 -----		20○○.○○.○○ 관리인 불선임 결정

[양식1-25]

재판부 허가사항

○○○ 주식회사

우) 00000 서울 ○○구 ○○로 ○○○, ○○○(○○빌딩) / 전화 / (02)0000-8000 FAX / (02)0000-8000

문서번호 : ○○ 회생 제20○○-○○호 담당자 : ○○팀 ○○○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CRO/감사

사 건 : 20○○회합 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의 선택 보고

1. 채무자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보전처분, 20○○년 ○○월 ○○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 ○○. ○○. 법무법인(유한)○○○○과 법인회생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9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은 위 계약의 이행의 선택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법인회생사건 위임계약
2. 계약일자: 20○○. ○○. ○○.
3. 계약금액: 금 0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 계약범위: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작성, 관계인집회자료 작성 등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회생절차와 관련한 법률자문
5. 지급(예정)내역

구 분	금액	부가세	합계	비고
1. 계약체결시				기지급
2. 회생신청서 접수일 하루 전				기지급
3.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지급예정
4. 시부인표 제출시				지급예정
5. 회생계획안 제출시				지급예정
합계				

6. 이행 사유 :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7. 2. 22. 기준으로 법무법인(유한)○○○○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일 이후의 용역제공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위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시결정일 이후의 잔여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하였기에 해당 미지급 보수는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첨부서류 : 1.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1부. 끝

서울 ○○구 ○○로 ○○○, ○○○(○○빌딩)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부록 2

관리위원회 의견서(예시)

[양식2-1]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보전처분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위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양식2-2]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관리인 불선임 또는 선임에 대한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를 관리인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견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위원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된 의견

그 밖의 관련된 의견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양식2-3]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회생채권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가. 채무자가 변제허가를 신청한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입니다.

나. 채무자는 최근 자체 개발한 배관 부식억제 및 녹 제거용 다기능 수처리장치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주) ○○발전본부에 정비적격업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등록 제출서류 중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 위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비적격업체 등록이 불가하여 매출증대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변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변제를 허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양식2-4]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가. 채무자는 20**. *. *. 금형제조 및 전자제품 사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모바일기기용 중소형 LCD Display의 핵심부품인 BLU(Back Light Unit)에 사용되는 몰드프레임을 생산하여 삼성전자 등 대기업 협력사에 납품하는 3차 협력사로서, 신규 공장투자 및 관계사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20**. *. **.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 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조사위원의 개시 전 조사 결과, 수정 후 자산총계는 7,124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11,499백만원으로 조사되었고, 계속기업가치는 4,405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5,398백만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기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추정 등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채무자의견서를 제출하여 6,560백만원의 계속기업가치를 주장하였으나, 이 의견을 재검토하여 작성 제출한 조사위원의 [수정 개시 전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5,398백만원)의 변동은 없고 계속기업가치는 4,578백만원으로 조사하여 최종 보고하였습니다.

라. 조사위원의 최종 조사보고서 상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근거를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양식2-5]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가. 채무자는 19**. *. *. 통신장비 및 원격조정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부대 경찰청에 휴대용 영상/음성 전송장비 및 보안시스템을 제공하여 오던 중, 군 당국의 사업지연 및 취소로 20**년 하반기부터 매출 급감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20**. *. *.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 *. *.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소정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127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5,138백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청산가치는 82백만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0원(-862백만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기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조사보고서의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의 추정에 오류를 지적하여 채무자의 추정에 의할 경우 계속기업가치는 1,768백만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위원은 회생기간 동안 큰 폭의 매출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 사업환경의 개선이 어려워 당초의 조사보고서 의견을 유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의 상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근거를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양식2-6]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위 회사의 감사로 기존 채무자의 구조담당임원(CRO)으로 재직하던 ○○○을 선임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양식2-7]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회생절차종결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가. 채무자는 19**. *. *.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감시카메라 영상저장장치인 DVR 및 NVR 생산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여 오던 중,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실패와 중국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20**. *. **.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 *. *. 개시결정 및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 시인된 총 채권액은 17,917백만원이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은 6,735백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채무자는 1차연도(2017년)에 변제할 회생담보권 1,890백만원 중 공장을 매각하여 1,857백만원을 조기에 변제하는 등 현재 이행 지체 중인 채권은 없습니다.

다.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잔여 회생채권액은 4,875백만원으로 10년간 나누어 변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20**년도(5개월) 매출액이 회생계획의 101%(7,743백만원)를 달성하는 등 회사가 정상 운영되고 있어 향후 영업수익금으로써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요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채무자의 잔여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따라서 채무자는 회사운영 및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회생절차를 종결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신청대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양식2-8]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02-530-**** / FAX 02-530-1912 / 주무관리위원 : ○○○

시 행 일 자		20**. *. **.
수	신	서울회생법원 제○○부
참	조	주심판사 ○○○
제	목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20**회합100***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견 :

가. 채무자는 19**. *. *.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치과교정용 3차원 맞춤 치료장치를 개발 공급하여 오던 중, 과도한 개발비와 차입을 통한 부동산매입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게 되어 20**. *. **.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 *. **. 개시결정 및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 시인된 총 채권액은 8,363백만원이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은 3,464백만원으로 회생계획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기간 중 매출액이 계획대로 발생하지 못하여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공익채권이 증가하였으며, 1차연도(20**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581백만원)이 이행지체 중에 있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관리인 및 최대채권자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라. 따라서 채무자 관리인의 폐지신청 의견 및 현재까지의 수행실적에 의하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1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직인생략

판 권
소 유

관리위원 직무편람

2018년 3월 6일 제1판 1쇄 인쇄
2018년 3월 9일 제1판 1쇄 발행

편 저 서울회생법원
발 행 처 사법발전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 화 (02) 3480-1309
팩 스 (02) 533-4074

※ 낙장 · 파본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ISBN 979-11-6086-021-4 93360

비매품